월간

재정포럼

2019. March_Vol.273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03

권두칼럼
폭넓은 여론수렴과 효과분석을 통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 원윤희

현안분석
디지털 경제와 법인세 정책 -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 안종석
고령화와 보건지출 - 단일지수 모형을 이용한 준모수적 추정 | 송호신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독일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VAT 납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외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재정포럼

2019.03 Vol.273
월간 재정포럼 2019년 3월호 **통권** 제273호_세종라 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044) 414-2134 **홈페이지** www.kipf.re.kr

CONTENTS

권두칼럼

폭넓은 여론수렴과 효과분석을 통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02
| 원윤희

현안분석

디지털 경제와 법인세 정책 -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08
| 안종석

고령화와 보건지출 - 단일지수 모형을 이용한 준모수적 추정 38
| 송호신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독일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VAT 납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외 60

정책흐름

기획재정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90

폭넓은 여론수렴과 효과분석을 통한 상속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원윤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교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목표하에 출범했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성과에 대한 논란 속에 지난 달 26일 권고안을 발표한 뒤 활동을 종료했다. 재정개혁, 특히 조세개혁에 대한 뜨거운 찬반논의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우려했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통상 찬성하는 사람은 조용한 반면, 반대의 목소리는 크게 울리기 때문이다.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돕는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

세제개혁은 대표적인 재분배정책으로서 계층별로 다른 영향을 받게 되고 따라서 치열한 논쟁을 야기한다. 더구나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인 측면과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론을 수렴하며 다각적인 연구와 토론 과정을 거친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입법화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표적인 현안으로 가업상속과 관련한 상속세 개편을 들 수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가업상속 요건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엄격하기 때문에 완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가 기업들의 가업상속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방향이다. 고용을 창출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비중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세율이나 세수 비중 측면에서도 OECD 국가 중에서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볼 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0년 이후만 하더라도 스웨덴, 노르웨이 등 7개 OECD 국가가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현재 15개 OECD 국가가 직계자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완화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상속세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을 들고 있다. 고율의 상속세로 인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기업활동에 전념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케아의 창업주가 높은 조세부담 때문에 해외로 이주하였다가 상속세가 폐지된 이후 스웨덴으로 귀환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1970년대 65%에 달하는 상속세를 부과했던 스웨덴이 사회당까지 찬성하며 만장일치로 폐지한 것은 상속세를 통해 경제적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며 가족기업 등의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상속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의 재분배와 후속 세대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과 재산, 그리고 기회의 확충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며 일부 최상위 계층에 대한 과세만으로 효과적인 정책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부의 재분배 창출과 후속 세대에 공평한 기회를 제공해야

상속세 회피를 위해 기업들이 합법 또는 불법적으로 행하고 있는 각종 왜곡적 행태에 따른 사회적 거래비용은 매우 클 것으로 추정된다. 세금이 없으면 하지 않았을, 기업활동에 적합하지 않는 많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케아 창업주와 같은 거주지 선택의 왜곡은 물론이고 공익재단 설립, 일감 몰아주기, 비상장주식, 해외 불법거래, 명의신탁 등을 통한 재산의 은닉 등 다양한 형태의 절세와 탈세가 이루어지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기업들의 왜곡된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된 여러 규제들 역시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공익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주식의 비율 상한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조세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입법화를 통해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가치와 주장들을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저해하는 것이다.

상속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부의 재분배와 후속 세대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은 저소득 계층에 대한 소득과 재산, 그리고 기회의 확충을 통해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며 일부 최상위 계층에 대한 과세만으로 정책효과를 달성하기는 어렵다. 한편 실제로 최상위 계층의 경우 각종 세무전략을 통해서 상속세를 피해가기 때문에 오히려 공평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비록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수준이지만 그것도 상당한 규모로서 큰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이며, 오히려 탈루되는 상속세 세원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서 재분배 효과를 더욱 높일 필요성도 제기된다. 상속세가 저축이나 투자 의욕을 저해하고 결국 생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에 참여하지도 않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재벌가 자녀들의 일탈 행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히려 자손들을 비생산적인 사회 일원으로 만들 가능성도 크다. 각종 공익 목적에 기부하거나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더욱 장려할 필요가 있는데, 상속세를 완화하는 정책은 이러한 긍정적인 행위들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세개혁을 위한 종합적 여론수렴과 효과분석

합리적인 조세정책 대안을 도출하고 입법화를 통해 시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된 다양한 가치와 주장들을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어야 한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세 개편문제도 부의 재분배와 기회균등을 추구하는 상속세의 기본 취지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충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서로 조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상속세 그 자체만이 아니라 소득세와 재산과세, 공정거래 강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세개혁 논의에서는 다양한 여론수렴과 효과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전통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범위하게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세종시대 전세(田稅)개혁을 추진하면서 중앙 및 각 도의 양반과 농민을 포함하여 17만 명에 이르는 백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하였으며 16년에 이르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쳤다. 군역제도를 개혁한 균역법(均役法)은,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조선이 망한다고까지 하면서 영조가 강력하게 추진하였는데 왕이 직접 궐문 밖에 나가 유생들을 만나는 등 더 많은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면서 최종 시행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정책환경은 조선시대와는 큰 차이가 있지만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세제개편의 논의는 아무리 신중하고 철저한 논의 과정을 거쳐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KDI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조세개혁의 전통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광범위하게 민의를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세제개편의 논의는 아무리 신중하고 철저한 논의과정을 거쳐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Category 4
Category 3
Category 2
Series 1
Series 2
Series 3

현안분석

■ **디지털 경제와 법인세 정책 -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안종석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고령화와 보건지출 - 단일지수 모형을 이용한 준모수적 추정**

송호신 ·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주>

디지털 경제와 법인세 정책 - 국제 논의와 정책 시사점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jsan@kipf.re.kr)

Ⅰ. 서론 - 디지털 경제의 개념과 조세정책 이슈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산업활동과 개인의 삶은 물론 정부정책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는 조세정책에도 예외가 아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디지털 기술은 과세당국의 정보 확보비용을 낮추고, 이전에는 확보가 불가능했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탈세와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는 세수를 증대시키고 과세의 공평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조세행정을 간소화하고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편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과세에 중대한 어려움을 야기하기도 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재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과세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디지털 재화를 판매하려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용역의 경우에는 국외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1] 2015년에 이 규정을 처음 도입할 때에는 전자적 용역을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년 12월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재화 및 용역의 중개서비스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인터넷상의 오픈마켓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오픈마켓 운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2] 이러한 제도 정비를 통해서 디지털 재화나 용역이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1)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서비스 즉, 디지털 서비스(digital servece)를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전자적 용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53조의2.

에 포함되었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큰 허점은 보이지는 않는다.

이와 달리 법인세 부문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의와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디지털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과세문제인 데 비해 법인세는 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디지털 경제부문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이다. 디지털 경제는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 기술이 부가가치의 기반이 되는 경제를 의미한다. 전자상거래, 앱스토어, 온라인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플랫폼(participative network platform), 초고속(주식) 거래(high speed trading), 온라인 결제서비스 등이 디지털 경제의 사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3] 최근에 디지털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확장되었다. EC(European Commission)의 보고에 따르면, 세계 20대 기업 중 디지털 경제 기업이 9개인데, 10년 전에는 1개뿐이었다.[4]

디지털 경제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데 반해 이 분야의 기업들이 전통적 산업 분야에 비해 세금을 상당히 적게 낸다는 점은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문제이다. EC의 평가에 따르면, 전통적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3.2%인 데 비해 디지털 사업부문 기업의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하다.[5] 특히 여러 국가에 걸쳐 사업을 운영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집단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을 최대한 저세율국으로 이전하고, 고세율국의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와 같은 세부담 축소가 가능하다.

OECD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라고 명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BEPS 프로젝트는 2012년에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15년에 15개의 Action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발간되었다.[6] 그러나 그것으로 논의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몇 개의 Action에 대해서는 Action Plan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논의가 완료된 Action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 조세조약 개정 등 Action을 현실화하기 위한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7]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 Tax),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등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BEPS 프로젝트의 권고안이나 디지털 서비스세 등이 법인세 과세 기반 잠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법인세 과세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

디지털 경제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데 반해 이 분야의 기업들이 전통적 산업 분야에 비해 세금을 상당히 적게 낸다는 점은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문제이다.

3) OECD(2015), p. 11.
4) EC(2018a), p. 1.
5) Bunn(2018), Table 1.
6) BEPS 프로젝트의 개요에 대해서는 안종석(2016) 참조
7)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 발간 이후 동향에 대해서는 OECD(2018) 참조

국제투자는 투자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이 공급되기까지의 사업활동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하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느 국가에서 부과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장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경제 부문의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체계에 초점을 맞춰 국제적 논의 동향, 개별 국가들과 국제기구의 움직임, 관련 학자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한다. 먼저 제Ⅱ장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원칙과 디지털 경제에서 나타나는 법인세 과세문제, 즉 BEPS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제Ⅲ장부터 이어지는 세 개의 절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 개별 국가의 대응, 법인세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한 연구들을 차례로 논의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을 정리한다.

Ⅱ. 다국적 기업 과세원칙과 디지털 경제, BEPS 문제

1. 다국적 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권 배분원칙 - 거주지 vs 원천지 과세

국제투자는 투자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게 상품이 공급되기까지의 사업활동이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발생하므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어느 국가에서 부과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된다. 관련된 국가가 모두 과세하면 중복과세가 발생하여 국제투자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세권을 배분하여야 한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과세권 배분원칙은 거주지 과세원칙(residence principle)과 원천지 과세원칙(source principle)이다. 거주지 과세원칙은 투자자가 거주하는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지는 것이고, 원천지 과세원칙은 소득이 발생한 국가, 즉 소득의 원천지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투자자 거주지를 h국, 원천지를 s국, h국 투자의 세전수익률을 r_h, s국 투자의 세전수익률을 r_s라고 하자. 그리고 h국의 법인세율을 t_h, s국의 법인세율을 t_s라고 하면, 거주지 과세원칙하에서 투자시장의 균형 조건은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r_h(1-t_h)=r_s(1-t_h) \qquad \text{식 (1)}$$

거주지에서만 과세하므로 거주지에 투자한 경우나 외국에 투자한 경우 모두 같은 세율(t_h)이 적용된다. 식 (1)에서 양변의 $(1-t_h)$를 제거하면 거주지 과세원칙하에서 투자시장 균형 조건은 $r_h = r_s$가 된다. 즉, 거주지와 원천지에서 어떤 세금을 부과하든지 거주지와 원천지의 세전수익률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배분이 이루어지며, 이때 세금은 투자배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주지 과세원칙은 세계 투자시장의 효율성(worldwide efficiency)을 보장한다.

한편, 원천지 과세원칙하에서 투자시장의 균형 조건은 식 (2)와 같다.

$$r_h(1-t_h) = r_s(1-t_s) \qquad \text{식 (2)}$$

투자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에 투자하면 거주지와 원천지가 동일하므로 거주지 법인세율인 t_h가 적용되고, 외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원천지 세율인 t_s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양쪽 투자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므로 양변에서 세율을 제거할 수 없다. 즉, 양 국가의 세율이 모두 투자배분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균형 상태에서 한 국가의 세율이 높아지면 그 국가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 세전수익률이 더 높아지도록 투자를 조정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원천지 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 각 국가는 자국에 배분되는 투자를 증대시키기 위한 조세경쟁의 유인을 가지게 된다.

모든 국가가 거주지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세계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과세권 배분원칙은 이와 다르다. 국가 간 과세권 배분은 양국 간 조세조약을 통해서 결정되는데, 1920년대의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에서 합의된 조세조약의 기본 모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원천지에서 과세권을 가지고, 배당·이자 등 포트폴리오(portfolio) 투자소득은 투자자 거주지 국가에서 과세권을 가진다.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지에서 과세한 이후 거주지에서 과세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을 조세조약에 규정한다. 원천지는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고정사업장은 물리적 실체를 기반으로 판단한다.[8]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은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원천지에 우선적인 과세권을 부여하고, 이후에 거주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실제로 해외투자를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거주지에서 과세한 국

모든 국가가 거주지 과세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세계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과세권 배분원칙은 이와 다르다.

8) Devereux and Vella(2017), p. 3.

물리적 생산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 산업과 달리 디지털 경제에서는 지적재산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 된다. 물리적 생산활동과 지적재산이 결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적재산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가는 미국, 일본, 한국 등 소수에 불과하였다. 프랑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조세조약에는 거주지 과세를 규명하였으나 거주지에서 과세할 수 있는 국내법 조항의 미비 등을 이유로 거주지 과세를 실시하지 않았다. 최근에는 거주지에서 과세하던 국가들도 대부분 거주지 과세를 포기하거나 아주 일부분(예를 들면, 국외 원천 사업소득의 5%)만 거주지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원천지 과세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지난 30여 년간 조세경쟁이 진행되었다. 1985년에 48.13%였던 OECD 국가의 법인세율 평균치가 1995년 36.24%, 2005년 32.24%, 2015년 24.72%로 낮아졌다. 2018년에는 23.69%였다.[9]

2. 디지털 경제의 특징과 법인세 과세의 어려움 - BEPS 문제

디지털 경제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중에서 법인세 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특징으로 첫째, 다수의 국가가 포함된 복잡한 사업 및 투자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전통적 개념의 가장 단순한 국제사업 네트워크는 투자자 거주지(R)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S)로 구성된다. 투자자는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투자하여 모회사를 만들고, 모회사가 다른 국가에 투자하여 자회사 또는 지점 형태의 고정사업장을 만들어 해외사업을 영위하며, 고정사업장에서 만들어진 상품은 그 고정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판매한다.

한편 디지털 경제에서는 기업들이 매우 복잡한 사업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투자자 거주지와 모기업 소재지가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자회사에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어떤 자회사는 지적재산권을 소유, 행사하는 역할만을 하기도 한다. 이때 지적재산의 개발이나 지적재산을 활용한 사업활동은 다른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그뿐만 아니라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와 소비자가 거주하는 국가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을 통하여 상품을 공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통적인 개념의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지역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전통적 사업 분야에서도 여러 지역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가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다른 국가에 모기업을 설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복잡한 사업 네

9) 세율은 국세와 지방세 포함, OECD Tax Database, http://www.oecd.org/tax/tax-policy/tax- database.htm, 검색일자: 2018. 12. 20.

트워크를 만드는 것이 훨씬 용이하게 되었으며, 사업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물리적 실체가 필수 요소가 아닌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사업 네트워크가 더욱 복잡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표 1> 전통적 국제투자와 디지털 경제의 다국적 사업 네트워크 비교

전통적 개념의 국제투자		디지털 경제 분야의 다국적 기업	
국가	역할	국가	역할
R (H), H (R)	투자자 거주지, 모기업	R1, R2, …	투자자 거주지
		H	모기업 소재지
S	현지기업(자회사 또는 고정사업장), 소비지(소비자 거주지)	S1	R&D 업무
		S2	생산업무1
		S3	생산업무2
		S4	지적재산권 보유
		C	소비자 거주지

출처: 저자 작성

두 번째 특징은 물리적 생산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전통적 산업과 달리 디지털 경제에서는 지적재산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물리적 생산활동과 지적재산이 결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경우에도,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적재산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디지털 경제는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 국가 간 과세권 배분에 혼란을 야기하며, 둘째, 발생한 수익을 관련 사업장에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국제투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의 과세권 배분원칙은 고정사업장이 있는 지역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정사업장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눈에 보이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전통적 사업부문에서는 고정사업장을 근거로 과세지를 판단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다. 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재화를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판매지역에 판매를 담당하는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면 그 판매사업장이 고정사업장이 된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의 경우 이러한 고정사업장의 개념이 '소득이 발생한 지역'을 의미하는 원천지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R국에 있는 회사가 개발한 기술을 S국에 있는 자회사에 이전하고, S국의 자회사가 서버

디지털 경제에서는 법인세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 간 과세권 배분에 있어 혼란을 야기하며, 발생한 수익을 관련 사업장에 배분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데, 이들 기업은 사업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세금납부 지역을 선택하기가 용이하다.

를 S국에 두고 인터넷을 통하여 C국 소비자에게 영화, 음악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현재의 기준을 적용하면 S국에 있는 자회사가 고정사업장이므로 S국에서 세금을 부과할 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S국의 자회사는 R국의 회사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R국에서 과세권을 가진다. 그리고 S국은 사용료를 제외한 수익에 대한 과세권을 가진다. 한편 C국은 서비스 대가를 모두 지불하고, 그것이 소득의 원천이 됨에도 불구하고 고정사업장이 없어서 과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러므로 C국이 고세율국인 경우, 이 기업은 저세율국인 S국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고, C국에서는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영업을 함으로써 세부담을 낮출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R국에 기술제공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를 최소화함으로써 고세율국인 R국의 과세소득을 축소하고 S국 과세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전가격과세제도에 따르면, 계열사 간의 거래에 대해서 제3자 거래가격(the arm's length price)을 적용하여야 한다.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관련 국가에 과세소득을 배분하도록 하는 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에서는 지적재산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 되고, 지적재산의 거래에 대해서는 비교 대상 제3자 거래를 찾기 어렵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경우에는, 각 개별 사업장이 전통적인 산업 분야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다른 독특한 사업활동을 수행하며, 소수의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아서 비교 가능한 제3자 가격을 찾기가 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에서 납세자가 적용한 계열사 간 거래가격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다.

요약해 보면,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수의 다국적 기업이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데, 이들 기업은 사업장을 다변화함으로써 세금납부 지역을 선택하기가 용이하다. 고세율국에서 기술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또 다른 고세율 국가의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고정사업장은 세율이 낮은 지역에 두고 사업을 영위한다. 또한 사업장 간 과세소득을 배분함에 있어 저세율국으로 수익을 몰아주는 것이 용이하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지적재산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 되고, 지적재산의 경우에는 양도가격이나 사용료 등에 대해 제3자 가격을 산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분야의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적 기업이어서 제3자 가격을 적용한 이전가격 산출이 더욱 어렵다.

Ⅲ. G20/OECD의 대응 - BEPS 프로젝트

G20/OECD에서는 디지털 경제에서 드러난 다국적 기업의 과세문제를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라고 명명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 그것이 BEPS 프로젝트이다. 2012년 6월에 G20 정상회의에서 OECD가 주도하여 BEPS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의결하였으며, OECD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15년 11월에 15개의 Action Plan으로 구성된 최종보고서를 G20 정상회의에 보고하였다. 이후 추가적인 논의와 후속 조치들이 진행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BEPS 프로젝트의 권고사항 중 고정사업장과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1. 고정사업장의 개념 개편

고정사업장에 대해서는 BEPS 프로젝트의 Action 7에서 논의하였는데, 물리적 실체(physical presence)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개편하여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디지털 실체(digital presence)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OECD에서는 BEPS 프로젝트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에 OECD 모델조약 중 고정사업장에 대한 조항(모델조약 제5조)을 개정하였다.[10)]

개편 이전의 모델조약을 보면, 제5조 제3항에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을 규정하고, 예비적·보조적 활동만 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예비적·보조적 활동이란 ① 상품의 저장, 전시, 인도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다른 기업에 의한 가공만을 목적으로 재화 또는 상품을 보유하는 시설 ③ 상품의 구입이나 정보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④ 그 밖의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고정된 장소를 의미한다.

그런데 2017년에 이 조항을 개정하여 예비적·보조적 활동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예비적·보조적 역할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만 고정사업장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즉, 이전에는 열거된 활동을 모두 예비적·보조적 활동으로 간주하였으나, 개정된 모델조약에서는 전체적인 사업활동을 모두 고려하여 그 역할이 예비적·보조적인지 아니면 일관된 사업활동(a cohesive business activity)의 일

고정사업장에 대해서는 BEPS 프로젝트의 Action 7에서 논의하였는데, 물리적 실체를 바탕으로 하는 현행 고정사업장 개념을 개편하여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디지털 실체가 있는 경우에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10) 고정사업장 관련 BEPS 프로젝트의 결론과 OECD 모델조약 개정 내용 및 개정 과정은 박훈 (2018), pp. 81~87 참조

이전가격과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조화는 OECD의 이전가격과세 지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OECD는 이전가격과세제도 지침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회원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제도를 제·개정하여 적용한다.

부에 해당하는 보완적인 역할(complementary functions)을 하여 실질적인 중요성을 가지는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같은 조(제5조) 제5항과 제6항에 규정된 대리인의 개념도 수정하였다. 이전에는 대리인의 역할을 판단하는 데 있어 계약의 명의를 중요시하였다. 즉, 대리인이 계약의 성립에 도움을 주더라도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와 수요자 간에 직접 계약이 체결된다면, 그 대리인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개정된 모델조약에서는 대리인의 실질적인 역할을 고려하여 고정사업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즉, 대리인이 일상적으로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주도적인 역할(principal role)을 수행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은 대리인이 형성한 계약의 내용에 중요한 수정을 가하지 않고 관행적(routinely)으로 서명만 하는 경우에, 이 대리인은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2. 이전가격과세제도 정비

이전가격과세제도에 대해서는 BEPS 프로젝트의 Action 8~10에서 논의하였다. 이전가격과세제도에 대한 국제적 조화는 OECD의 이전가격과세 지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OECD는 이전가격과세제도 지침(guideline)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회원국들은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제도를 제·개정하여 적용한다. BEPS 프로젝트의 Action 8~10은 OECD의 지침 중 디지털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전가격과세 지침에 제시된 계열사 간 이익배분 방식은 크게 거래기준법(transaction methods)과 이익배분법(profit allocation methods)으로 구분된다. 거래기준법은 발생한 거래의 특성과 유사한 비교 가능한 거래에서 발생한 가격을 근거로 계열사 간 거래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하고, 이익배분법은 이익을 계열사의 역할을 대변하는 지표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기존의 OECD 지침은 거래기준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거래기준법이 불가능한 경우에 이익배분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거래기준법이 시장에서의 거래가격을 바탕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반면, 이익배분법의 경우에는 배분방식에 대한 경제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에서는 비교 가능한 거래를 찾지 못하여 거래기준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그러

므로 BEPS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개정한 지침에서는 이익배분법 중 계열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역할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이익분할법(profit-split method)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BEPS 프로젝트의 Action 8에서는 무형자산 등의 법적 소유권과 실질적 소유권이 다른 경우에, 무형자산을 형성하는 데 실제 기여한 비율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ction 9에서는 위험자산의 이전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위험의 부담, 관리, 통제, 책임 등 위험과 관련된 기능을 실제로 수행한 기업에만 수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Action 10에서는 회계, 세무, 감사, 인사 등 경영지원 성격의 용역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이익분할 방식을 적용하여 이익을 배분할 것을 권고하였다.[11)]

이전가격과세와 관련하여 BEPS 프로젝트의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는 다국적 기업의 정보보고 의무를 강화한 것이다. Action 13에서는 다국적 기업이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정리하여 각국 정부에 보고하고, 각국 정부는 그 정보를 관련 국가들과 공유할 것을 요구하였다. Action 13은 최소 기준(minimum standard)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들은 모두 이행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다. 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마스터파일(master file)과 로컬파일(local file), 그리고 국가별 보고서(country by country report)로 구성된다. 마스터파일은 다국적 기업의 모회사와 그룹 전체에 대한 정보를 담은 것이며, 로컬파일은 현지 법인의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대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리고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각 조세 관할권역별로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분, 각 권역별 사업체의 수행 기능 등에 대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다국적 기업 모회사가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12)] Action 13은 기업과 과세당국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의도한 대로 정보가 제출·교환되고 효과적으로 사용된다면 조세회피 목적의 이익배분 억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OECD는 BEPS 프로젝트 결과를 반영하여 2017년에 이전가격과세 지침을 개정하였다.[13)] 제I장의 Section D를 수정하여 제3자 가격원칙(the arm's length principle)을 적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포함하였으며, 제I장에 이전가격 결정에서의 비교 요소로 지역적 차이에 따른 비용절감, 기존 인력 사용, 다국적 기업 집단의 시너지효과를 포함하였다. 또한 제II장에 상품거래에 대한 이전가격 규정을

BEPS 프로젝트를 통해 새롭게 개정한 지침에서는 계열사가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 역할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이익분할법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11) 안종석(2016), pp. 18~19.
12) 안종석(2016), pp. 16~17.
13) OECD(2017)

BEPS 프로젝트는 기존의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배분원칙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그 원칙을 잘 이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가하였으며, 제VII장의 기업집단 내에서 제공되는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였다. 무형 재화를 다루는 제VI장, 비용분담계약을 다루는 제VIII장, 이전가격 자료 문서화를 다루는 제V장의 새로운 버전을 작성하였다.[14)]

3. BEPS 프로젝트의 평가

BEPS 프로젝트는 기존의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배분원칙을 유지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하여, 그 원칙을 잘 이행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물리적 실체가 없어도 디지털 실체가 있으면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하도록 모델조약을 개정하였다. 그리고 사업장 간 소득의 배분에 있어서는 거래기준법에 집착하지 않고 이익분할법을 적용하여 기여도 등 역할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기업과 과세당국 간 정보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기업의 정보제출 의무와 국가 간 정보교환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BEPS 프로젝트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몇 가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디지털 실체의 고정사업장을 판단하고, 계열사 간 이익을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제적 실질을 판단함에 있어 임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고, 이 경우 조세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OECD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OECD, 2018).

두 번째는 정보교환의 효과성 문제이다. BEPS 프로젝트는 기업에 다국적 기업의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보가 실제로 과세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BEPS 프로젝트 결과를 반영하여 정보보고 의무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다. 이 정보들이 다른 국가와 공유되기는 하겠지만, 그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과세에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이다. 물론 정보를 제공한 기업들은 과세당국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행동할 것이므로, 정보보고 자체가 조세회피를 획기적으로 축소시킬 것으로 기대되긴 한다. 또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당국에서 자료를 추적하여 조사할 수 있으므로 기업이 제출한 정보가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

14) EY Global Tax Alert(2017), p. 2.

된다. 그러나 현재로선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세 번째는 이행에 소요되는 시간의 문제이다. OECD 모델조약이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2017년에 개정되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으려면 개별 국가들이 체결한 양자 간 조세조약이 개정되어야 하며, 국내법도 개정되어야 한다. 이전가격과세지침도 2017년에 개정되었는데, 개별 국가들이 이 지침의 변화를 국내 규정에 반영하고 실제로 이행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BEPS 프로젝트 이후의 추진 경과를 정리한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 다수의 국가가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OECD, 2018).

마지막으로 BEPS 프로젝트는 기존 과세권 배분원칙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의 과세권 배분원칙은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며, BEPS 프로젝트는 기존의 과세권 배분원칙을 유지하면서 원천지 과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원천지 과세원칙은 조세경쟁에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BEPS 프로젝트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천지 과세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사업활동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원천지 과세원칙은 조세경쟁에 취약하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BEPS 프로젝트는 이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천지 과세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사업활동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을 더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Ⅳ. 디지털 서비스세 등

BEPS 프로젝트가 완료된 이후 개별 국가들은 BEPS 프로젝트의 권고사항을 자국 법률이나 조세조약 등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일부 국가에서는 새로운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영국과 호주에서는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 Tax)를 도입하였고, EC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도입할 것을 EU 회원국들에 권고하였다.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제도들이 BEPS 프로젝트와 완전히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개별 국가들에 BEPS 프로젝트의 이행을 촉진하고, 동시에 자국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 두 가지 과세제도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본다.

영국은 우회이익세(DPT)가 영국 내 사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영국의 과세권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BEPS 프로젝트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1.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 Tax: DPT)

영국은 2015년에 우회이익세(이하 'DPT')를 도입하였고, 호주에서는 2017년에 도입하였다. 먼저 도입한 영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우회이익세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15)]

영국의 우회이익세는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남용하거나 실체가 결여된 거래를 통하여 영국의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정상적인 법인세율 20%보다 높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 내용만으로 봐서는 고정사업장 개념의 남용에 대한 벌과금적 성격의 중과세안인 것처럼 보이나, 영국은 DPT가 완전히 새로운 세금이라고 주장한다. 법인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법인세로 포착하지 못한 세원에 대해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이라는 것이다. 영국 과세당국은 이 제도에 대해 영국에서 발생한 기업의 소득이 이익의 이전(profit shifting)으로 인해 영국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실질적으로 영국 내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영국의 과세권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BEPS 프로젝트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DPT는 디지털 경제가 주요 타깃이 되기는 하겠지만 이 분야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된다. 다만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DPT는 신고납부세가 아니고 과세관청에서 부과징수하는 세목이다.[16)]

DPT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생하는 영국 발생 이익의 우회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1) 외국 기업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영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익을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경우(Finance Act 2015, Section 86)

(2) 그룹 내 지출이나 이익의 우회를 통하여 세금 불일치를 악용하는, 경제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arrangements)나 단체(entities)를 활용하는 경우(Section 80, 81)

Section 80과 81에 규정된, 경제적 실질이 결여된 거래나 단체에 대한 DPT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는 ① 실질적인 세금 불일치(the effective tax mismatch outcome)와 ② 경제적 실질의 부족(the insufficient economic substance)이다.

실질적인 세금 불일치는 해당 거래나 단체(entity)에 따른 지출이나 소득 이전으로 영국에서 감소된 세액과 그로 인해 다른 국가에서 증가된 세액을 비교하여

15) 호주의 DPT는 호주 국세청 홈페이지의 DPT 설명 참조, https://www.ato.gov.au/general/new- legislation/in-detail/direct-taxes/income-tax-for-businesses/diverted-profits-tax/?= redirected, 검색일자: 2019. 2. 12.

16) HM Revenue and Customs (2018), PP. 3~5.

평가한다. 다른 국가에서 증가된 세액이 영국에서 감소된 세액의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세금 불일치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한다. 경제적 실질의 부족은 거래 기준 테스트와 단체(entity) 기준 테스트로 구분한다. 계열사 간 거래 또는 자회사나 지점, 대리점 등 단체의 설치 및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세부담 절감액보다 작은 경우에 DPT 적용 대상이 된다. 이때 계열사 간 거래나 단체의 운영에 따른 경제적 이익에 세부담 절감액은 포함하지 않는다.[17]

Section 86에 규정된 고정사업장이 결여된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

(1) 외국 기업이 영국에서 거래를 계속하고,

(2) 특정인(a person), 즉 회피된 고정사업장(the avoided PE)이 영국 내에서 그 외국 기업의 재화나 용역, 그 외 재산을 공급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3) 그 외국 기업이 영국 내에서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이러한 거래 구조가 고안되었고,

(4) 그 회피된 고정사업장과 외국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고정사업장 결여에 대한 DPT는 그 결여로 인해 불일치 요건(the mismatch condition)에 해당되는 결과가 나타날 때, 또는 그 결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고안된 경우에 적용된다. 불일치 요건은 세금 불일치와 경제적 실질 부족을 의미한다. 조세회피 목적 요건은 재화나 용역, 기타 재산의 공급과 관련한 거래의 주요 목적(main purpose) 중 하나가 영국 법인세를 회피하거나 세부담을 절감하는 데 있는 경우를 말한다.[18]

우회이익세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기존의 과세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틀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DPT는 적용 대상이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와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가격 문제가 과세의 핵심이 된다. 기존의 이전가격과세제도에서는 시장가격 또는 사업장의 역할을 고려하여 이익 이전의 정당성을 평가한다. 그런데 DPT에서는 세부담이 감소하였는지, 세부담 감소를 능가하는 다른 경제적 이익이 있었는지를 평가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기존의 이전가격과세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룰이 적용되며, 그 룰은 기존 룰에 비해 매우 엄격하다. 고정사업장이 결여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이전가격 룰을 적용하여 회피된 고정사업장의 이익을 계산한다. 이러한 새로운 룰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DPT는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하여

우회이익세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기존의 과세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틀로 접근한다는 점이다.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17) HM Revenue and Customs (2018), pp. 25~32 참조
18) HM Revenue and Customs (2018), pp. 16~19 참조

BEPS 프로젝트의 논의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제 개혁방안으로, EC는 디지털 실체에 공통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확인된 디지털 실체의 경우 그 기능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세하기보다는 기업들로 하여금 정당한 이전가격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데 더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DPT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과세 요건과 과세 대상 소득 규모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을 것이다.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하여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2.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 DST)

2018년 3월에 EC(European Commission)는 EU 회원국들에 디지털 서비스세(이하 'DST')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19] DST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디지털 서비스 매출액에 정률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매출세(turnover tax)이다. EC는 보고서에서 먼저 장기적 목표를 제시하고, 장기적 목표 달성 이전 단계에서의 임시적 DST 도입을 주장하였다. 장기적 목표는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인세제를 개혁하는 것이다. 즉, 물리적 실체가 없더라도 디지털 실체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과세할 수 있도록 법인세제를 개편하자는 것으로 BEPS 프로젝트의 목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적 목표를 달성하기 이전 단계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DST는 BEPS 프로젝트의 결과가 현실화되기 이전 단계에서 적용하는 임시적 조치라고 할 수 있다.[20]

BEPS 프로젝트의 논의 결과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법인세제 개혁방안으로, EC는 디지털 실체에 대해 공통적인 개념을 적용하고, 확인된 디지털 실체의 경우에는 그 기능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제안에 따르면, EU 내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다음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 실질적인 디지털 실체(a significant digital presence)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21]

(1) 한 과세기간 내에 한 회원국 내의 사용자에게 공급된 디지털 서비스 공급액이 700만유로를 초과함
(2) 한 과세기간 내에 한 회원국에서 디지털 서비스 사용자가 10만명을 초과함
(3) 한 과세기간 내에 한 회원국에서 체결된 디지털 서비스 공급을 위한 사업계약이 3천건을 초과함

19) EC(2018b)
20) EC(2018a), p. 3.
21) EC(2018c), p. 16.

법인세제 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전에 단기적 조치로 EC가 제안한 DST 안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 매출액에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자는 것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는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 사용자 제공 정보에서 생성된 데이터 판매이다. 총매출액이 7억 5천만유로, EU 내 매출액 5천만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된다.[22]

EC의 제안에 대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국가는 상당히 적극적이며, 프랑스는 2019년 1월 1일부터 GAFA Tax라는 이름으로 DST를 도입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전 세계 매출액이 7억 5천만달러 이상인 대기업에 적용되며, 주요 타깃은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등 세계의 인터넷 서비스 시장을 지배하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이다. 인터넷 광고, 웹사이트, 사적 정보의 판매 등에 따른 수입이 과세 대상이 되며, 세율은 3%이다. 프랑스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GAFA Tax 입법을 완료하여 시행할 계획이다.[23] 영국은 2018년 예산안에 DST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 4월부터 과세할 예정이다. 영국의 DST 과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는 소셜미디어, 검색엔진,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이며, 세계 매출액이 5억유로 이상이고 영국 사용자에 대한 매출액이 2,500만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할 예정이다. 세율은 2%이다.[24]

한편 EU 국가 중에서도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웨덴 등 작은 국가들은 DST 도입에 소극적이다. 큰 국가 중에서는 독일이 소극적인 편이다. 이들 국가의 반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EC에서는 2018년 11월에 적용시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한시적인 제도로 도입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하였으며, 프랑스는 2018년 12월에 독일과 협의하여 2020~2025년에 한하여 온라인 광고에만 적용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수정 제안이 구체적인 성과를 달성하지는 못하였다. DST 도입을 꺼리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국가들은 매출액 과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복과세의 문제점과 비효율성,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기업에만 적용되어 시장에서의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효과가 크다는 점, 주요 과세 대상 기업의 거주지인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국가에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개별 국가의 과세 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다.[25] 또한 법인세와 달리 적자기업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DST는 수익률이 낮은 기업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법인세제 개혁을 완료하기 전에 단기적 조치로 EC가 제안한 DST안은 디지털 서비스 기업 매출액에 3%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자는 것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디지털 서비스는 온라인 광고, 디지털 중개, 사용자 제공 정보에서 생성된 데이터 판매이다.

22) DST의 구체적인 내용은 EC (2018b), pp. 7~14 참조
23) GAFA: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AFP(2018) 참조
2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2018), pp. 14~16.
25) Guarascio(2018); Kahn and Brunsden(2018); Bunn(2018) 참조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득이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한 임의적 가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가정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들 외에도 Bunn(2018)은 소비자 거주지에서 전적으로 과세하는 데 따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EC에서 DST를 제안한 것은 EU 밖의 기업들이 개발한 인터넷 페이지나 웹사이트를 EU 거주자들이 이용하여 클릭할 때마다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들이 EU 국가들에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데서 출발한다. EU 거주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클릭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를 EU 국가, 즉 서비스 이용자 거주지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소비자 거주지와 소득 원천지가 다른 경우에 인터넷 서비스 가치 평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거주자가 구글의 광고를 보고 자메이카의 호텔을 예약하고 숙박한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광고서비스는 구글과 자메이카 호텔 간의 계약과 양자의 노력에 의해 성립되었다. 광고비는 자메이카의 호텔이 구글에 지불하였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여행자 입장에서 광고서비스는 무상서비스이다.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혜택만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EC의 DST 개념에 따르면, 그 광고는 오스트리아에서 이용되었으며, 그 광고를 클릭함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오스트리아에 DST로 납부해야 한다. 자메이카 호텔이 지불한 광고 중 얼마를 오스트리아 매출로 보고 DST를 적용해야 하는가?

이 여행자가 여행 중에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업로드하면, 페이스북은 자료가 더 축적되며, 그로 인해 미래의 광고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이 사진을 업로드함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수입의 증가분을 과세 대상으로 하여 DST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업로드한 사진 중에는 향후 광고수입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이때 과세 대상 매출액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와 같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따른 매출액을 계산해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부득이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가가치에 대한 임의적 가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잘못된 가정으로 인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많은 인터넷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인터넷 서비스의 가치 평가는 더욱 어렵다.

Ⅴ.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

지금까지 논의한 BEPS 프로젝트와 우회이익세(DPT), 디지털 서비스세(DST)는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와 과세권 배분원칙을 그대로 두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BEPS 프로젝트가 가장 기본이 되며, 우회이익세와 디지털 서비스세는 BEPS 프로젝트에서 제안한 개편안들이 시행·정착되기까지 중간단계에서 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방안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편방안들은 모두 현행 과세권 배분원칙, 즉 원천지 과세원칙을 확실하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원천지 과세원칙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즉 조세경쟁의 문제는 개선하지 못한다. 오히려 원천지 과세원칙이 더 확실하게 시행되면 조세경쟁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BEPS 프로젝트에 기반한 법인세 과세체계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는다. 심화되는 조세경쟁의 단적인 예로 영국은 우회이익세를 도입하고 디지털 서비스 도입을 예고하여 디지털 서비스 기업의 이익에 대한 영국의 과세권을 확보하는 데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세율을 과감하게 인하하였다. 2010년에 28%였던 영국 법인세율이 2015년에는 20%, 2018년에는 19%가 되었다.

이동성이 큰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원천지에 과세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경쟁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운 과세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동성이 낮은 활동이 수행되는 지역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방향으로 법인세제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 투자자 거주지에서 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과 최종소비자 거주지에서 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투자자 거주지와 소비자 거주지가 이동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고정사업장에 비해서는 이동성이 현저하게 낮을 것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음에서는 투자자 거주지 또는 소비지에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법인세제 개혁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그 전에 다국적 기업의 소득을 일정한 공식에 따라 관련된 사업장에 배분하자는 주장에 대해 먼저 검토한다. 공식의 설정에 따라 원천지 과세원칙에 의한 과세권 배분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방안도 법인세의 과세권 배분원칙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BEPS 프로젝트와 우회이익세(DPT), 디지털 서비스세(DST)는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와 과세권 배분원칙을 그대로 두고 디지털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여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BEPS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 실체를 고려하여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고정사업장 간 이익배분은 각 사업장의 역할을 고려하여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

1. 공식에 따른 과세소득 배분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거래별로 비교 대상이 되는 거래를 찾아서 제3자 가격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이전가격을 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거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타당한 근거에 따라 이익을 관련 사업장에 배분하는 이익배분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익배분법은 또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사업장별 역할을 평가하여 각 사업장이 기업의 이익 창출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이익을 분할하는 방법(이익분할법: profit-split method)이고, 다른 하나는 일정한 공식을 정하여 그 공식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이다. 후자를 공식에 따른 이익배분방식(formulary apportionment method)이라고 한다.

BEPS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 실체를 고려하여 고정사업장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고, 고정사업장 간 이익배분은 각 사업장의 역할을 고려하여 기여도에 따라 배분하는 이익분할법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배분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을 고려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경제적 실질이 모두 수치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적 판단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문제를 우회하는 방안으로 사전에 정해진 공식에 따라 이익을 배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익분할법은 거래별로 관련된 사업장의 역할을 파악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산식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인 데 비해 공식에 따른 배분은 사전에 만들어진 공식을 일괄적으로 모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공식에 따른 배분은 단순 명확하여 임의적 판단에 따른 분쟁의 여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매출액을 이익배분 요소 중 하나로 공식에 포함시킴으로써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이익이 배분되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식에 따른 이익배분방식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익배분의 결과가 경제적 실질과 다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어떤 지표를 사용하여 어떤 공식을 사용하든 이익배분의 결과가 각 국가의 사업장에서 기여한 정도와 동일하다는 보장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공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공식에 대해 합의가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과 다름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기업과 국가들의 불만은 계속될 것이다. 그뿐만 아니

라 국가 간 세율 격차가 유지되는 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국적 기업의 생산요소 및 생산활동 배분 변화가 계속될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조세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투자자 거주지 과세방식

Toder and Viard(2014)는 원천지 과세에 따른 조세경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투자자 거주지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투자자 거주지는 다국적 기업 모회사 거주지가 아니라 모회사의 지분을 가진 주주의 거주지를 말한다. 그러므로 법인소득에 대해 투자자 거주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인소득을 투자자 개인에게 귀속시켜 개인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방안으로 Toder와 Viard는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개인 단계에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미국의 파트너십이나 S-corporation과 같이 법인은 통과기관(pass-through entity)으로 보고 배당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귀속시켜 과세하면 된다.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배당과 자본이득으로 구분하여, 배당소득은 개인소득에 포함시켜 개인소득세를 적용하고, 배당되지 않은 이익은 법인의 주식가격에 반영된다고 보아 시가평가방식(mark-to-market basis)으로 주식가격을 평가하여 개인소득에 포함시킨다.

이후 Grubert and Altshuler(2016)는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15%로 세율을 낮춰서 유지하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강화하여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본이득의 경우, 주주가 주식을 매각하여 이익을 실현하였을 때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인세를 폐지하는 대신 15%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세행정상의 문제를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OECD 회원국 중 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들이 대체로 10~15%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미국이 법인세율을 15% 수준으로 낮추면 디지털 경제, 사업활동의 세계화, 조세경쟁 등에 따른 과세 기반 잠식의 문제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라는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실현된 이후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Grubert and Altshuler(2016)는 법인세를 완전히 폐지하기보다는 15%로 세율을 낮춰서 유지하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은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강화하여 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소비지 과세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은 법인세제를 현금흐름과세로 전환하고, 국가 간 과세권 배분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소비지 과세원칙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한편 실현된 자본이득이 매년 발생한 자본이득의 누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세 시 이연된 자본이득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징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집행상의 문제이다. 특히 다국적 기업 본사의 소재지역과 투자자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투자자 거주지 과세당국이 정보를 입수하고 과세행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더 클 것이다. 또한 법인소득에 대한 세율체계와 개인소득에 대한 세율체계가 다르므로 이러한 개편으로 이익을 얻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발생할 수 있다. 매년 자본이득을 평가하여 과세에 반영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매년 이익이 발생하면 문제가 없는데, 손실이 발생하는 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이전 연도나 이후 연도의 이익과 상쇄하여야 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익이 실현되었을 때 과세하고 이전 연도 발생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 문제는 발생한다.

3. 소비지 과세방식

Devereaux and Vella(2014; 2017), Auerbach, Devereaux, Keen, and Vella(2017) 등은 다국적 기업의 이익에 대해 소비지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는 현행 법인세제를 현금흐름과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경조정을 하면 소비지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현금흐름과세는 현금흐름을 계산하는 적용 대상에 따라 실질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 기반(R-base) 현금흐름과세, 실질거래와 금융거래를 포함하는 금융거래 포함((R+F)-base) 현금흐름과세, 주식거래를 기반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주식거래 기반(S-base) 현금흐름과세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연구들은 금융거래 포함 과세를 기준으로 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R+F) 현금흐름과세에서는 실질 재화와 용역의 총매출액에 차입금, 이자수입, 대여금의 원금상환액과 같은 금융거래 수입을 더한 금액이 총수입이 되고 실질 재화와 용역의 총매입액에 지급이자, 차입금 상환액, 대여금과 같은 금융거래상의 지출을 더한 금액이 총지출이 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된다. 주식거래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R+F) 과세표준 = (실질 재화와 용역의 총매출 + 차입금 + 이자수입
+ 대여금의 원금상환액) - (실질 재화와 용역의 총매입
+ 지급이자 + 차입금 상환액 + 대여금)

기업이 일정한 규모의 자금을 차입하여 전액을 실물에 투자하는 경우에, 차입금과 투자액이 각각 수입과 지출에 포함되므로 서로 상쇄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지급액은 지출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차입금을 통한 투자의 수익에 대해서는 정상수익률(이자율)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자기자본 투자의 경우, 자본의 유입은 주식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실물에 대한 투자액은 비용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그 투자액의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든 정상수익(normal profit)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고, 이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금흐름과세는 투자에 대해 중립적이다.

소비지 과세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은 현금흐름과세에서의 국가 간 과세권 배분과 관련해서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소비지 과세원칙(destination principle)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수출은 비과세하고 수입은 과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금흐름과세를 소비지 기반 현금흐름과세(Destination-Based Cash Flow Tax: DBCFT)라고 한다.

<표 2>에 정리된 사례를 보면, 한 기업이 노동비용 60, 그 외 비용 40의 비용을 들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A국과 B국에서 판매하였는데, A국에서 판매한 금액이 150이고, B국에서 판매한 금액도 150이다. A국의 DBCFT 과세표준에는 수출액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A국 내 매출액 150에서 A국 내에서 지불한 비용을 차감한 50이 A국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20%의 세율을 적용하면 납부해야 할 세금은 10이 된다. B국의 DBCFT 과세표준은 150인데, 이는 B국 내 매출액 150과 같은 금액이다. B국에서는 지불한 비용이 없으므로 매출액이 그대로 과세표준이 된다. 그러므로 세율이 30%인 B국에 납부해야 할 DBCFT 세액은 45가 되고, A국 세금과 합하면 총납부해야 할 세액은 55가 된다.[26] <표 2>의 아래 부분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는 현행 법인세제를 현금흐름과세로 전환하고,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국경조정을 하면 소비지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

26) 이 사례에서는 편의상 R-base 현금흐름과세를 고려하였다.

현금흐름과세는 당기에 수입된 금액에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 지출이 지출 시점에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발생주의에 비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DBCFT와 부가가치세의 세부담을 비교하였다. R-base 현금흐름과세의 경우, 현금흐름과세의 과세표준은 총매출액에서 원재료 등 중간재 매입액과 노동비용을 차감한 것과 같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총매출에서 원재료 등 중간재 매입액을 차감한 것과 같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현금흐름과세 과세표준에 노동비용을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금흐름과세와 부가가치세가 같은 세율로 과세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현금흐름과세 납부세액에 노동비용에 해당하는 세금, 즉 노동비용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더한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금흐름과세 대신 부가가치세를 같은 세율로 부과하고, 노동비용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면 현금흐름과세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표 2> DBCFT의 국경조정 사례: 부가가치세와의 비교

구분	A국	B국	합계
세율	20%	30%	
노동비용	60	0	60
기타비용	40	0	40
판매액	150	150	300
DBCFT 과세표준	50	150	200
DBCFT 부담액	10	45	55
VAT 과세표준	110	150	260
VAT 부담액	22	45	67
노동비용 보조	-12	0	-12
VAT+노동비용 보조	10	45	55

출처: Auerbach, Devereaux, Keen, and Vella(2017), p. 14.

DBCFT는 몇 가지 중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당기에 수입된 금액에서 지출된 금액을 차감한 것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투자 지출이 지출 시점에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므로 발생주의에 비해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상 이윤(normal profit)을 제외한 경제적 이윤(economic profit)에 대해서만 과세하며 자본조달 방식과 관련하여 차입금과 자기자본 조달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들은 기존의 발생주의에 입각한 법인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다.

국가 간 세원배분과 관련해서는 소비지(destination) 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기업의 지역 간 이동에 대해 중립적이므로 조세경쟁으로부터 자유롭고, BEPS 문제

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소비자가 거주지를 이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기업이 복잡한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거주지를 조작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DBCFT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기업의 소득을 모두 소비지에 배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익 기여도에 따른 배분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R&D가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R&D를 수행한 국가와 소비지가 다르다면 R&D를 수행한 국가에서는 이 기업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데,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Devereaux and Vella(2017)는 R&D가 기업의 이익 창출에 필요한 기능일 수는 있지만 R&D만으로는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익은 매출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비가 될 것이다. 현행 세제에서도 소비지는 중요한 소득 원천지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Devereaux and Vella(2017)는 DBCFT가 법인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으로서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현실적인 문제로, 현행 발생주의 과세를 현금주의 과세로 전환하는데 상당한 이행기간이 소요되며, 그에 따른 비용과 혼란이 우려된다는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세계 각국의 법인세 과세체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현금주의 과세로 전환되는 것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와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 및 보조율 조정으로 DBCFT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BEPS와 조세경쟁으로 인해 법인세 과세 기반이 계속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부가가치세와 노동소득에 대한 세율 및 보조율 조정으로 DBCFT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BEPS와 조세경쟁으로 인해 법인세 과세 기반이 계속 잠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Ⅵ. 향후 전망과 정책 시사점

디지털 기술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면서 이익이 저세율국으로 이전되어 축적되고 세계적으로 법인세 과세 기반이 잠식되는 BEPS 현상이 가속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G20과 OECD에서 주관하여 BEPS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BEPS 프로젝트는 많은 국가들이 합의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이고, 현행 과세체계하에서 개별 국가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므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BEPS 프로젝트는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와 국가 간 과세권 배분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디지털 경제가 야기하는 문제를 고려하여 고정사업장의 개념, 이전가격과세제도 등을 개편하고 과세당국의 정보 확보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경제 분야의 기업 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조속히 확보하기 위하여 우회이익세, 디지털 서비스세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도 있으며, 도입을 준비하는 국가도 있다. EC는 BEPS 프로젝트의 결과가 반영된 법인세체계가 완성되기까지 잠정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를 도입할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하였다. 우회이익세와 디지털 서비스세는 BEPS 프로젝트의 틀 내에서, 중간단계에서 자국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조속히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둔 것들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기존의 과세권 배분원칙, 즉 원천지 과세원칙을 유지하면서 원천지 국가의 과세를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이에 대해 원천지에 과세권을 배분하는 현행 과세체계는, 행정적인 문제가 완전히 개선되더라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들이 있다. 원천지 과세원칙하에서는 고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업활동을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개별 국가들은 그 사업활동이 자국에서 행해지도록 유도할 유인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조세경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법인세제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지속가능한 과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Toder and Viard(2014), Grubert and Altshuler(2016) 등은 투자자 거주지에서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Devereaux and Vella(2014; 2017), Auerbach, Devereaux, Keen, and Vella(2017) 등은 소비지 과세방안을 제시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지 전망해 보면, 일단 BEPS 프로젝트는 많은 국가들이 합의하여 결론을 도출한 것이고, 현행 과세체계하에서 개별 국가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므로 계속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BEPS 프로젝트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와 행정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시장에서 영향을 발휘하여 과세 결과를 현저하게 개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국가들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양자 간 조세조약의 관련 조항도 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정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국가들도 있다. OECD에서는 Inclusive Framework on BEPS라는 조직을 설치하여 BEPS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후속작

업을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를 위한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일차적으로 202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27)]

다른 한편으로는 중간단계의 조치로서 우회이익세와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한 논의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제도들이 많은 국가로 확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우회이익세의 경우 과세 요건 판단이 어려워 제도가 복잡하고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우회이익세가 이전가격 문제에 대해 기존의 이전가격세제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데, 새로운 원칙에 대해서는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비효율적인 매출세의 형식을 띠고 있으며,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액을 평가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U 내에서도 상당수의 국가가 이 제도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회이익세와 디지털 서비스세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제도들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제도들이 적용하는 과세원칙에 대해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다. 국내적으로도 당장은 세수 확보를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지배적인 역할을 하는 영국 등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업체에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들을 서둘러 도입하기보다는, 먼저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세수 손실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보고, 다른 국가의 시행 결과와 드러나는 문제점을 확인한 이후에 도입 여부를 검토해도 될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제의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학자들의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많은 학자들이 현행 법인세제의 문제점에 동의하고 있으며, 원천지 과세원칙이 조세경쟁을 야기한다는 점도 명확하기 때문이다. 개혁방안 중 투자자 거주지 과세방안보다는 소비지 기반의 현금흐름과세가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자의 경우 주익양도차익 과세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세를 폐지하면 과세행정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낮은 수준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제의 문제점이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금흐름과세제도는 이와 같은 문제가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법인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경조

현금흐름과세제도는 현행 법인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며, 국경조정도 용이하고 안정적이다. 또한 투자와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현행 법인세제와 똑같은 수준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27) OECD(2018) 참조

국가의 경쟁력이 낮은 상태이면 법인세율도 낮은 상태로 유지하여 기업활동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부족한 세수입은 이동성이 낮은 세원에 부과되는 다른 세목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정도 용이하고 안정적이다. 또한 투자와 수출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현행 법인세제와 똑같은 수준의 세수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현금흐름과세로의 전환이 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현행 제도와의 차이가 크고,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이 길며, 그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 간 조세경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의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 각국의 세율 인하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국가가 법인세율 정책을 결정할 때, 먼저 재정수요를 고려할 것이다. 재정수요와 다른 세목의 세수입을 검토하여 법인세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세수입 규모를 산정하고, 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세율로 세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고려요소가 있다. 바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다. 국가 경제가 안정적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으며, 시장성이 좋아 수요처 확보에 유리하고, 관련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면, 즉 포괄적으로 보아 국가의 경쟁력이 양호하면 다른 국가보다 다소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여도 사업활동을 유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경쟁력이 낮은 상태이면 법인세율도 낮은 상태로 유지하여 기업활동을 유치하는 데 기여하고, 부족한 세수입은 이동성이 낮은 세원에 부과되는 다른 세목을 통해서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면 사업활동이 증가하여 세수입이 증가될 수도 있다.

그동안의 동향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에 비해 국가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에는 미국의 국세 법인세율이 35%였는데, OECD 회원국 중 6개 국가에서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였다.[28] 이후 미국은 35%의 세율을 계속 유지한 반면, 다른 국가들은 세율을 인하하여 2005년에는 모든 회원국이 미국보다 낮은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그 이후에도 2017년까지 프랑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였다.[29] 미국이 2018년에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는데, 이로 인해 회원국 중 19개 국가에서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높아지게 되었다.[30]

법인세율을 결정할 때 조세경쟁 외에도 국가의 재정수요 등 다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므로 미국보다 세율이 높은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조정하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일부 국가는 계속 미국보다 높은 세율을 유지할 수도

28) 6개 국가: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벨기에, 프랑스
29) 예외적으로 프랑스는 34%대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한 적도 있고 3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한 적도 있다. 2016년의 프랑스 법인세율은 38%였으며, 2018년에는 34.43%였다.
30) OECD Tax Database, 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검색일자: 2018. 12. 20.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가는 법인세율을 미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추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법인세율을 인하하면서 부가가치세, 소득세, 노동소득에 대한 보조금 등을 적절히 조절하면 세수 손실 없이 현금흐름과세가 추구하는 것과 유사한 방향으로의 변화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22%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18년에 25%로 인상하였다. 이는 국가경쟁력을 고려한 조세경쟁의 관점보다는 재정수입 확보의 필요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조세정책에서는 BEPS 프로젝트 이후의 조세경쟁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조세정책에서는 BEPS 프로젝트 이후의 조세경쟁 문제도 신중하게 고려하여,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세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훈, 「고정사업장 개념 변경 여부와 해외이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 여부」, 2018년 한국국제조세협회 국제조세 컨퍼런스 발표자료집,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반영한 바람직한 세제개편의 방향』, 한국국제조세협회, 2018. 11, pp. 75~98.

안종석,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행태와 시사점: 애플·구글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통권 제205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7, pp. 6~19.

_____, 「BEPS 프로젝트의 이해: 주요 내용과 시사점」, 『재정포럼』, 통권 제239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5, pp. 6~29.

안종석·김성태, 『법인세 과세체계의 근본적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 『디지털 경제의 주요 특징과 조세쟁점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_____, 「주요국의 조세동향」, 18-11호, 2018.

AFP, “France to push ahad with digital tax starting January 1,” December 11, 2018.

Auerbach, Alan, Michael P. Devereaux, Michael Keen, and John Vella, "Destination-Based Cash Flow Taxation," Oxford University Center for Business Taxation, WP 17/01, 2017.

Bunn, Daniel, "A Summary of Criticisms of the EU Digital Tax," Tax Foundation, 22 October, 2018.

Devereaux, Michael P., and John Vella, "Implications of Degitalization for International Corporate Tax Reform," in Sanjeev Gupta, Mjchael Keen, Alpha Shah, and Geneviève Vendier (ed), *Digital Revolutions in Public Finan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2017, pp. 91~112.

_____, "Are We Heading towards a Corporate Tax System Fit for the 21st Century?," *Fiscal Studies*, Vol. 35, No. 4, 2014, pp. 449~475.

EC, "Digital Taxation: Commission proposes new measures to ensure that all companies pay fair tax in the EU," EC Press release, Brussels, 21 March 2018a.

_____,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the Common System of a Digital Services Tax on Revenues Resulting from the Provision of Certain Digital Services," Brussels, March 21, 2018b.

_____,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Laying Down Rules Relating to the Corporation Taxation of a Significant Digital Presence," Brussels, March 21, 2018c.

EY Global Tax Alert, "OECD releases 2017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www.ey.com/taxalerts, July 14, 2017.

Grubert, Harry and Rosanne Altshuler, "Shifting the Burden of Taxation from the Corporation to the Personal Level and Getting the Corporate Tax Rate Down to 15 Percent," National Tax Journal, 69(3), 2016, pp. 643~679.

Guarascio, Francesco, "EU makes new offer to reluctant states on digital tax: document," Reuters, Business News, November 1, 2018.

HM Revenue and Customs, UK, *Diverted Profit Tax*: Guidance, December 2018.

Kahn, Mehereen and Jim Brunsden, "France and Germany abandon plans for EU digital tax," EU Tech Regulation, December 5, 2018.

OECD, *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Action 1 - 2015 Final Report*,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5.

_____,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ax Administrations, OECD Publishing*, Paris, 2017.

_____,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 Interim Report 2018 : Inclusive Framework on BEPS*,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OECD Publishing, Paris, 2018.

Toder, Eric and Alan D. Viard, "Major Surgery Needed: A Call for Structural Reform of the U.S. Corporate Income Tax," Tax Policy Center Research Report, Urban-Brookings Tax Ploicy Center, washington, DC, 2014.

Australian Taxation Office, Diverted Profit Tax, https://www.ato.gov.au/general/new- legislation/in-detail/direct-taxes/income-tax-for-businesses/diverted-profits-tax/ ?=redirected, 검색일자: 2019. 2. 12.

OECD Tax Database, http://www.oecd.org/tax/tax-policy/tax-database.htm, 검색일자: 2018. 12. 20.

고령화와 보건지출 - 단일지수 모형을 이용한 준모수적 추정[1)]

송호신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hsong@ewha.ac.kr.)

Ⅰ. 서론

본 연구에서는 171개 국가들의 보건지출(health expenditure)을 결정하는 요인과 이들 요인이 보건지출에 미치는 평균 한계효과를 추정하고, 추정 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수준의 보건지출은 해당 국가의 소득수준, 인구구조 그리고 의료기술 수준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보건지출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특히 고령화와 사망률의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개인의 생애적인 측면에서 사망 직전 기간의 보건지출액 크기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2)] 기대수명 증가와 출산율 하락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노령층 인구의 증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인구적 요인인 노령층의 인구 증가,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 증가가 국가수준의 보건지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준모수적 추정방법인 단일지수 모형(single-index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가의 총보건지출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경제적 요인 그리고 인구적 요인이라는 데에는 기존 문헌들에서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동의가 이루어져왔다.[3)]

대부분의 연구들은 국가의 보건지출이 경제적 요인 및 인구적 요인들을 반영하는 변수들의 선형함수라는 가정을 채택해왔다. Baltagi and Moscone(2010), Hartwig and Sturm(2014), Herwartz and Theilen(2003), Jeong and Lee(1995), Lago-Peñas·Cantarero-Prieto and Blázquez-Fernández(2013), Linden and Ray(2017)가 모두 보건지출의 조건부 기대함수가 설명변수들의 선형함수라고 가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보건지출의 조건부 기대함수에 대한

1) 본고는 송호신, 「고령화와 보건지출: 단일지수 모형을 이용한 국가수준의 분석」, 『2018 재정전문가 네트워크 거시재정분과 보고서: 고령화와 불확실성 시대의 거시재정 정책과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pp.97~117의 내용을 『재정포럼』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데이터 확보 및 정리 등 연구를 도와준 이화여대 경제학 석사 황지수(현 Cornell 경제학 박사과정)에게 감사를 표한다.

구체적인 함수식(specific functional form)은 이론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모형설정의 오류(model specification error)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분석의 편의성 때문에 선형모형을 가정하고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모형에 대한 가정 대신 보다 완화된 조건하에서 보건지출의 조건부 기대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완화된 조건이라 함은 보건지출의 조건부 함수가 설명변수들의 선형함수라는 가정보다 덜 제약적인 조건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보건지출이 설명변수들의 선형결합인 단일지수(single-index)의 함수라는 것만 알려져 있고, 그 지수의 함수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약이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단일지수 모형은 선형모형과 같은 모수적인 추정에 비하여 훨씬 완화된 제약을 요구하면서도, 비모수적인 추정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제약을 요구하는 준모수적인(semi-parametric) 추정방법이다. 비모수적 추정에서 발생하는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추정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기에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비모수적인 추정에 비하여 실제 활용에 유용하다.[4]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준모수적인 추정방법인 단일지수 모형을 간단히 소개하면 식 (1)과 같다. 단일지수 모형의 추정은 Ichimura(1993)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다.

$$y = g(x'\beta) + u \qquad \text{식 (1)}$$

식 (1)에서 종속변수는 보건지출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이며, x는 설명변수 벡터이다. $x'\beta$가 단일지수(single index)라고 하는데, 이는 다차원인 설명변수 벡터와 모수 벡터의 정보가 일차원인 하나의 지수로 요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β는 알려져 있는 않은 모수 벡터이며, 함수 g도 그 함수 형태가 알려져 있지 않다. u는 교란항으로 $E[u|x] = 0$을 만족한다고 가정한다. 단일지수 모형의 추정은 모수벡터 β와 함수 g의 추정으로 이루어진다. 의미 있는 추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모수 벡터 β와 함수 g에 대한 식별(identification)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조건은 Ichimura(1993)를 통해 제시되었으며, Horowitz(2009)에 의하여 다시 명료하게 재정리되었다. Ichimura(1993)와 Horowitz(2009)는 식별 조건하에서 모수 벡터는 모수 간 상호 비율까지만 식별된다는 결과를 얻었다.[5]

보건지출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은 고령화와 사망률의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개인의 생애적 측면에서 사망 직전 기간의 보건지출액 크기가 매우 높다는 사실이 많은 설득력을 얻고 있다.

2) 최근 연구의 흐름을 위해서는 Longman(1987) 및 OECD (1988)를 참조하라. 특히, 사망 직전의 높은 보건지출에 관한 연구는 Scitovsky(1984), Madsen et al.(2002), Yang et al.(2003) 그리고 Polder et al. (2006)을 참조하라.

3) 물론 기술적 요인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반영하는 변수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요인 및 인구적 요인에 초점을 둔다.

4)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는 점근적으로 분포수렴하는 비모수적인 추정량을 얻기 위해서는 설명변수가 많아질수록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관측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설명변수가 많아질수록 비모수적 방법으로 얻은 추정 결과를 시각적으로 효과적으로 보여주기가 어렵다는 점도 비모수적인 추정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이러한 결과를 "모수 성분 간의 상호 비율까지만 식별(identification up to scale)"이라 칭한다.

본 연구는 경제적 요인과 더불어 인구적 요인인 노령층의 인구 증가가 국가수준의 보건지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단일지수 모형은 Powell et al.(1989)에서 제안한 평균 도함수 추정방법(average derivative estimation method)이다.[6] 비선형 최소자승 추정법의 아이디어를 이용한 Ichimura(1993)에 비하여 Powell et al.(1989)은 몇 가지 추가적인 가정하에서 단일지수 모형을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두 조건을 기술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설명변수가 모두 연속적인 변수이고, 함수 g가 미분가능한 함수라는 가정이다. Powell et al.(1989)은 피설명변수의 조건부 평균함수인 $g(x'\beta)$의 도함수(derivative function)를 이용하는데, 이는 설명변수 x가 변하면서 그 지수인 $x'\beta$도 변하고 그에 따라 함수 g도 변한다는 성질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Powell et al.(1989)은 설명변수 서포트(support)의 경계(boundary)에서는 확률밀도가 영(zero)이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추가적인 가정하에서 평균 도함수 추정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Ichimura(1993)가 제안한 추정방법에 비하여 매우 간단하게 모수 β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하에서 전개되는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II장 1절에서는 분석에 이용하는 171개 국가들의 보건지출 관련 자료에 대하여 설명한다.[7] 이어 2절에서는 단일지수 모형을 이용한 추정방법과 추정 결과를 소개한다. 3절에서는 단일지수 모형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평균 한계효과를 추정한다. 4절에서는 추정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인 시사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제III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의의와 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한계점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단일지수 모형이 생소한 독자들을 위하여 부록의 1절에서 평균 도함수 방법(average derivative method)을 이용하는 단일지수 모형에 대한 추정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부록의 2절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용한 데이터를 소개한다.

Ⅱ. 국가수준의 보건지출 규모 추정

1. 보건지출 현황

한 국가의 보건지출은 정부부문 보건지출과 민간부문 보건지출의 합이다. 정부부문의 보건지출은 정부지출이나 강제성이 있는 공적인 보험에 의하여 지

6) 이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부록의 1절을 참조하라.
7) UN의 회원국이 193개국임을 감안하면 171개국은 매우 많은 국가들이 포함된 것이다. 자료의 출처에 관하여는 부록 2절을 참조하라.

급되는 지출로서 그 대상은 치료, 재활, 노령자 보호, 돌봄 서비스, 의약품, 예방, 공공 보건 서비스 및 의료 행정 서비스(curative care, rehabilitative care, long-term care, ancillary services, medical goods, prevention, public health services and health administration)를 포함한다. 민간부문의 보건지출은 가계(households' out-of-pocket payments)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 그리고 비정부단체 및 민간기업에서 지불한 보건지출의 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수준의 보건지출 규모를 GDP 대비 보건지출의 비중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고려하는 이유는 국가의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보건지출의 규모를 고려하기 위함이다. 실증분석에서 포함된 국가들은 모두 171개국으로 OECD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171개국의 평균 보건지출/GDP 비중을 모두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먼저 [그림 1]을 통하여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OECD 국가들의 총보건지출의 규모, 그리고 정부보건지출과 민간보건지출의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알 수 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1995~2013년 동안 GDP 대비 총보건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정부부문에 비하여 민간부문의 보건지출이 매우 높은 특징을 보인다. 반면, 한국은 터키 다음으로 보건지출 규모가 작다. 한국과 터키 모두 OECD 국가들 가운데 보건지출 규모가 가장 작은 수준에 해당되나, 한국이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OECD 국가 중 1995~2013년 동안 GDP 대비 총보건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다. 한국은 터키 다음으로 보건지출 규모가 가장 작다.

[그림 1] OECD 국가들의 총보건지출/GDP 비중: 1995~2013년 평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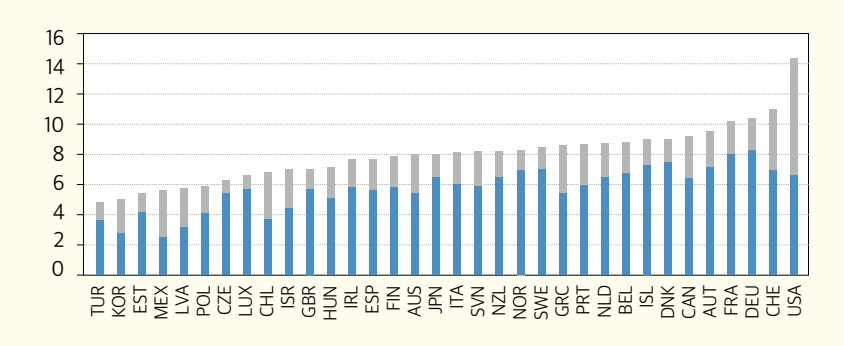

주: 1. 은 정부보건지출/GDP 비중, 은 민간보건지출/GDP 비중임
2. 하단의 국가 약자는 부록 2절 참고
출처: 저자 작성

보건지출의 규모를 반영하는 변수인 총보건지출/GDP를 보면 한국은 동 기간 평균 5.3%로 경제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건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1>은 분석에 이용된 171개국의 자료의 요약 통계이다. 비교를 위하여 OECD 국가의 통계도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보건지출의 규모를 반영하는 변수인 총보건지출/GDP를 보면 171개국의 평균은 6.6%이나 OECD 국가들의 평균은 8.4%로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같은 기간 평균 5.3%로 경제 규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건지출 수준을 보이고 있다. 1인당 GDP는 2010년 US달러 기준의 실질 GDP를 전체 인구로 나눈 1인당 실질 GDP이다. 표본 전체의 평균은 약 1만 5천달러이며, OECD 국가들의 평균은 두 배가 넘는 약 3만 6천달러이다. 한국은 약 1만 8천달러이다. 전체 표본의 1인당 GDP의 표준편차는 약 1만 9천달러로 국가 간 1인당 소득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세 미만 인구 비중 및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보면 표본 전체의 평균은 각각 11.3% 및 8.9%인 반면, OECD 국가들의 평균은 각각 7.6% 및 14.3%이다. 한국은 각각 10.2% 및 8.7%로 OECD 국가들의 평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모습이다. 실업률의 경우 표본의 평균은 8.3%인 반면, 한국의 평균은 3.7%로 매우 낮은 수준의 평균을 보이고 있다. 총세입/GDP 비율은 표본의 평균이 16.5%인 반면, OECD 국가들의 평균 19.4%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표본의 기간 동안 14.0%로 경제수준에 비하여 세입 규모가 상대적으로 낮다.

본 연구에서는 <표 1>에서 소개된 변수들은 피설명변수 및 설명변수로 이용하고자 한다. 설명변수는 경제적 요인 및 인구적 요인을 반영하는 변수들로서, 경제적 요인으로는 국가의 소득수준을 반영하는 1인당 실질소득을, 그리고 여타 경제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부의 총세입/GDP과 실업률을 고려한다. 총세입/GDP은 정부의 재정 여력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택하였고, 실업률은 경기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택하였다. 인구적 요인을 고려하기 위하여 5세 미만의 인구 비중과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을 고려한다. 이 두 연령대는 일반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인 영유아기와 노령기를 반영한다.

<표 1> 이용 자료의 요약 통계

(단위: %, 달러)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댓값	최솟값	중위값
총보건/GDP	(전체)	6.6	2.5	17.1	1.9	6.3
	(OECD)	[8.4]	[2.1]	[17.1]	[2.5]	[8.2]
	(한국)	<5.3>	<1.2>	<7.2>	<3.7>	<5.0>
1인당 GDP	(전체)	15312.4	18710.9	111968.4	182.7	6684.6
	(OECD)	[35578.9]	[21144.6]	[111968.4]	[5140.5]	[36546.3]
	(한국)	<17853.6>	<3832.6>	<23685.4>	<12055.2>	<17905.2>
5세 미만 인구 비중	(전체)	11.3	4.0	19.7	2.7	11.4
	(OECD)	[7.6]	[1.9]	[15.7]	[4.5]	[7.1]
	(한국)	<10.2>	<1.8>	<13.3>	<7.9>	<9.8>
65세 이상 인구 비중	(전체)	8.9	5.2	24.6	0.8	7.2
	(OECD)	[14.3]	[3.3]	[24.6]	[4.6]	[14.9]
	(한국)	<8.7>	<1.9>	<12.0>	<6.0>	<8.5>
실업률	(전체)	8.3	5.7	38.0	0.2	7.0
	(OECD)	[7.7]	[4.1]	[27.5]	[1.8]	[7.0]
	(한국)	<3.7>	<1.2>	<7.0>	<2.1>	<3.5>
총세입/GDP	(전체)	16.5	7.3	62.9	0.3	15.5
	(OECD)	[19.4]	[6.8]	[35.1]	[1.2]	[20.7]
	(한국)	<14.0>	<0.7>	<15.5>	<12.9>	<14.0>

주: [ ] 및 <> 안의 수치는 각각 OECD 국가들 및 한국의 요약통계임. 1995년에서 2013년간의 이용 가능한 자료를 이용한 것으로 171개국 자료는 관측치가 2,448개이며, OECD 국가 자료는 622개임. 이용 자료의 출처에 관하여는 부록 참고

출처: 저자 작성

2. 평균 도함수 방법을 이용한 단일지수 모형 추정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단일지수 모형은 식 (1)과 같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모수 벡터 $\beta \in R^d$와 함수 g의 형태는 알려져 있지 않다. 평균 도함수 추정방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이 확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를 가중치(weight)로 준 한계효과인 δ를 추정할 수 있다. δ의 정의는 식 (2)와 같다.

$$\delta = E\left[p(X)\frac{\partial E[Y|X]}{\partial x}\right] \qquad \text{식 (2)}$$

평균 도함수 추정방법을 이용하면 확률밀도함수를 가중치로 준 한계효과인 δ를 추정할 수 있다.

실제 추정을 위해서 먼저 모든 변수들을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식 (2)를 보면 δ는 조건부 평균 한계효과 $\partial E[Y|X]/\partial x$에 밀도함수 $p(X)$를 곱한 것에 대하여 다시 평균을 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δ는 일종의 조건부 평균 한계효과의 평균인데 밀도함수를 곱해준 것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매우 작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균 한계효과 $E[\partial E[Y|X]/\partial x]$를 추정하고자 한다.

한편, $E[Y|X=x]=g(x'\beta)$ 및 $\partial E[Y|X=x]/\partial x = g'(x'\beta)\beta$로부터 β는 δ를 이용하여 요소들의 비율까지 식별(identification up to scale)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먼저 δ에 대한 추정값 $\hat{\delta}=(\hat{\delta_1},\hat{\delta_2},...,\hat{\delta_d})'$을 얻는다면 정규화(normalization)를 통하여 β에 대한 추정값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hat{\beta}=\hat{\delta}/\hat{\delta_1}$를 이용한다. 부록에서 설명하듯이 평균 도함수 추정방법에 따른 모수 벡터 추정량 $\hat{\delta}=(\hat{\delta_1},\hat{\delta_2},...,\hat{\delta_d})'$은 식 (3)과 같다.

$$\hat{\delta}=-2\frac{1}{n(n-1)}\frac{1}{h_n^{d+1}}\sum_{i=1}^{n}\sum_{j\neq i}^{n}K'\left(\frac{X_i-X_j}{h_n}\right) \qquad \text{식 (3)}$$

여기에서 $K'\left(\frac{x-X_j}{h_n}\right)=\left[\prod_{p=1}^{d}K_0\left(\frac{x_p-X_{j,p}}{h_n}\right)\right]\cdot\left(\frac{K_0'\left(\frac{x_1-X_{j,1}}{h_n}\right)}{K_0\left(\frac{x_1-X_{j,1}}{h_n}\right)},...,\frac{K_0'\left(\frac{x_d-X_{j,d}}{h_n}\right)}{K_0\left(\frac{x_d-X_{j,d}}{h_n}\right)}\right)'$이며,

$K_0(u)=\frac{45}{32}\left(1-\frac{10}{3}u^2+\frac{7}{3}u^4\right)I(|u|\leq 1)$ 그리고 $K\left(\frac{x-X_j}{h_n}\right)=\prod_{p=1}^{d}K_0\left(\frac{x_p-X_{j,p}}{h_n}\right)$이다.

h_n은 밴드의 크기이다.

실제 추정을 위해서 먼저 모든 변수들을 표본 평균과 표본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였다. 즉, k번째 변수 x_k는 $(x_k-\overline{x_k})/S_k$로 표준화하여 추정에서 이용한다. 이론적으로 $\hat{\delta}$의 일치성(consistency)과 $\sqrt{n}(\hat{\delta}-\delta)$의 점근적인 정규성(asymptotic normality)을 위한 커널의 오더(order)와 밴드의 크기가 가져야 할 조건은 각각 $nh^{2P}\to 0$와 $nh^{d+2}\to 0$이다.[8] 추정을 위하여 선택한 커널의 오더는 $P=4$이며, 이용한 설명변수는 모두 5개이므로 $d=5$이다. 그에 따라 밴드의 크기는 $h_n=c_0n^{-1/6.9}$로 가정하고 $\sum_{j=1}^{n}(Y_i-\hat{Y_i})^2$을 최소화하는 c_0를 찾는 방식으로 추정한다.[9]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식 (4)와 같다.

8)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Horowitz (2009)의 정리 2.3을 참고하라.
9)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드 탐색(grid search)을 이용하여 선택한 밴드의 크기는 $h_n=1.19$이다.

$$\widehat{h_n} = \text{argmin}_{h_n} \sum_{i=1}^{n} (Y_i - \widehat{Y_i})^2, \qquad \text{식 (4)}$$

$$\hat{\delta} = -2 \sum_{i=1}^{n} Y_i \frac{\partial \widehat{p_i}(X_i)}{\partial x},$$

$$\frac{\partial \widehat{p_i}(X_i)}{\partial x} = \frac{1}{(n-1)h_n^d} \sum_{j \neq i}^{n} K' \left(\frac{X_i - X_j}{h_n} \right),$$

$$\hat{\beta} = \hat{\delta} / \widehat{\delta_1}, \quad z_i = X_i' \hat{\beta}, \text{ 그리고}$$

$$\widehat{Y_i} \equiv \hat{g}(z_i) = \frac{\sum_{j \neq i} Y_j K_0 \left(\frac{z_i - z_j}{h} \right)}{\sum_{j \neq i} K_0 \left(\frac{z_i - z_j}{h} \right)}$$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h_n이 주어지면 평균 도함수 방법을 이용하여 $\hat{\delta}$를 추정하고, 이를 정규화하여 $\hat{\beta}$을 구한다. $\hat{\beta}$을 이용하여 단일지수인 $z_i = X_i' \hat{\beta}$를 추정하고, 단일지수를 이용한 비모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예측값(predicted value) $\widehat{Y_i} = \hat{g}(X_i' \hat{\beta})$를 추정한다. $\hat{\delta}$의 추정을 위한 밴드의 크기 h_n은 그리드 탐색(grid search)을 이용하였고, 이때의 기준은 예측오차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삼았다. 한편, 단일지수를 이용한 비모수 회귀분석을 위한 밴드의 크기는 Silverman의 개략적인 방법(rule of thumb)인 $h_{n,z} = \widehat{\sigma_z} C_\nu(K_0) n^{-1/(2\nu+1)}$를 이용하였다.[10] 여기에서 $\widehat{\sigma_z}$는 단일지수 $Z_i = X_i' \hat{\beta}$의 표본 표준편차, $C_\nu(K_0)$는 커널 $K_0(u) = 45/32(1 - 10/3u^2 + 7/3u^4) I(|u| \leq 1)$을 이용하여 얻은 rule of thumb 상수이다. 이 커널의 차수(order)는 $\nu = 4$ 이다. <표 2>는 $\hat{\delta}$ 및 $\hat{\beta}$의 추정 결과이다.

먼저, $\hat{\delta}$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δ의 정의를 생각해보자.

$$\delta = E\left[p(X) \frac{\partial E[Y|X]}{\partial x} \right] = \int \frac{\partial E[Y|X=x]}{\partial x} p(x)^2 dx = E\left[-2Y \frac{\partial p(X)}{\partial x} \right] \qquad \text{식 (5)}$$

밴드의 크기 h_n이 주어지면, 평균 도함수 방법을 이용하여 $\hat{\delta}$를 추정하고, 이를 정규화하여 $\hat{\beta}$을 구한다. $\hat{\beta}$을 이용하여 단일지수인 $z_i = X_i' \hat{\beta}$를 추정하고, 단일지수를 이용한 비모수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예측값(predicted value) $\widehat{Y_i} = \hat{g}(X_i' \hat{\beta})$를 추정한다.

10) $\hat{g}$의 추정에 사용한 밴드의 크기는 개략적인 방법(rule of thumb)을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https://www.ssc.wisc.edu/~bhansen/718/NonParametrics1.pdf의 11-12쪽을 참조하라. 이론적으로 $\hat{g}$의 추정을 위한 밴드의 크기 선택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는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는 Horowitz and Hardle(1996)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보건지출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유의성 있는 요인은 1인당 GDP이며, 그다음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으로 추정되었다.

식 (5)에서 알 수 있듯이 δ는 설명변수가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 피설명변수의 조건부 평균이 증가하는 정도와 확률밀도의 곱의 기댓값임을 알 수 있다. 즉, 확률밀도함수가 곱해진 평균 한계효과인 것이다. 따라서 $\hat{\delta}$도 확률밀도를 곱해준 평균 한계효과의 추정량이고, 이는 확률밀도의 존재 때문에 그 크기가 작아지게 됨을 짐작할 수 있다.

171개 국가의 자료를 이용한 추정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hat{\delta}$의 값은 확률밀도를 곱해준 평균 한계효과이기 때문에 그 크기가 매우 작게 나왔으며, 그에 대하여 단순하고 명확한 해석을 부여하는 것도 그리 쉽지는 않다. 다만, 그 상대적인 크기를 감안하면, 보건지출에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유의성 있는 요인은 1인당 GDP이며, 그다음은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상대적인 크기는 $\hat{\beta}$에 반영되어 있다.

<표 2> 보건지출의 단일지수 모형 추정: $\hat{\delta}$ 및 $\hat{\beta}$

구분	$\hat{\delta}$	$\hat{\beta}$
1인당 실질 GDP	0.000981** (3.458)	1.0000** (3.458)
5세 미만 인구 비중	0.000210 (0.684)	0.214 (0.684)
65세 이상 인구 비중	0.000651* (2.438)	0.663* (2.438)
실업률	0.000652 (1.951)	0.665 (1.951)
총세입/GDP	-0.000011 (-0.036)	-0.012 (-0.036)
관측치수	2448	2448

주: 1. ( ) 안의 수치는 t-값이다.
2. * 및 **는 각각 p-value가 0.05 및 0.01보다 큰 것을 가리킨다.
출처: 저자 작성

3. 평균 한계효과의 추정

본 절에서는 단일지수 모형의 추정 결과를 이용하여 확률밀도를 가중치로 이용하지 않는 평균 한계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g(z)$에 대한 추정량은 식 (6)과 같다.

$$\hat{g}(z)=\frac{\sum_{j=1}^{n} Y_j K_0\left(\frac{z-z_j}{h}\right)}{\sum_{j=1}^{n} K_0\left(\frac{z-z_j}{h}\right)} \quad \text{식 (6)}$$

모집단 수준에서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는 식 (7)과 같이 정의된다.

$$\frac{\partial E[Y|X=x]}{\partial x}=g'(x'\beta)\beta=g'(z)\beta \quad \text{식 (7)}$$

따라서 식 (7)에서 추정량은 $\hat{g}'(z)\hat{\beta}$이며 이를 위하여 먼저 $\hat{g}'(z)$을 구하면 식 (8)과 같다.

$$\hat{g}'(z)=\frac{\left[\sum_{i=1}^{n}\frac{y_i}{h}K'\left(\frac{z-Z_i}{h}\right)\right]\left[\sum_{i=1}^{n}K\left(\frac{z-Z_i}{h}\right)\right]-\left[\sum_{i=1}^{n}y_iK\left(\frac{z-Z_i}{h}\right)\right]\left[\sum_{i=1}^{n}\frac{1}{h}K'\left(\frac{z-Z_i}{h}\right)\right]}{\left[\sum_{i=1}^{n}K\left(\frac{z-Z_i}{h}\right)\right]^2} \quad \text{식 (8)}$$

따라서 평균 한계효과는 식 (9)와 같이 구할 수 있다.

$$\frac{1}{n}\sum_{j=1}^{n}\hat{g}'(Z_j)\hat{\beta}$$
$$=\frac{1}{n}\sum_{j=1}^{n}\left(\frac{\left[\sum_{i=1}^{n}\frac{y_i}{h}K'\left(\frac{Z_j-Z_i}{h}\right)\right]\left[\sum_{i=1}^{n}K\left(\frac{Z_j-Z_i}{h}\right)\right]-\left[\sum_{i=1}^{n}y_iK\left(\frac{Z_j-Z_i}{h}\right)\right]\left[\sum_{i=1}^{n}\frac{1}{h}K'\left(\frac{Z_j-Z_i}{h}\right)\right]}{\left[\sum_{i=1}^{n}K\left(\frac{Z_j-Z_i}{h}\right)\right]^2}\right)\hat{\beta} \quad \text{식 (9)}$$

평균 한계효과의 추정 결과는 <표 3>에 요약되어 있다. 0과 유의하게 다른 추정 결과는 1인당 GDP와 65세 인구 비중이므로 실제로 의미가 있는 해석은 그 두 요인에 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평균 한계효과 추정 결과는 동일한 내용을 독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의상 두 가지로 표현하였는데, 하나는 두 번째, 세 번째 열이고, 다른 하나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이다. 먼저 두 번째 열은 각 요인이 세 번째 열에 있는 변화인 표준편차만큼 증가하는 경우 보건지출

평균 한계효과의 추정 결과에서 1인당 GDP가 표준편차인 약 1만 9천 달러만큼 증가하면 보건지출/GDP는 평균적으로 약 0.34%p 증가하는 연관성을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 1%p 증가가 보건지출에 미치는 평균 한계효과는 1인당 GDP가 1천달러 증가하는 효과보다 두 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크기이다. 구체적으로 1인당 GDP가 표준편차인 약 1만 9천달러만큼 증가하면, 보건지출/GDP는 평균적으로 약 0.34%p 증가하는 연관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를 달리 표현한 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에 나와 있는 추정 결과이다. 즉, 이는 1인당 GDP가 1천달러 증가하면, 보건지출/GDP는 평균적으로 0.018%p 증가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유의한 설명변수인 65세 이상 인구 비중에 대한 평균 한계효과 추정 결과도 유사하게 해석할 수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표준편차 만큼인 5.2%p 증가하면, 보건지출/GDP는 평균적으로 약 0.22%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p 증가하면, 보건지출/GDP는 평균적으로 약 0.043%p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 결과로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 1%p 증가가 보건지출에 미치는 평균 한계효과가 1인당 GDP가 1천달러 증가하는 효과보다 두 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평균 한계효과의 추정

구분	표준화된 변수 한 단위 증가 시 평균 한계효과	표준편차 변화 시	B에 따른 평균 한계효과	변화 조건 (B)
1인당 실질 GDP	0.3366	18,710.9달러 증가 시	0.0180	1,000달러 증가 시
5세 미만 인구 비중	0.0720	4.0%p 증가 시	0.0180	1%p 증가 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	0.2232	5.2%p 증가 시	0.0426	1%p 증가 시
실업률	0.2238	5.7%p 증가 시	0.0393	1%p 증가 시
총세입/GDP	-0.0039	7.3%p 증가 시	-0.0005	1%p 증가 시

주: 표준화된 변수 한 단위의 증가는 해당 변수가 표준편차만큼 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출처: 저자 작성

4. 추정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

단일지수 모형의 추정 결과를 이용한 보건지출/GDP의 예측값을 구한 결과 [그림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단일지수가 2에 이르기까지는 단일지수가 증가하면서 보건지출 규모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특히, -1에서 0 사이 그리고 1과 2 사이

의 구간에서는 단일지수 증가에 따른 보건지출 규모의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일지수가 2보다 커지는 경우 보건지출의 규모 증가세도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단일지수가 2.5 이상보다 큰 경우에는 관측치가 충분히 크지 않고 일부 국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예측치로서 큰 의미는 부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단일지수값이 -1.18에서 0.048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건지출 규모가 완만히 증가하다가 빠르게 증가하는 구간을 경험해온 것이다.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하더라도 1인당 실질 GDP가 꾸준하게 증가한다면 한국 경제는 보건지출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1보다 높은 단일지수 구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상당 기간 동안 한국의 보건지출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향후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완만하더라도 1인당 실질 GDP가 꾸준하게 증가한다면 한국 경제는 보건지출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1보다 높은 단일지수 구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그림 2] 단일지수 모형: 보건지출/GDP 예측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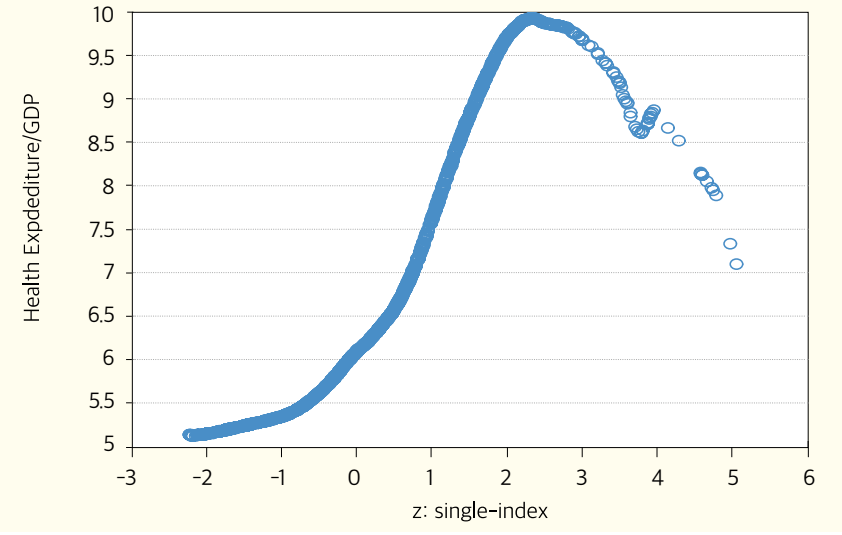

출처: 저자 작성

<표 4>는 총보건지출의 규모와 그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보건지출과 민간보건지출의 구성을 보면, 표본 전체의 평균은 각각 약 58%와 42%의 구성을 보이고 있다. 반면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정부보건지출과 민간보건지출의 비율이 각각 약 72%와 28%이다. 이는 OECD 국가들의 경우 여타 국가들에 비하

1인당 소득의 증가와 노령층 인구 비중의 증가가 보건지출의 증가에 유의한 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 정부가 상당 부분 보건지출비용을 감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의 경우 정부보건지출의 비중은 전체 표본의 평균보다도 낮은 51%이며, 그에 따라 민간보건지출 비중의 해당 기간 평균은 49%이다. 앞서 단일지수 모형으로 예측한 한국의 보건지출 규모는 앞으로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보건지출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의 보건정책 방향이 정부부담 보건지출 비중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지향한다면, 보건과 관련된 정부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보건지출 규모 및 구성: 정부 vs 민간

(단위: %)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171개국: 관측치 2,448개)				
총보건지출/GDP	6.6	2.5	1.9	17.1
정부보건지출/총보건지출	58.4	17.5	14.1	93.0
민간보건지출/총보건지출	41.6	17.5	7.0	85.9
(OECD 국가: 관측치 622개)				
총보건지출/GDP	8.4	2.1	2.5	17.1
정부보건지출/총보건지출	71.8	12.0	36.6	92.8
민간보건지출/총보건지출	28.2	12.0	7.2	63.4
(한국: 관측치 19개)				
총보건지출/GDP	5.3	1.2	3.7	7.2
정부보건지출/총보건지출	51.3	5.6	37.5	56.7
민간보건지출/총보건지출	48.7	5.6	43.3	62.5

출처: 저자 작성

Ⅲ.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단일지수 모형을 이용하여 171개 국가들의 총보건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단일지수 모형을 이용하여 기존의 선형모형 가정을 완화하고 보건지출의 조건부 평균함수를 경제적 요인과 인구적 변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단일지수 모형 추정 결과, 보건지출 규모는 지수의 값에 따라서 일부 구간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단일지수가 증가해도 보건지출 규모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추정 결과, 1인당 소득의 증가와 노령층 인구 비중의 증가가 보건지출의 증가에 유

의한 수준에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구간에 대한 평균적인 한계효과를 추정한 결과, 1인당 GDP의 1천달러 증가는 보건지출/GDP를 약 0.018%p 높이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노령층 인구 비중이 1%p 증가하면 보건지출/GDP가 약 0.043%p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부터 노령층 인구의 증가가 보건지출 규모의 증가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한계효과는 특정 지수 구간에 대해서도 산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 방법 및 결과는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단일지수 수준을 고려하면, 한국의 보건지출 규모는 당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부의 보건정책은 국민들이 현 수준보다 더 많은 보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보건지출과 관련된 재정부담은 매우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당국은 이러한 점을 향후 우리 경제가 직면하는 제약으로 받아들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에 대하여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가 빠른 속도의 고령화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단일지수 수준을 고려하면, 한국의 보건지출 규모는 당분간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보건지출의 함수식에 대하여 준모수적인 단일지수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함으로써 기존 선형모형을 가정하는 모수적인 추정에 비하여 모형설정의 오류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이다. 둘째, 준모수적인 추정방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비모수 추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차원의 저주(curse of dimension)가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셋째, 본 연구는 단일지수 모형을 국가수준의 총보건지출에 적용한 최초의 시도이다. 종전의 단순한 선형모형에서 벗어난 새로운 추정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분석 결과로부터 노령층 인구 비중의 증가가 향후 한국의 보건지출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아울러 단일지수에 비추어 판단할 때 한국의 총보건지출은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상술한 바와 같은 기여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고에서는 설명변수에 대한 내생성(endogeneity)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다. Blundell and Powell(2001)의 아이디어를 이용하여 내생성을 해결하는 분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해당 방법의 기술적인 어려움 등을 감안하면 그것은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분석이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는 단일지수 모형을 국가수준의 총보건지출에 적용한 최초의 시도이다. 종전의 단순한 선형모형에서 벗어난 새로운 추정방법을 시도하였다는 점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171개 국가들에 대한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고정효과를 별도로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본 연구의 분석상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준모수적인 회귀분석인 단일지수 모형에 고정효과를 도입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적절한 방식으로 고정효과를 단일지수 모형에 도입한다면 문헌상 기여도가 매우 큰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부록

1. 평균 도함수 방법을 이용한 단일지수 모형 추정

평균 도함수 추정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을 위하여 Horowitz(2009)에 기초하여 평균 도함수 추정량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식 (1)에서 함수 $g(\cdot)$는 함수식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한다. 따라서 종속변수의 조건부 기대함수는 $E[Y|X=x]=g(x'\beta)$이다. 이러한 조건부 기대함수를 미분하면 다음과 같은 식 (10)을 얻게 된다.

$$\frac{\partial E[Y|X=x]}{\partial x}=\beta g'(x'\beta) \qquad \text{식 (10)}$$

위의 사실을 이용하면 임의의 유계인 연속함수 $W(\cdot)$에 대하여 식 (11)이 성립한다.

$$E\left[W(X)\frac{\partial E[Y|X]}{\partial x}\right]=\beta E[W(X)g'(X'\beta)] \qquad \text{식 (11)}$$

이는 $E[Y|X]$의 도함수 가중 평균은 모수 β에 비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β는 스케일까지만 식별이 된다. 즉, $E[Y|X]$의 도함수 가중 평균은 '$\beta\times$상수' 형태와 관측상 동일(observationally equivalent)하다는 의미로, β는 각 요소들 간의 비율만 식별이 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β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W에 대하여 식 (11)의 좌변을 추정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 경우 좌변의 모든 요소(component)를 첫 번째 요소로 나누어 줌으로써 $\beta=(1,\tilde{\beta}')'$로 정규화할 수 있다. Powell et al.(1989)의 아이디어를 따라서 확률밀도 함수를 가중함수로 이용

하면, 즉 $W(X) = p(x)$, 식 (11)은 식 (12)와 같이 된다.

$$E\left[W(X)\frac{\partial E[Y|X]}{\partial x} \right] = E\left[p(X)\frac{\partial E[Y|X]}{\partial x} \right] \quad \text{식 (12)}$$
$$= \int \frac{\partial E[Y|X=x]}{\partial x} p(x)^2 dx$$
$$= E\left[-2Y\frac{\partial p(X)}{\partial x} \right]$$

식 (12)에서 마지막 등식은 부분적분과 경계(boundary)에서의 확률밀도는 영(zero)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얻어진다. 식 (12)를 모수 δ로 정의한다. δ에 대한 일치추정량 $\hat{\delta}$은 식 (13)과 같이 구한다.

$$\hat{\delta} = -2\sum_{i=1}^{n} Y_i \frac{\partial \hat{p_i}(X_i)}{\partial x} \quad \text{식 (13)}$$

이를 곱커널(product kernel)을 이용하여 확률밀도함수의 도함수를 추정량을 식 (13)에 대입해서 얻은 것이 식 (2)의 $\hat{\delta}$이다. 상술하였듯이 $\hat{\beta}$은 $\hat{\delta}$을 $\hat{\delta}$의 첫 번째 요소로 나누어줌으로써 정규화할 수 있다.

2. 자료 출처

■ OECD 국가 약자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국가코드	국가명
AUS	호주	AUT	오스트리아	BEL	벨기에
CAN	캐나다	CHE	스위스	CHL	칠레
CZE	체코	DEU	독일	DNK	덴마크
ESP	스페인	EST	에스토니아	FIN	핀란드
FRA	프랑스	GBR	영국	GRC	그리스
HUN	헝가리	IRL	아일랜드	ISL	아이슬란드
ISR	이스라엘	ITA	이탈리아	JPN	일본
KOR	한국	LUX	룩셈부르크	LVA	라트비아
MEX	멕시코	NLD	네덜란드	NOR	노르웨이
NZL	뉴질랜드	POL	폴란드	PRT	포르투갈
SVK	슬로바키아	SVN	슬로베니아	SWE	스웨덴
TUR	터키	USA	미국		

■ 실질 GDP: constant 2010 US $

- 정의: GDP at purchaser's prices is the sum of gross value added by all resident producers in the economy plus any product taxes and minus any subsidies not included in the value of the products. It is calculated without making deductions for depreciation of fabricated assets or for depletion and degradation of natural resources. Data are in constant 2010 U.S. dollars. Dollar figures for GDP are converted from domestic currencies using 2010 official exchange rates. For a few countries where the official exchange rate does not reflect the rate effectively applied to actual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n alternative conversion factor is used.
- 단위: U.S. dollars (Base year: 2010)
- 출처: World Bank, International Comparison Program database.
- 인터넷소스: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KD?view=chart

■ 인구 변수: 5세 미만 인구, 65세 이상 인구, 전체 인구를 이용하여 각각의 비중을 산출

- 출처: World Bank staff estimates based on age/sex distributions of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7 Revision.
- 인터넷소스: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65UP.TO.ZS?view=chart

■ 실업률

- 정의: Unemployment refers to the share of the labor force that is without work but available for and seeking employment.
- 단위: % of total labor force
-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database. Data

retrieved in September 2018.

- 인터넷소스: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L.UEM.TOTL.ZS?view=chart

■ 세입/GDP

- 세입의 정의: Tax revenue refers to compulsory transfers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public purposes. Certain compulsory transfers such as fines, penalties, and most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are excluded. Refunds and corrections of erroneously collected tax revenue are treated as negative revenue
- 단위: % of GDP
- 출처: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and OECD National Accounts data files.
- 인터넷소스: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E.CON.GOVT.CD?view=chart

참고문헌

Baltagi, B. and F. Moscone, "Health Care Expenditure and Income in the OECD Reconsidered: Evidence from Panel Data," *Economic Modelling*, 27, 2010, pp. 804~811.

Blundell, R. and J. L. Powell, "Endogeneity in Nonparametric and Semiparametric Regression Models," Working paper, 2001.

Hartwig, J. and J. E. Sturm, "Robust Determinants of Health Care Expenditure Growth," *Applied Economics*, 46, 2014, pp. 4455~4474.

Herwartz, H. and B. Theilen, "The Determinants of Health Care Expenditure: Testing Restrictions in Small Samples," *Health Economics*, 12, 2003, pp. 113~124.

Horowitz, J. L., *Semi-parametric and Nonparametric Methods in Econometrics*, Springer, 2009.

Horowitz, J. L., and W. Hardle, "Direct Semiparametric Estimation of Single-Index Models with Discrete Covariate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1, 1996, pp. 1632~1640.

Ichimura, H., "Semiparametric least squares (SLS) and weighted SLS estimation of single index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58, 1993, pp. 71~120.

Jeong, J. Y. and S. W. Lee,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Increase of Health Care Expenditure-among OECD countries,"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mental Science*, 5, 1995, pp. 113~124.

Lago-Peñas, S., Cantarero-Prieto, D. and C. Blázquez-Fernández,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DP and Health Care Expenditure: A new look," *Economic Modelling*, 32, 2013, pp. 124~129.

Linden, M. and D. Ray, "Life Expectancy Effects of Public and Private Health Expenditure in OECD Countries 1970-2012: Panel Time Series Approach," *Economic Analysis and Policy*, 56, 2017, pp. 101~113.

Longman, Ph., *Born to Pay: the new politics of aging in America*, Boston MA:

Houghton Mifflin, 1987.

Madsen, J., Serup-Hansen, N., Kragstrup, J. and I. S. Kristiansen, "Ageing may have limited impact on future costs of primary care providers," *Scandinavian Journal of Primary Care*, 20(3), 2002, pp. 169~173.

OECD, *Aging population: the social policy implications*, OECD Publishing, Paris, 1988.

Polder, J. J., Barendregt, J. J. and H. van Oers, "Health care costs in the last year of life—the Dutch experience," *Social Science and Medicine*, 63, 2006, pp. 1720~1731.

Powell, J. L., Stock J. H. and T. M. Stoker, "Semiparametric Estimation of Index Coefficients," *Econometrica*, 57, 1989, pp. 1403~1430.

Scitovsky, Anne A., "'The High Cost of Dying': What Do the Data Show?," The *Milbank Memorial Fund Quarterly Health and Society*, 62, 1984, pp. 591~608.

Yang, Z., Norton E. C. and S. C. Stearns, "Longevity and health care expenditures: the real reasons older people spend mor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58, 2003, pp. S2~10.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이 자료는 한국조세제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의 「주요국의 조세동향」과 재정지출분석센터에서 발간하고 있는 「재정동향」 자료를 요약 ·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주>

주요국의 조세동향

[독일 -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VAT 납부 관련 가이드라인 발표]

■ 독일 재무부는 2019년 1월 29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VAT 납부 및 자료기록 의무와 관련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함[1)]

■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2018년 12월 14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UStg) 22f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자료기록 및 유지 의무'와 25e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VAT 납부 의무'에 관한 것임

-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VAT를 납부하지 않는 자를 대신해 VAT를 납부할 의무를 짐
- 이는 해외 판매자가 인터넷을 통해 독일 거주자에게 물품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VAT를 징수 및 납부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해당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자명, 주소, 납세자번호, VAT 사업자등록번호, VAT 납세의무를 이행했다는 과세당국의 증명서와 같은 기본 정보 외에 매출일, 운송정보, 총매출액과 같은 정보를 기록 및 유지할 의무가 있음

- 판매자가 과세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VAT 납세의무 이행 증명서는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증명서는 발급 이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효함

■ 또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VAT를 납부하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판매자를 대신해 VAT를 납부해야 함

- 단,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가 판매자로부터 과세당국에서 발급받은 VAT 납세의무 이행 증명서를 받은 경우 VAT 대리납부 의무를 지지 않음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벨기에 - 조세회피방지법안 최종 승인 및 EU의 VAT 지침 이행]

■ 벨기에 의회는 2019년 1월 30일 'EU의 디지털상거래 및 바우처 관련 지침' 이행안, 2019년 1월 31일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최종 승인함[2)]

1) Germany - Ministry of Finance issues guidance on VAT rules for operators of online marketplaces (04 Feb. 2019), News IBFD. 및 독일 재무부,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Downloads/BMF_Schreiben/Steuerarten/Umsatzsteuer/2019-01-28-haftung-fuer-umsatzsteuer-beim-handel-mit-waren-im-internet.html;jsessionid=999D0D1987555FE49593D0F327B683B1, 검색일자: 2019. 2. 25.

2) Belgium - Bill on fiscal, anti-abuse, financial and other provisions adopted by parliament (04 Feb. 2019), News IBFD.; Belgium; European Union - Draft bill to implement EU VAT Directives on vouchers and digital services adopted by Belgian parliament (04 Feb. 2019), News IBFD.

- 벨기에 재무부는 2018년 12월 20일 조세회피방지를 위한 세법개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음[3)]
- 벨기에 재무부 장관은 2018년 9월 28일 EU의 바우처 및 디지털상거래 관련 지침을 이행하는 안에 합의했음을 발표한 바 있음[4)]

■ '조세회피방지법안'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이자비용 공제제한 규정 시행, 벨기에 고용주의 원천징수 및 보고 대상 확대, 최종수익자 등록정보의 교환국가 확대, 조세피난처 소재 기업과 거래 시 예규 미발행, 저세율국 소재 기업을 포함한 구조조정 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함[5)]

■ EU의 디지털거래 지침(2017/2455)에 따라 영세사업자가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은 공급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되고, 해외 판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를 적용함

- 2019년 1월 1일부터 EU 회원국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영세사업자에 한해 공급지국에서 VAT를 징수 및 납부함[6)]
  - 영세사업자는 연간 매출액이 1만유로 이하인 판매자를 말함
- 2021년 1월 1일부터 해외 판매자가 온라인을 통해 벨기에 거주자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 EU 회원국 중 한 곳에 VAT 사업자 등록을 하고 VAT를 납부하는 '간편사업자등록제도(One-Stop-Shop)'의 적용이 가능하며, 동시에 소액재화의 VAT 면세제도를 폐지함[7)]
  - 재화를 공급하는 판매자가 연간 매출액이 1만유로 이하인 영세사업자인 경우 전자적 용역 제공 시와 동일하게 공급지국 과세원칙이 적용됨
- 위의 규정은 온라인 사업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임

■ EU의 상품권(voucher) 관련 지침에 따라 단일목적 상품권과 다목적 상품권의 정의 및 상품권의 과세시기를 명확히 규정함[8)]

- 단일목적 상품권은 발행 당시 사용처가 명확한 상품권으로 상품권 발행 시에 VAT를 과세함
- 다목적 상품권은 여러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여 발행 당시 사용처가 불명확한 상품권으로 상품권 사용 시에 VAT를 과세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9-1호, 2019.
4) Belgium; European Union - Council of Ministers agrees on draft bill implementing EU VAT Directives on vouchers and digital services (03 Oct. 2018), News IBFD.
5) 자세한 내용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9-1호, 2019 참고
6) Belgium; European Union - Council of Ministers agrees on draft bill implementing EU VAT Directives on vouchers and digital services (03 Oct. 2018)
7) News IBFD.; European Union - Council of European Union adopts new VAT rules on e-commerce (05 Dec. 2017), News IBFD.
8)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6L1065, 검색일자: 2019. 2. 26.

[아일랜드 - 과세당국에 최종수익자 등록정보 접근 권한 부여]

■ 아일랜드 재무부는 2019년 2월 1일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Anti-Money Laundering Directive, 2015/849)[9] 및 EU의 상호협력지침(Mutual Assistance Directive, 2011/16)의 일부 조항을 이행할 것을 발표함[10]

- 자금세탁방지지침 제31조의 1, 2, 3, 7호를 이행할 것임
- 상호협력지침 제22조의 1a항을 이행할 것임

■ 자금세탁방지지침 제31조 1, 2, 3, 7호에 따라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신탁은 신탁 관련 정보를 기록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당국 및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 요구 시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함

- 신탁은 신탁자(settlor), 수탁자(trustee), 보호자(protector), 수익자(beneficiary), 신탁의 실질적 지배자의 최신 정보를 기록해야 함

■ 상호협력지침 제22조의 1a항에 따라 아일랜드 과세당국이 제출받은 정보는 다른 EU 회원국의 요청 시 제공해야 함

■ 앞서 기술된 EU의 두 가지 지침 이행에 따라 과세당국은 신탁의 최종수익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EU 회원국 간 해당 정보의 교환이 가능하게 됨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스웨덴 - 2019년 세법 추가 개정 계획 발표]

■ 스웨덴 정부는 2019년도 추가적인 세법개정 방침을 포함한 조세정책계획을 2019년 1월 18일자로 발표함[11]

- 최근 스웨덴 총리 재선 및 연립정부 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지난 2018년 11월에 발표된 2019 예산안[12]에 이은 추가적 세법개정 방침을 발표함
- 개인소득세 및 간접세 일부 개정안을 담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을 상정함

■ 가사서비스에 대한 소득세 혜택을 강화하고 자선단체 기부금 공제 및 노조회원비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 가사서비스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연간 현행 2만 5천스웨덴크로나에서 5만스웨덴크로나까지 확대함[13]

9) EU에서 2015년 5월 20일 발표한 제4차 자금세탁방지지침으로 불법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기관, 전문직 종사자, 신탁, 부동산 중개인 등에게 자금세탁활동에 대해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A32015L0849, 검색일자: 2019. 2. 26.
10) Ireland; European Union - Tax authorities authorized to access 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 gazetted (13 Feb. 2019), News IBFD.
11)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18_se_1.html, 검색일자: 2019. 2. 20.
Tax Notes International, January 28, 2019. pp.431~432.
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12호, 2018 참고
13) 1스웨덴크로나는 2019년 2월 평균 환율로 환산하면 121.05원으로(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이를 적용하면 현행 소득공제 약 3백만원을 약 6백만원으로 확대한 것임

- 65세 미만 개인에게 적용되는 한도이며, 65세 이상 고령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더욱 높일 계획임
- 향후 소득공제 한도를 7만 5천스웨덴크로나까지 인상하고 적용 대상이 되는 가사서비스 범위도 확대할 계획임

● 소정의 요건을 충족한 자선단체 및 과학연구단체에 기부하는 금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도입할 예정임

● 노동조합회원비(union membership fees)에 적용하였던 소득공제 혜택을 2019년 4월 1일부터 폐지할 예정임

■ 일부 거래 및 품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물품세 등 간접세율을 정상화 또는 인하할 예정임

● 국립공원 입장 및 관광료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 경감세율(6%) 대신 정상세율(25%)을 적용하도록 할 예정임

● 농업 및 산림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디젤유에 대한 물품세(excise duty)를 인하할 계획임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스페인 - 2019 주요 세무관리 계획 발표]

■ 스페인 과세당국은 2019년도 과세관리 방안을 담은 가이드라인(Resolution on annual plan for tax and customs control 2019)을 2019년 1월 17일자로 발표함[14)]

● 해당 가이드라인은 관련 법령[15)]에 의거하여 매년 세무당국의 조사 등 관리방안의 개요를 발표하는 것임

● 조세회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페인 과세당국이 조사 과정 등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함

■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거래정보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고 납세편의를 증진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계획임

● 전자인증서 등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납세편의를 돕고, 개인소득세 납세 관련 웹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납세협력 증진 조치를 시행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체계를 개선하고 부가가치세 납세지원 전산서비스 구축을 2019년도 내에 마무리할 것임

■ 다국적기업 등의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제 조세 분야에서 세무조사 및 검증 절차들을 강화할 예정임

● 다국적기업 및 국제 거래와 관련하여 세원을 미리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 이전가격 사전합의(Advanced Pricing Agreements) 및 상호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14)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28_es_2.html, 검색일자: 2019. 2. 18.
스페인 관보, https://www.boe.es/buscar/doc.php?id=BOE-A-2019-507, 검색일자: 2019. 2. 20.

15) Article 116 of the General Tax Act

Procedures) 등을 적극 활용

- 세무조사 대상 선정 및 조사 과정에서 국제조세 분야 전문가 활용을 확대할 예정임
-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분야를 세무조사 시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다국적기업 간 용역수수료 및 사용료 지급 등 세원잠식 우려가 큰 항목들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임
- 고정사업장에 대한 이익배분 적정성 및 저세율 국가를 활용한 조세구조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검증하고자 함

■ 과세 대상 거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누락된 과세정보를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 OECD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간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도록 할 것임
- 사업 및 전문용역 소득활동을 숨기거나 법인을 활용한 조세탈루 시도를 포착하기 위해 기습조사 및 전산조사 등의 조치를 적절히 사용할 것임
- 일반적인 세관 통관 절차 이외에도 보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 관광객들의 상품 구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관리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법인세 과세와 관련하여 사업활동이 저조한 기업들을 보다 중점적으로 관찰하고 조사활동을 강화할 것임

■ 조세 징수 과정에서의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세금 탈루 및 세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실천할 것임

- 조세 납부 미이행 위험 정도를 보다 정확히 측정하고, 징수 부족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화할 것임
- 납세의무를 관련 제3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의 납세 의무자를 보다 심도 있게 관찰할 예정임
- 재산압류 등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들과의 협조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임

■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포함하여 과세당국 및 자방자치단체 간 과세정보 교환을 확대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여하는 세액공제로서 개인소득세와도 연관된 항목
  - 상속세 및 부유세(wealth tax)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와 과세당국이 공통의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항목
  - 주소 변동 상황 및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의 정보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핀란드 - 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 제외 국가 리스트 발표]

■ 핀란드 과세당국은 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CFC rule)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국가 명단(white list)을 2019년 1월 14일자로 발표함[16]

-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특정외국법인과세제도 개정규정[17]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CFC rule 적용 제외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임

■ 유럽경제지역 이외 국가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에 대해 CFC rule을 면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 핀란드 간에 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럽경제지역(EEA)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이 실제 인력 및 장비, 자산 등을 보유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수행할 경우에는 CFC rule을 적용하지 아니함
- EEA 이외 국가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기 요건 외에도 해당 외국법인 소재지국과 핀란드 간에 정보교환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야 함

■ EEA 이외 국가로 핀란드와 정보교환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명단을 발표함

- <표 1>과 같이 EEA 이외 지역에 소재한 총 107개 국가 리스트를 발표함

<표 1> 비EEA 지역 국가 중 정보교환 협정 체결국

구분	국가
유럽	알바니아, 안도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로 제도, 조지아, 지브롤타, 그린란드, 아르메니아, 건지(Guernsey) 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저지(Jersey) 섬, 코소보, 마케도니아, 맨(Man) 섬, 몰도바, 모나코, 몬테네그로, 몬세라트, 노르웨이, 산마리노, 세르비아,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러시아
아시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브루나이, 필리핀,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중국, 대한민국, 쿠웨이트, 레바논, 마카오,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지키스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북중미	아루바, 앤티가 바부다, 미국, 바하마, 앵귈라, 바베이도스, 벨리즈, 버뮤다, 케이만군도, 코스타리카, 네덜란드령 퀴라소, 도미니카, 그레나다, 과테말라, 자메이카, 캐나다, 멕시코, 파나마, 세인트키츠 네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신트마르턴, 터커스 케이커스 제도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쿡 제도, 콜롬비아, 페루, 우루과이
아프리카	보츠와나, 이집트,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나이지리아, 잠비아, 세네갈, 세이셸, 탄자니아, 튀니지, 우간다
오세아니아	호주, 마셜(Marshall) 제도, 나우루, 니우에, 사모아, 뉴질랜드, 바누아투

출처: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syventavat-vero-ohjeet/ohje-hakusivu/72753/ laki-ulkomaisten-v%C3%A4liyhteis%C3%B6jen-osakkaiden-verotuksesta-valkoinen-lista/, 검색일자: 2019. 2. 22.

<자료 수집 및 정리: 김준현 회계사>

16)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data/tns/docs/html/tns_2019-01-16_fi_1.html, 검색일자: 2019. 2. 22.
핀란드 국세청, https://www.vero.fi/syventavat-vero-ohjeet/ohje-hakusivu/72753/laki-ulkomaisten-v%C3%A4liyhteis%C3%B6jen-osakkaiden-verotuksesta-valkoinen-lista, 검색일자: 2019. 2. 22.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18-8호, 2018 참고

[중국 - 중소기업 세금감면 통지 발표]

■ 중국 재무부는 중소기업의 과세 대상 소득의 일부만 과세하는 세금감면 통지를 2019년 1월 17일 발표하였음[18)]

- 중소기업의 연간 과세 대상 소득 중 100만위안 이하의 25%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아 20%의 저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함[19)]
- 100만위안을 초과하고 300만 위안 이하의 과세 대상 소득은 50%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보아 20%의 세율로 법인세를 부과함
  - 중국의 기본 법인세율은 25%임
- 동 세제혜택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됨

■ 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함

① 연 과세 대상 소득이 300만위안 이하
② 종업원수 300명 이하
③ 자산총액 5천만위안 이하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중국 -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납부면제금액 확대 발표]

■ 중국 재무부는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납부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19년 1월 19일 발표함[20)]

-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증치세 납부면제 기준을 현행 월 매출액 3만위안에서 10만위안으로 상향 조정함[21)]
- 소규모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간은 월 또는 분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당 1회 선택 가능하며 변경은 불가능함
  - 익월 15일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함
- 소규모 납세의무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해당 임대기간의 월평균 임대소득이 10만위안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치세를 면제함

■ 월 매출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할 경우에는 증치세 영수증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증치세일반영수증, 증치세전자일반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함

- 동 개정사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18) 중국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4014090/content.html, 검색일자: 2019. 2. 18.
19) 2019년 2월 26일 1위안=167원(KEB하나은행)
20) 중국 국세청, http://www.chinatax.gov.cn/n810341/n810755/c4014975/content.html, 검색일자: 2019. 2. 19.
21) 중국의 증치세 소규모 납세의무자는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자와 유사한 개념임

[싱가포르 - 「2019년도 예산안」 발표]

■ 싱가포르 재무부는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법개정안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안」을 2019년 2월 18일 발표함[22)]

- 2019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803억 싱가포르달러 규모이며, 예산안 세법개정 부속서에는 소득세, 법인세, 경유세 등의 개정사항이 포함됨

(소득세)

■ 싱가포르 건국 200주년 기념(Bicentennial Bonus)으로 2019년 납부할 개인소득세의 50%를 환급하기로 함

- 개인소득세 환급 최대 한도는 200싱가포르달러(약 17만원)로 건국 200주년을 기념하여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개인소득세 환급(Personal Income Tax Rebate)제도임[23)]

(법인세)

■ 정부의 자동화 지원정책(Automation Support Package)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세액 감면(Investment Allowance)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함

-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동화 장비 투자비용의 100%를 감면하며, 최대 1천만싱가포르달러를 한도로 지원함
- 감면기간은 2019년 3월 31일(2016년 예산안에 명시)에서 2년 연장하여 2021년 3월 31일까지임

(경유세 등)

■ 경유세(Diesel Taxes)를 인상하고 특별세(Annual Special Tax)를 인하하는 등 전반적인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개정을 단행함

- 경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용 경유, 산업용 경유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기존 1리터당 0.1싱가포르달러에서 0.2싱가포르달러로 인상됨
- 경유세 인상에 따라 경유용 일반차량과 택시에 부과되는 특별세(Annual Special Tax)를 다음과 같이 인하함
  - Euro Ⅳ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경유차는 6개월마다 배기량(cc)에 0.625싱가포르달러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525싱가포르달러를 하한으로 하여 특별세를 납부해야 함(현재는 575싱가포르달러)
  - Euro Ⅴ 배출 기준에 부합하는 경유차는 6개월마다 배기량(cc)에 0.2싱가포르달러를 곱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100싱가포르달러를 하한으로 하여 특별세를 납부해야 함(현재는 150싱가포르달러)
  - 경유택시는 6개월마다 1,700싱가포르달러의 특별세를 납부해야 함(현재는 2,125싱가포르달러)

22) 싱가포르 정부, https://www.singaporebudget.gov.sg/budget_2019/budget-speech/a-introduction#pa, 검색일자: 2019. 2. 19.
23) 2019년 2월 26일 1S$=828원(KEB하나은행)

- 경유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용 경유차량에 대해 도로세(road tax)를 환급해 주기로 함
  - 2019년 8월 1일~2020년 7월 31일: 도로세 100% 환급
  - 2020년 8월 1일~2021년 7월 31일: 도로세 75% 환급
  - 2021년 8월 1일~2022년 7월 31일: 도로세 50% 환급

(기타)

■ 여행자 휴대품 소비세(GST) 면세 한도(외국에 48시간 이상 체류 시)를 현재 600싱가포르달러에서 500싱가포르달러로 인하함

- 외국에 48시간 미만 체류 시에는 150싱가포르달러에서 100싱가포르달러로 인하됨
- 동 개정사항은 2월 19일 자정부터 적용됨

<자료 수집 및 정리: 정경화 전문연구원>

[OECD - BEPS Action 6, 14 관련 상호검토 보고서 발표]

■ OECD는 2019년 2월 14일 BEPS 프로젝트 Action 중 최소 기준인 Action 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 혜택의 부여 방지), Action 14(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와 관련된 상호검토 보고서를 발표함[24)]

- BEPS 프로젝트 참여국의 상호검토는 15개의 Action 중 최소 기준에 해당하는 4개의 Action에 대하여 참여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임
  - 본 보고서에 다루지 않은 Action 5(유해조세 환경에 대한 효과적 대응), Action 13(이전가격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도 최소 기준에 해당함

■ Action 6와 관련하여 116개 국가의 조약쇼핑에 대한 최소 기준 이행 여부를 평가한 상호검토 보고서 내용을 공개함

- 조약쇼핑 관련 최소 기준은 조세조약서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것임[25)]
  - 조세조약 서문에 조약의 목적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동시에 조약쇼핑 등을 통한 부당한 비과세 또는 조세경감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 도입
  - 다음의 세 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
    ① 혜택의 제한 규정(Limitation-On-Benefits: LOB)[26)]과 주 목적 근거 규정(Principal Purpose Test: PPT)[27)]을 조세조약에 동시 도입

24) OECD, https://www.oecd.org/tax/beps/oecd-releases-beps-peer-review-reports-on-improving-tax-dispute-resolution-mechanisms-and-preventing-treaty-shopping.htm 검색일자: 2019. 2. 19.
25)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조약 남용방지 관련 BEPS 프로젝트 주요 권고사항 및 국내외 입법동향』, 요약자료, 2016. 9.
26) 조세조약 혜택의 제한(LOB)규정은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 조정의 대상으로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인(person)을 조세조약 적용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도관(conduit) 형태의 인격을 부인하는 규정을 말함. 홍성훈·정훈·홍민옥, 『조세조약상 혜택제한 조항 도입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세법연구 15-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27) 주목적근거규정(PPT)은 거래 또는 약정의 주요 목적이 조약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여야 함을 말하며, 따라서 조세회피를 주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조약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② 주 목적 근거 규정(PPT) 단독 도입

③ 혜택의 제한 규정(LOB) 도입과 함께 도관 금융 약정을 통한 조약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규정 도입

■ 116개국의 2018년 조세조약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모든 국가의 조세조약이 Action 6 최소 기준에 부합됨

- 이는 2018년 7월 1일 이후로 발효되는 다자간 협약의 효과로 기인한 것이며, 다자간협약이 최소 기준 이행을 위한 우선적 수단임을 나타냄
- 한국에 대해서는 조약협정을 맺고 있는 93개 국가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특이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음

■ BEPS Inclusive Framework 참여국이 조약쇼핑 방지 규정을 몸소 실천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조약 국가 간 네트워크를 수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Action 14와 관련하여 5조에 속한 국가들(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 총 8개국)에 대한 상호검토 1단계 보고서 내용을 발표함

- Action 14 상호검토는 Action 14의 최소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1단계와 1단계에서 발견한 미비점의 시정 여부를 평가하는 2단계로 이루어지며, 본 상호 검토 보고서는 1단계 검토 보고서임
- 본 1단계 상호 검토 보고서는 Action 14의 네 가지 최소 기준인 ① 분쟁방지 노력 ② 상호합의 절차(MAP)의 이용가능성과 접근성 보장 ③ MAP 사건의 해결 ④ MAP 합의 이행 현황 등을 평가함

■ 전반적으로 평가 대상국이 Action 14의 최소 기준에 부합하고 있음[28)]

- 아이슬란드는 최소 기준 요건 중 절반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고 있으며, 루마니아는 절반 이하 기준에 부합함
- 평가 대상국 대부분 국가들이 상호합의 절차(MAP)를 통해 분쟁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하였으며, MAP 이행 수준은 대체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MAP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OECD는 2020년까지 1단계 상호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며, 한국은 2019년 2월 2단계 상호검토 업무가 착수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28) EY, https://www.ey.com/gl/en/services/tax/international-tax/alert--oecd-releases-iceland-peer-review-report-on-implementation-of-beps-action-14-minimum-standard, 검색일자: 2019. 2. 25.

<표 2> Action 14 관련 상호검토 일정 및 검토 국가

구분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10조
1단계 착수	2016 -12	2017 -03	2017 -07	2017 -12	2018 -04	2018 -08	2018 -12	2019-04~ 2019-12
2단계 착수	2018 -09	2018 -10	2019 -02	2019 -08	2019 -10	미정	미정	미정
검토 국가	벨기에	오스트리아	체코	호주	에스토니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브루네이 등 26개국
	캐나다	프랑스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스	칠레	불가리아	
	네덜란드	독일	핀란드	이스라엘	헝가리	콜롬비아	중국	
	스위스	이탈리아	한국	일본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홍콩	
	영국	리히슈테인	노르웨이	몰타	루마니아	인도	인도네시아	
	미국	룩셈부르크	폴란드	멕시코	슬로바키아	라트비아	파푸아뉴기니	
		스웨덴	싱가포르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리투아니아	러시아	
			스페인	포르투갈	터키	남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출처: OECD, http://www.oecd.org/tax/beps/beps-action-14-peer-review-assessment-schedule.pdf, 검색일자: 2019. 2. 25.

[OECD - BEPS Action 1 공개 협의문서 발표]

■ OECD는 2019년 2월 13일 BEPS프로젝트 Action 1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과 관련하여 공개 협의문서(public consultation document)를 발표함[29)]

- BEPS Inclusive Framework는 2019년 3월 13~14일 디지털 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방안과 관련된 공개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사전에 협의문서를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견해를 구하고자 함

■ BEPS Inclusive Framework는 2018년 3월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 관련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동 보고서에서 디지털 경제에서의 이익배분 및 과세준거점(nexus) 기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바 있음

-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조세문제에 대한 장기 해결책은 2020년 최종 보고서에 발표하기로 함

■ 이익배분과 과세준거점 개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 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① 사용자 참여(user participation) ② 마케팅 무형자산[30)](marketing

29) OECD, https://www.oecd.org/tax/beps/oecd-invites-public-input-on-the-possible-solutions-to-the-tax-challenges-of-digitalisation.htm?utm_source=Adestra&utm_medium=email&utm_content=&utm_campaign=Tax%20News%20Alert%2019-02-2019&utm_term=demo, 검색일자: 2019. 2. 25.

30) OECD가 발표한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보고서(2017)상의 동일한 의미로, 마케팅 무형자산이란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상업적 판촉에 도움을 주고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중요한 상업적 가치를 갖는 상표 및 상호, 고객 리스트, 유통망, 고객 데이터 등을 말함

intangibles) ③ 상당한 경제적 실질(significant economic presence) 기준임

- 사용자 참여 기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검색엔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고(高) 디지털화된 사업에 대해 실제 사용자의 참여 데이터가 기업 가치 창출의 핵심이기 때문에 사용자를 기반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함
- 마케팅 무형자산 기준은 다국적기업이 고객 기반 데이터 및 기타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해 본질적으로 도달(reach into)할 수 있는 관할권을 기준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함
- 상당한 경제적 실질 기준은 비거주기업이 디지털기술 및 기타 자동화된 방법을 통해 의도적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맺은 관할권을 기준으로 소득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함

■ 저세율국 등으로 소득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① 소득산입규정(income inclusion rule) ② 세원잠식세(tax on base eroding payments)를 제안함

- 소득산입규정은 법인의 소득이 최소 세율로도 과세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주주[31]에게 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세금의 지분율만큼 요구하는 규정임
- 세원잠식세는 소득 원천국에 납부하는 세액이 유효세율 또는 최저한세 이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공제 및 조세감면 혜택을 부인하여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보호 하고자 하는 규정임

■ 동 보고서는 정책 설계단계에서의 검토된 규정에 대한 설명을 다루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사항임을 유의해야 함

- 상기 제안 규정들에 대한 정책적 이슈와 기술적 의견을 보완하여 최종 보고서는 2020년에 발표될 예정임

<자료 수집 및 정리: 서희진 회계사>

31)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당한 지분율(25%)을 보유한 주주를 대상으로 함

주요국의 재정동향

EU

■ EU 집행위원회, 2019년 겨울 경제전망 발표(2019. 2. 7.)[1)]

※ EU 집행위원회는 연 4회 경제전망(겨울 중간전망, 봄 전망, 여름 중간전망, 가을 전망)을 발표함

● (경제성장) 2019년 유로지역 GDP 성장률은 지난 가을 전망 대비 0.6%p 하향 조정된 1.3%, 2020년은 0.1%p 하향 조정된 1.6%로 전망됨

- EU의 GDP 성장률은 2019년 1.5%, 2020년 1.7%로 전망되어 지난 가을 전망 대비 각각 0.4%p, 0.1%p 하향 조정됨
- 교역 증가세 둔화 및 무역정책 관련 불확실성 고조, 제조업 생산 감소, 일부 회원국의 사회적 갈등 및 재정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2018년 하반기 경제성장이 둔화되었고 올해 초 경제 모멘텀이 감소함
- 그러나 펀더멘털은 계속 양호하며 향후 2년간 경제는 완만하지만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전망
  - 노동시장 여건 개선, 다소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 매우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전망에 따른 우호적인 금융시장 여건 등은 유럽 경제에 긍정적 요인임

● (물가)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2019년 1.4%로 상승세가 완만해지고, 2020년 1.5%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전망

- 에너지 가격의 급락과 식료품 물가상승률 하락으로 인해 2018년 말 유로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하였고, 근원인플레이션은 임금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연중 완만하게 나타났음
- 기저 효과와 원유 선물가격 가정 하향 조정으로 2019년 유로지역 물가상승률은 지난 가을 전망 대비 하향 조정됨
- EU의 평균 물가상승률은 2019년 1.6%, 2020년은 1.8%로 전망됨

● (주요 리스크) 불확실성이 상당히 남아 있으며 하방 리스크가 우세함

- (세계 경제 리스크) 미-중 무역 갈등, 중국 경제의 급격한 둔화 가능성, 미국의 정치적 교착상태로 인한 재정 관련 리스크, 투자 심리 및 성장전망 변화에 취약한 글로벌 금융시장과 다수 신흥시장 등이 리스크 요인임
- (EU 경제 리스크)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일부 회원국의 금융부문 부실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negative sovereign-bank loops), 배출가스 규제로 인한 자동차산업 둔화 등이 하방 리스크이며, EU 기금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추가 투자 유발, 우호적인 노동시장 조건으로 인한 내수 강화 등은 상방 리스크로 작용

1)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Winter 2019(Interim)*, 2019. 2. 7.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european-economic-forecast-winter-2019_en
European Commission, Winter 2019 Economic Forecast: growth moderates amid global uncertainties, 2019. 2. 7.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9-850_en.htm

<표 1> 유로 지역 및 EU 국가의 경제전망

(단위: %)

국가	경제성장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2019 Winter 전망			2018 Autumn 전망			실적	2019 Winter 전망		2018 Autumn 전망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2019	2020
벨기에	1.4	1.3	1.2	1.5	1.5	1.4	2.3	1.9	1.7	2.1	1.6
독일	1.5	1.1	1.7	1.7	1.8	1.7	1.9	1.4	1.5	1.9	1.6
에스토니아	3.5	2.7	2.4	3.5	2.8	2.6	3.4	2.8	2.3	3.3	2.5
아일랜드	6.8	4.1	3.7	7.8	4.5	3.8	0.7	0.9	1.4	1.2	1.4
그리스	2.0	2.2	2.3	2.0	2.0	2.0	0.8	0.7	1.3	1.2	1.0
스페인	2.5	2.1	1.9	2.6	2.2	2.0	1.7	1.2	1.5	1.7	1.5
프랑스	1.5	1.3	1.5	1.7	1.6	1.6	2.1	1.4	1.7	1.7	1.6
이탈리아	1.0	0.2	0.8	1.1	1.2	1.3	1.2	1.0	1.3	1.5	1.4
키프로스	3.8	3.3	2.7	3.9	3.5	2.9	0.8	0.7	1.2	1.3	1.4
라트비아	4.7	3.1	2.6	4.1	3.2	2.9	2.6	2.7	2.1	2.7	2.4
리투아니아	3.6	2.7	2.4	3.4	2.8	2.5	2.5	2.2	2.1	2.2	2.1
룩셈부르크	3.0	2.5	2.6	3.1	3.0	2.7	2.0	1.6	1.8	2.0	1.8
몰타	6.2	5.2	4.6	5.4	4.9	4.4	1.7	1.8	1.9	1.9	2.0
네덜란드	2.5	1.7	1.7	2.8	2.4	1.8	1.6	2.4	1.7	2.5	1.7
오스트리아	2.7	1.6	1.6	2.7	2.0	1.8	2.1	2.0	2.0	2.1	2.0
포르투갈	2.1	1.7	1.7	2.2	1.8	1.7	1.2	1.3	1.6	1.6	1.6
슬로베니아	4.4	3.1	2.8	4.3	3.3	3.0	1.9	1.9	2.1	2.3	2.2
슬로바키아	4.2	4.1	3.5	4.0	4.1	3.5	2.5	2.5	2.4	2.6	2.4
핀란드	2.5	1.9	1.7	2.9	2.2	1.9	1.2	1.4	1.8	1.6	1.8
Euro area	1.9	1.3	1.6	2.1	1.9	1.7	1.7	1.4	1.5	1.8	1.6
불가리아	3.2	3.6	3.6	3.5	3.7	3.6	2.6	2.0	1.8	2.0	1.8
체코	2.9	2.9	2.7	3.0	2.9	2.6	2.0	2.1	1.9	2.2	1.8
덴마크	0.8	1.6	1.3	1.2	1.8	1.6	0.7	1.2	1.7	1.5	1.7
크로아티아	2.8	2.7	2.6	2.8	2.8	2.6	1.6	1.4	1.4	1.5	1.4
헝가리	4.8	3.4	2.6	4.3	3.4	2.6	2.9	2.8	3.0	3.3	3.0
폴란드	5.1	3.5	3.2	4.8	3.7	3.3	1.2	2.3	2.7	2.6	2.7
루마니아	4.0	3.8	3.6	3.6	3.8	3.6	4.1	3.3	3.1	3.5	3.3
스웨덴	2.2	1.3	1.7	2.4	1.8	1.8	2.0	1.7	1.6	1.9	1.6
EU27	2.1	1.5	1.8	2.2	2.0	1.9	1.8	1.6	1.7	1.9	1.7
영국	1.4	1.3	1.3	1.3	1.2	1.2	2.5	1.8	2.0	2.0	1.9
EU28	1.9	1.5	1.7	2.1	1.9	1.8	1.9	1.6	1.8	2.0	1.8

출처: European Commission, European Economic Forecast, Winter 2019(Interim), 2019. Table 1, 3.

■ EU 경제재무이사회, 2020년 EU 예산 편성 지침 채택(2019. 2. 12.)[2]

- 2020년 EU 예산은 2014~2020 다년도 지출계획(MFF)[3]의 마지막 예산으로 다년도 지출계획의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강조
  - 2020년 예산은 건전한 예산 편성을 보장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한도 내에서 충분한 마진을 두어야 함
  - 이와 동시에 EU 정책 달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원을 배정해야 함
  - EU 결속정책 등에서의 미집행 예산(unpaid claims) 방지를 위해 현재 다년도 지출계획하에 승인된 금액이 적기에 지불되도록 해야 함
  - 예산 분담금과 회원국에 대한 EU 예산지출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강조
- 이 외에도 집행위원회가 예산 문서의 내용을 보다 간결하고 투명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모든 기관의 행정지출 축소·동결, 행정비용 안정화, 직원 규모 통제 등 EU 행정지출의 합리화를 촉구

OECD

■ OECD 회원국의 차입전망 보고서(Sovereign borrowing outlook) 발표 (2019. 2. 8.)[4]

- (총차입수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OECD 회원국의 중앙정부 차입수요(borrowing needs)는 크게 급증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채무는 명목기간 동안 두 배가량 상승함
  - 이는 자금조달 여건의 개선으로 채무 지속가능성에 관한 우려 완화와 시장충격에 대한 공공재정의 회복성(fiscal resilience) 강화에 따른 것임
  - 2010년 10조 9천억달러로 정점을 찍었던 시장 총차입액은 2019년 11조달러를 넘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
- OECD 회원국의 미지불 중앙정부채무 수준은 2007년에서 2018년 사이에 두 배 상승하였으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07년 49.5%에서 2018년 72.6%로 상승
  - 새로운 채무 발행으로 중앙정부채무의 명목 수준은 증가하나,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19년 72.6%를 유지할 전망

2)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Outcome of the Council Meeting(3671st)-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2019. 2. 12.
https://www.consilium.europa.eu/media/38155/st06301-en19.pdf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Council, Council sets its priorities for the 2020 EU budget, 2019. 2. 12.
https://www.consilium.europa.eu/en/press/press-releases/2019/02/12/council-sets-its-priorities-for-the-2020-eu-budget
3) 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
4) OECD, http://www.oecd.org/finance/Sovereign-Borrowing-Outlook-in-OECD-Countries-2019.pdf
http://www.oecd.org/finance/oecdsovereignborrowingoutlook.htm

[그림 1] OECD 회원국의 차입 규모 추이와 전망(2007~2019년)

(단위: 조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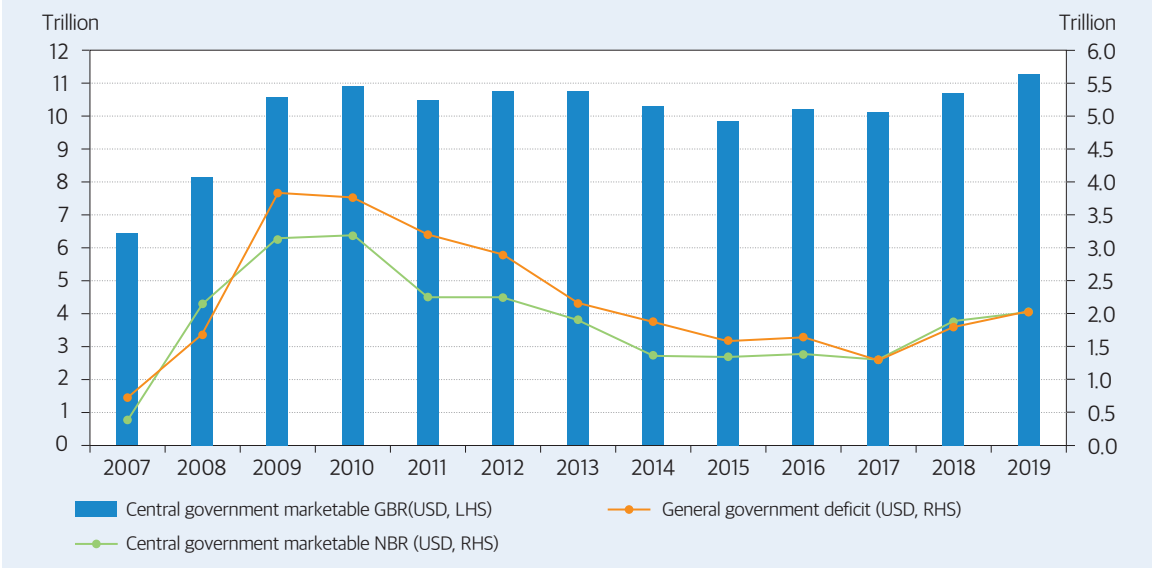

주: GBR = standardised gross borrowing requirement
NBR = net borrowing requirement.
출처: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9, Figure 1.1.

[그림 2] 중앙정부 GDP 대비 총채무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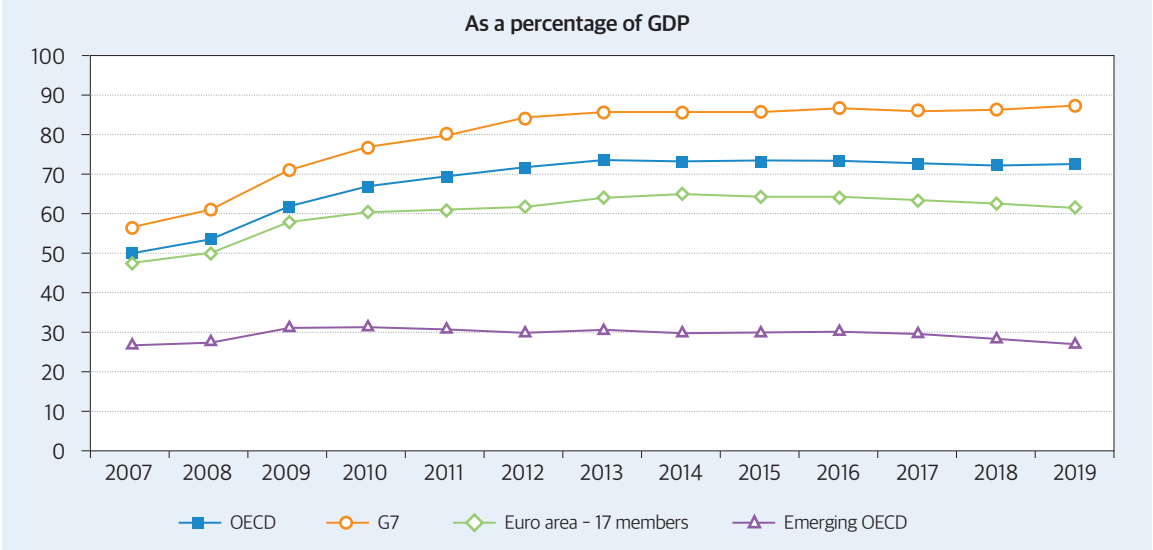

출처: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9, Figure 1.4.

[그림 3] G7국가의 GDP 대비 채무 비율과 이자율과 성장률 격차

(단위: % of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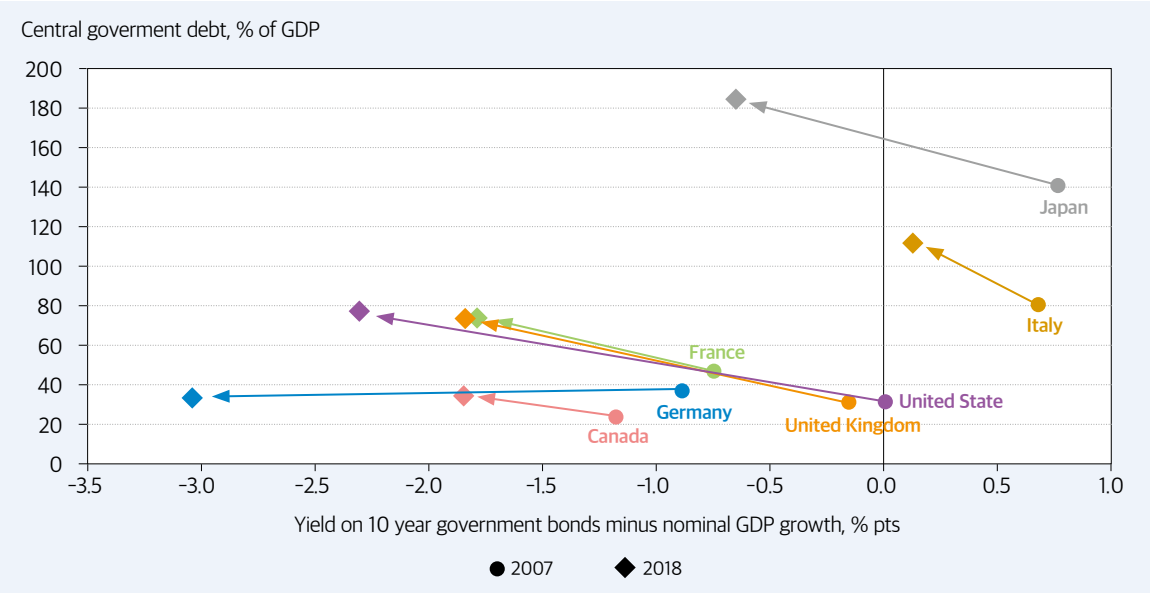

출처: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19, Figure 1.4.

-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국가별 정도는 다르지만 G7의 이자율과 성장률 차이는 최근 개선되고 있으며, GDP 대비 채무 비율은 증가하지만 증가 속도는 느려짐

- G7국의 중앙정부 GDP 대비 채무 비율은 2019년에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탈리아만 이자율과 성장률 격차가 양(positive)의 값을 가짐

- 독일을 제외한 모든 G7 국가에서 채무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독일은 재정건전화와 우호적 이자율 성장률 격차에 기인해 채무가 점진적으로 하락함

미국

[예산·결산 등]

■ 미(美) 의회, 약 14억달러 규모의 국경장벽 예산 양당(공화/민주) 잠정 합의(2019. 2. 12.)[5]

- (법안 내용) 약 14억달러 규모에 가까운 55마일 길이의 국경 울타리(fence) 예산과 함께 이민세관단속국(ICE)[6]의 수용소의 불법이민자 수용인원(4만 520명) 등을 포함

* 이번 국경장벽 건설 예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 주장해왔던 약 230마일에 달하는 강철장벽 건설을 위한 약 57억달러 예산보다는 대폭 축소·후퇴한 규모

5) CNBC, https://www.cnbc.com/2019/02/12/trump-addresses-border-security-deal-to-avoid-government-shutdown.html
6)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 세부적인 최종법안 내용은 아직 통과되지 못한 2019회계연도의 총 7개 세출법안과 함께 이번 주 후반기에 완료될 전망[7]

● (백악관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2일(화)에 열린 백악관 각료회의에서 의회법안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법안 서명 여부에 대해 숙려가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수정을 위한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추가적인 셧다운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힘[8]

● (민주당 입장)[9] 민주당 상원 척 슈머(Chuck Schumer)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어느 누구도 이 법안에 만족하지는 않는다는 발언과 함께, 셧다운 종료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 촉구

한편, 하버드 대학교에서 최근 실시한 국경안보 관련 여론조사(Harris Poll survey)[10]에 따르면, 유권자의 79%는 국경안보 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 또한 전체 유권자의 61%는 현재의 국경안보 체계는 불충분(inadequate)하다고 응답

■ 미 의회, 국토안보 분야를 포함한 총 7개[11] 세출 분야에 대한 FY2019 예산안(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H.J.Res.31; P.L. 116-6) 최종 통과 의결,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서명과 함께 국가비상사태[12] 선포(2019. 2. 15.)[13]

● (세출예산 승인) 3차 임시예산법의 만료시한 마지막 날(2019. 2. 15.) 의회는 총지출[14] 1조 3,470억달러 규모의 통합세출예산법안 승인 의결[15]

● (셧다운 사태 해소) 트럼프 대통령이 동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35일간 진행되었던 2019 회계연도의 셧다운 사태 해소

● (국가비상사태 선포)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됨으로써 남부지역의 국경안보와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응한 정부의 활동은 「국가비상사태법」에 의거하여 군의 지원을 받게 되며,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위해 약 67억달러 규모의 국방부 예산 전용 추진 예정

* 「국가비상사태법」[16] 2장 201조에 따르면, 국가비상사태는 의회가 공동결의안을 통해 종결시키거나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종료 선포를 통해 해제됨

- (전용 계획 내역) 국방 관련 건축비용 36억달러, 군의 마약퇴치 활동 등에 약 25억달러, 재무부의 몰수기금(Treasury forfeiture fund) 6억달러 등[17]

7) Vox, https://www.vox.com/2019/2/12/18221468/congress-border-security-deal
8)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cabinet-meeting-13
9) CSPAN, https://www.c-span.org/video/?457844-101/senate-democrats-call-president-sign-border-deal-avert-shutdown&start=86
10) 워싱턴 타임즈(The Washington Times) 2018. 1. 23. 기사
11) ① 내무/환경, ② 금융, ③ 농업, ④ 교통/주택/도시개발을 포함하여 ⑤ 통상/사법/과학, ⑥ 국무부/외교, ⑦ 국토안보 분야 세출법안
12)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text-letter-speaker-house-representatives-president-senate-2/
13) CNBC, https://www.cnbc.com/2019/02/12/trump-addresses-border-security-deal-to-avoid-government-shutdown.html
14) 예산 권한(Budget Authority) 규모는 1조 3,370억달러
15) CRFB, http://www.crfb.org/blogs/appropriations-watch-fy-2019
16) Sec 201 of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17)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ident-donald-j-trumps-border-security-victory

● (민주당 대응) 민주당은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기 위한 공동 결의안(H.J.Res.46) 발의 (2019. 2. 25.)

* 법안 대표발의자: 호아킨 카스트로(Castro, Joaquin) 민주당 하원의원

[기타]

■ 미 의회조사처(CRS),[18] 연방학자금 채무(Federal Student Loan Debt) 현황 조사 발표[19](2019. 2. 4.)

● 현재 연방학자금[20] 대출 상환 대상자(loan portfolio)는 약 4,300만명, 대출 규모는 약 1조 4천억달러로 집계

- 최근 연방학자금 대출 수령 학생 수 및 평균 대출 금액, 누적평균 학자금 채무(average cumulative federal student loan debt) 모두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vs 2018년) 2007년 총대출 학생 수는 2,830만명 → 2018년 총 4,290만명으로 증가, 대출 규모는 2007년 5,160억달러 → 2018년 총 1조 4천억달러 기록

* 연방학자금은 1965 HEA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5-1996학년도>~<2011-2012학년도> 사이 대출받은 학부생 수는 410만명 → 930만명으로 약 124% 증가

※ 2017회계연도 결산보고서(2017. 9. 30. 기준)[21] 에 따르면, 연방정부 총자산 3조 5천억달러 중 순대출잔액(net loans receivable) 비중은 약 37%(약 1조 3천억달러)이며, 이 중 대부분이 학자금으로 구성

[그림 4] FY2007~FY2018 연방학자금 대출 원리금 현황

(단위: 십억달러, 백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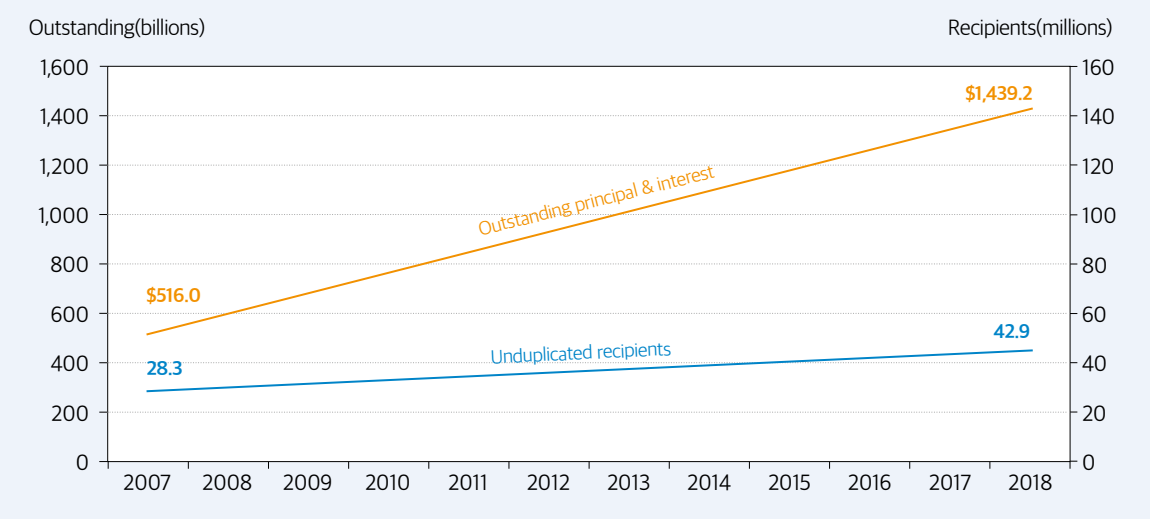

주: 달러 규모는 명목 규모
출처: CRS, A Snapshot of Federal Student Loan Debt, 2019. 2. 4

18)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19) CRS, "A Snapshot of Federal Student Loan Debt," 2019. 2. 4.
20) 연방학자금은 Higher Education Act of 1965(HEA) Title IV에서 규정
21)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에서 2018년 2월 15일 발표

일본

[기타]

■ 내각부, 2018년 4분기 GDP 1차 속보치 발표 (2019. 2. 14.)[22]

● 2018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3%(연율 1.4%), 명목 GDP 성장률은 0.3%(연율 1.1%)를 기록

- (국내외 수요 기여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한 국내수요 기여도는 0.6%로 2분기만에 양(+)의 기여를 나타냈으며, 재화·서비스 순수출 기여도(외수)는 -0.3%로 3분기 연속 음(-)의 기여를 보였음
- (민간수요) 민간수요는 전분기 대비 0.7% 증가하였으며, 민간수요 중 민간최종소비지출과 민간주택 투자, 민간설비 투자 모두 증가세를 나타내었음
  -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음식 서비스, 자동차 등의 증가에 기인하여 전 분기 대비 0.6% 증가하여 2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섬
  - 민간주택투자는 전 분기 대비 1.1% 증가하여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나타냄
  - 민간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2.4% 증가하

<표 2> 2018년 4분기 실질GDP 성장률 1차 속보치(계절 조정)

(단위: 전 분기 대비, %)

항목	2017년	2018년					2018년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기여도	4분기 연율 환산
국내총생산 (GDP)	0.5	-0.2	0.6	-0.7	0.3	-	1.4
국내수요	0.5	-0.3	0.7	-0.5	0.7	-	2.6
민간수요	0.7	-0.4	0.9	-0.6	0.7	(0.5)	3.0
민간최종소비지출	0.5	-0.2	0.6	-0.2	0.6	(0.3)	2.4
민간주택투자	-3.2	-2.0	-2.0	0.5	1.1	(0.0)	4.7
민간설비투자	0.8	1.0	2.5	-2.7	2.4	(0.4)	9.8
민간재고증감	(0.2)	(-0.3)	(0.0)	(0.1)	-	(-0.2)	-
공적수요	-0.0	0.0	-0.1	-0.3	0.4	(0.1)	1.6
정부최종소비지출	0.0	0.2	0.1	0.2	0.8	(0.2)	3.2
공적고정자본형성	-0.3	-0.7	-0.6	-2.1	-1.2	(-0.1)	-4.6
공적재고증감	(0.0)	(-0.0)	(-0.0)	(-0.0)	-	(0.0)	-
재화·서비스 순수출[2]	(0.0)	(0.1)	(-0.1)	(-0.1)	-	(-0.3)	-
재화·서비스 수출	2.2	0.4	0.4	-1.4	0.9	(0.2)	3.7
재화·서비스 수입	2.3	0.0	1.3	-0.7	2.7	(-0.5)	11.3

주 1: ( ) 안은 국내총생산에 대한 기여도를 나타냄
2: 재화서비스 순수출=재화서비스 수출재화서비스 수입

출처: 내각부, 「2018(平成30)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9. 2. 14.

22) 내각부, 「2018(平成30)年10-12月期四半期別GDP速報(1次速報値)」, 2019. 2. 14.
https://www.esri.cao.go.jp/jp/sna/data/data_list/sokuhou/files/2018/qe184/pdf/gaiyou1841.pdf

였으며, 생산용 기계 지출이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 (공적 수요) 공적 수요는 전 분기 대비 0.4% 증가하였으며, 공적 수요 중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증가한 반면, 공적 고정자본형성은 감소하였음
  - 정부최종소비지출은 전 분기 대비 0.8% 증가하여 6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임
  - 공적 고정자본형성은 전 분기 대비 1.2% 감소
- (수출·수입) 재화·서비스 수출은 자동차 등 수출 증가에 따라 전 분기 대비 0.9% 증가하여 2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재화·서비스 수입은 휴대전화 등 수입 증가에 따라 전 분기 대비 2.7% 증가하였음
- (GDP 디플레이터) GDP 디플레이터는 전 분기 대비 0.1% 감소하였음

독일

[예산·결산 등]

■ 재무부, FY2018 잠정결산 발표(2019. 1. 15.)[23]

- (재정지출) 2018년 재정지출은 3,436억유로로 기존 지출목표 대비 47억유로 높게 집계
- (재정수입) 조세수입이 EU자체 수입 이전, 소득세, 법인세 등의 증가로 목표치 대비 11억유로 상회하는 등 2018년 재정수입은 목표치보다 47억유로 많은 3,483억유로로 집계

<표 3> FY2018 결산(잠정)

(단위: 억유로)

구분	2018(목표)	2018(잠정)	목표치 대비 차이
재정지출	3,436	3,483	+47
재정수입	3,436	3,483	+47
조세수입	3,213	3,224	+11
세외수입	207	259	+53
목적예비비	16	-	-16
신규차입	-	-	-

출처: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9. 1. 15.

-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GDP 대비 0.15% 흑자를 기록, 이는 「채무제한법」[24] 기준 대비 0.5%p 높은 수치
- 최종 결산보고서는 6월 발표 예정

[기타]

■ 경제에너지부, 2019년 경제전망보고서(Jahreswirtschaftsbericht 2019) 발표(2019 1. 31.)[25]

- (배경) 연방정부는 1967년 제정된 「경제안정 및

23)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https://www.bundesfinanzministerium.de/Content/DE/Pressemitteilungen/Finanzpolitik/2019/2019-01-15-PM01-Abschluss-BHH2018.html;jsessionid=A938B128C51877D76DF15728C1CF3CC9

24) Schuldenbremse(Debt Brake): 2016년부터 연방정부의 구조적 재정적자는 GDP의 0.35%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정부에 대해서는 2020년에 구조적 균형예산을 이루어야 함. 한국조세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 「정책분석 14-03 주요국의 재정준칙 운용 사례」 p. 161 참고

25) 경제에너지부, Pressemitteilung, 2019. 1. 31. https://www.bmwi.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19/20190130-jahreswirtschaftsbericht-2019-soziale-marktwirtschaft-staerken.html

[그림 5]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추이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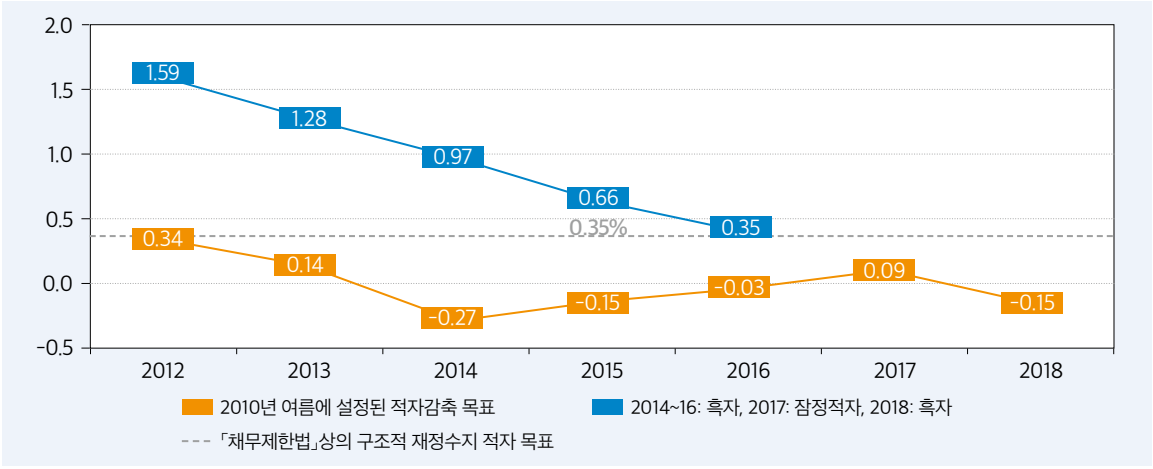

출처: 연방재무부, Presse, Pressemitteilungen, 2019. 1. 15.

성장촉진법」[26]에 따라 동 보고서를 매년 하원과 상원에 제출

- (경제전망) 2019년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0.5%p 하락한 1.0%, 실업률은 2018년 보다 0.3%p 낮은 4.9% 수준으로 전망
  - 성장 저해 요인(headwinds)으로는 브렉시트, 무역분쟁, 국제 조세정책 환경 등을 언급함
  - 2018년 12월 연방은행의 월간보고서에는 2019년 경제성장률을 1.6%, 실업률을 4.5%로 전망[27]
- (정책방향) 디지털화, 전력망 확충, 핵심기술 개발 등에 지원 확대
  - 디지털인프라 특별기금[28]을 통해 기가비트 네트워크 환경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electricity grid) 구축 지원
  - 또한 배터리 제조, 인공지능 등 미래형 핵심기술에 투자할 계획

<표 4>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전망)
실질 GDP 성장률	2.2	1.5	1.0
실업률	5.7	5.2	4.9
설비투자	3.7	4.5	2.3
건설	2.9	3.0	2.9
내수	2.0	1.8	1.4
수출	4.6	2.4	2.7
수입	4.8	3.4	4.0
임금	2.5	3.2	3.1

출처: 경제에너지부, Jahreswirtschaftsbericht 2019, 2019. 1. 31.

26) StWG: Gesetz zur Forderung der Stabilitat und des Wachstums der Wirtschaft

27) 연방은행, press, press-releases, 2018. 12. 15.
https://www.bundesbank.de/en/press/press-releases/new-bundesbank-projection--german-economy-remains-on-solid-growth-path-770238

28) 연방내각은 현대식 교육환경 구축과 농촌지역 등에 광대역 인프라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24억유로 규모의 디지털 인프라 특별기금 조성 법안을 승인(2018. 8.)

프랑스

[기타]

■ 보건·연대부(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의료 시스템 개선 법안(PJL)을 제시(2019. 2. 14.)[29]

※ 2018년 9월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한 "My Health 2022"[30] 전략을 법안으로 발의

- 의료 전문가들의 협업을 장려하고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의료시스템을 환자 중심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정책
  - (의료인) 숙련된 의사의 수를 매년 20% 증원하여 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사가 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보조 인력을 2019~2022년 동안 4천명 추가 채용
  - (의료전문가 네트워크) '지역 의료전문가 커뮤니티'(Communautés professionnelles territoriales de santé)[31]를 창설하여 지역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종합건강센터) 다양한 분야의 의료 전문가를 통해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종합건강센터[32] 300개 추가 설립(현재 910개 센터 보유)
  - (지역병원)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지역병원들을 개편하여 노인의학·만성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병원으로 2022년까지 500~600개 전환·구축 예정
  - (원격진료) 건강데이터 허브를 통해 데이터의 이용 및 원격진료를 가능케 함
- 올해 3월 25일 국회에서 법안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

영국

[예산·결산 등]

■ 재무부, FY2018-19 추가경정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 발표(2019. 2. 11.)[33]

* 영국은 매년 2월경 정례적으로 추경을 편성해 본세출예산안(Main Supply Estimates, 전년도 4월 발표)에서 확정된 지출 권한을 수정
- 이외에도 예외적으로 긴급한 사유에 의해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경우 특별추경예산안(Out-of-turn Supplementary Estimates)을 편성할 수 있음

- FY2018-19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은 본세출예산(6,018억파운드) 대비 213억파운드 감액된 5,805억파운드로 수정
  - 부처별 지출 한도(DEL)[34]는 본세출예산 대비

29) 프랑스 정부, https://www.gouvernement.fr/action/strategie-de-transformation-du-systeme-de-sante
https://www.gouvernement.fr/sante-500-hopitaux-de-proximite-et-4-000-assistants-medicaux-en-plus
30) 보건·연대부, https://solidarites-sante.gouv.fr/systeme-de-sante-et-medico-social/ma-sante-2022-un-engagement-collectif/
프랑스 정부, https://www.gouvernement.fr/argumentaire/strategie-de-transformation-du-systeme-de-sante
31) 지역 의료전문가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커뮤니티로 2016년 「보건시스템 현대화법」을 근거로 함. 지역 의료전문가 커뮤니티는 1차 진료팀으로 분류되는 의료전문가, 1차/2차 진료를 제공하는 전문가, 지역건강프로젝트(Pojet Régional de Santé: PRS)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의학 및 의학사회적·사회 활동가들로 구성됨.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원격진료 및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한 협업을 통해 진료
32) les Maisons de santé pluridisciplinaires: MSP
33) 재무부, "Supplementary Estimates 2018-19," 2019. 2. 11.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pplementary-estimates-2018-19
34) Departmental Expenditure Limit: Spending Review에서 확정된 3~4년의 기간에 대한 부처별 지출 상한으로 관리되는 통제 가능한 지출

195억파운드 증액된 3,391억파운드, 연간관리지출(AME)[35]은 본세출예산 대비 478억파운드 감액된 1,726억파운드

- 총비예산 지출(Total Non-Budget Expenditure)[36]은 약 70억파운드 증액된 688억파운드

● FY2018-19 총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37]은 본세출예산 대비 94억파운드 증액된 5,129억파운드로 수정

- 주택·지역사회·지방정부부, 재무부 등의 감액, 교육부, 법무부 등의 증액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5> FY2018-19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2018-19 본예산(A)	2018-19 추경안(B)	증감 (B-A)
부처별 지출 한도(DEL)	319,654	339,117	19,463
연간관리지출(AME)	220,383	172,563	-47,820
총순예산 (Total Net Budget)	540,037	511,680	-28,357
총비예산지출 (Total Non-Budget Expenditure)	61,776	68,784	7,008
총지출(Total Resource and Capital in Estimates)	601,813	580,464	-21,349
현금주의 조정 (Resource to cash adjustments)	-98,346	-67,592	30,754
총순현금 소요액(Total Net Cash Requirement)	503,467	512,872	9,405

출처: 재무부, Central Government Supply Estimates 2018-19 - Supplementary Estimates, 2019, Table 1.

[기타]

■ 메이 총리, 브렉시트 관련 성명(statement) 발표 (2019. 2. 12.)[38]

● (경과)[39] 1월15일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에서 부결 → 21일 메이 총리 플랜B 발표 → 29일 플랜B에 대한 여러 수정안 중 2건 가결 → 현재 EU와 재협상 시도 중

● (내용) 가결된 수정안을 기반으로 EU와 재협상을 시도한 경과 및 향후 일정 등을 언급

- 융커 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부를 만나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다음 세 가지 방안을 설명

*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는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여,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엄격한 국경통제(hard border)를 피하고자 한 조항

  - 안전장치를 다른 대안으로 대체하는 것
  - 기존 안전장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간 제한을 두는 것
  - 기존 안전장치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일방적인 종료 조항을 두는 것

- 그러나 EU는 재협상 재개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재협상 마무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

* 당초 재협상을 마무리하여 수정된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해 2월 14일경 하원의 승인 투표를 다시 실시할 예정이었음

- 만약 2월 26일까지 재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성명을 통해 수정 결의안(motion)을 발

35) Annually Managed Expenditure: 사회보장지출, 세액공제 등 수요 주도적(demand-led)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로 예측이나 통제가 비교적 어려운 지출
36) 비부처공공기구(NDPBs)에 대한 보조금(grant-in aid)과 같이 세출예산을 통해 승인하지만 부처별 지출한도와 연간관리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37) 예산의 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에서 필요한 현금 규모의 합계를 의미
38) 정부통합 홈페이지, "PM's statement to the House of Commons on Brexit: 12 February 2019," 209. 2. 12.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ms-statement-to-the-house-of-commons-on-brexit-12-february-2019
39) 세부사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재정동향」을 참고 바람

표하고, 27일 이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예정

■ 정부, 신규 주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공 부동산 통합 프로그램(OPEP)[40] 5개년 계획 발표(2019. 2. 15.)[41]

● 동 프로그램은 공공부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신규 주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13년 도입[42]

- 한 곳에서 서비스가 전달되는 공공부문 '허브'를 구축하고 지방의회와 정부 부처가 사이트를 공유하여 보다 긴밀하게 협력
- 지금까지 납세자들은 2,400만파운드의 유지비(running cost)를 절감하였고, 5,745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3,336개의 신규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를 공개

● 이번 5개년 계획은 동 프로그램의 마지막 라운드로 1만 개의 신규 주택 공급, 1만 4천 개의 일자리 창출, 납세자들의 유지비 3,700만파운드 절감을 목표

- 1,500만파운드의 재정이 투입되며, 이미 영국 전역에 3천 개 이상의 신규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를 확보

■ 메이 총리, 브렉시트 관련 성명 발표(2019. 2. 26.)[43]

● (경과)[44] 1월 15일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에서 부결(meaningful vote) → 21일 메이 총리 플랜B 발표 → 29일 플랜B에 대한 수정안 중 2건 가결 → 현재 EU와 재협상 시도 중

● (내용) EU와의 재협상 시도 경과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언급

- 지난 주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건설적인 회의를 가졌고, 북아일랜드의 안전장치(backstop)*를 무기한으로 둘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변화에 대해 논의

*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는 EU 관세 동맹에 잔류하여,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간 엄격한 국경통제(hard border)를 피하고자 한 조항

- 3월 12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두 번째 하원 투표(meaningful vote)를 실시
  -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13일 노딜 브렉시트에 대해 하원 투표를 실시하고, 이 또한 부결될 경우 14일 브렉시트 연기에 대해 투표

캐나다

[예산·결산 등]

■ FY2018-19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B) 하원 상정(2018. 2. 26.)[45]

40) One Public Estate Programme
41) 정부통합 홈페이지, "Government backs plans to create new homes and jobs in next five years," 2019. 2. 15.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backs-plans-to-create-new-homes-and-jobs-in-next-five-years
42) OPEP에 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https://www.local.gov.uk/topics/housing-planning-and-homelessness/one-public-estate를 참고 바람
43) 정부통합 홈페이지, "PM statement to the House of Commons: 26 February 2019," 2019. 2. 26.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pm-statement-to-the-house-of-commons-26-february-2019
44) 세부사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18년 상반기 KIPF 재정동향』, 『2018년 하반기 KIPF 재정동향』 및 2019년 「재정동향」 1월 제1~2호, 2월 제1호를 참고 바람
45) 캐나다 의회예산처, https://www.pbo-dpb.gc.ca/en/blog/news/Supps_B_2018_19

● FY2018-19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B)은 약 62억캐나다달러 규모로 편성
-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약 25억캐나다달러,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46] 약 37억캐나다달러
- 주요 의결지출의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공공 퇴직연금 계정(The Public Service Super Annuation Account) 31억캐나다달러, 직원 복리후생 2억캐나다달러 등 인건비 지원에 총 35억캐나다달러
  • 퇴역군인(veterans)과 그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323백만캐나다달러
  • 학자금대출 탕감 지원(3만 건 이상)에 약 163백만캐나다달러

<표 6> FY2018-19 추경예산안(B)

(단위: 백만캐나다달러)

구분		일반 예산 (Budgetary)	투융자 예산 (Non-Budgetary)
추경 (B)	의결지출(Voted Appropriations)	2,493	14
	법정지출(Statutory Expenditures)	3,681	708
	합계	6,174	722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Supplementary Estimates(B) Table 1-1, 2019. 2.

[기타]

■ 의회예산처(PBO), Economic and Fiscal Monitor-February 2019 발표(2019. 2. 12.)[47]

● 2018년 3분기까지 견실한 경제성장을 보였으나 2018년 4분기부터 에너지 수출량 감소에 기인하여 경제성장이 둔화됨
- (경제) 캐나다의 2019년 1분기 실질 GDP는 1.0%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2018년 10월 의회예산처 전망 대비 0.7%p 하락할 것으로 수정 전망

<표 7>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단위: %, 전 분기 대비 증가율)

구분	2018Q1	2018Q2	2018Q3	2018Q4	2019Q1
의회예산처 (2018.10.)	1.7	2.9	1.9	1.8	1.7
의회예산처 (2019.2.)	1.4	2.9	2.0	1.0	1.0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Economic and Fiscal Monitor February 2019, Table 1-1.

- (재정) 2019년 2월 기준 FY2018-19 재정적자는 160억캐나다달러(GDP의 0.7%)로 2018년 10월 의회예산처 전망치보다 34억캐나다달러, 2018년 11월 재무부의 가을경제보고서(Fall Economic Statement) 전망보다 21억캐나다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정
  • 2018년 10월(의회예산처) 대비 총지출 8억캐나다달러 감소 및 총수입 26억캐나다달러 증가로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프로그램지출 감소는 실업급여 지출 감소 및 직접프로그램 지출의 증가세 둔화에 기인

46) 법정지출은 입법화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얻은 지출로 추경예산안에서는 정보 목적으로 법정지출 전망치를 제공
47) 캐나다 의회예산처, https://www.pbo-dpb.gc.ca/en/blog/news/EFM_Feb_2019

<표 8> FY2018-19 재정 모니터링

(단위: 십억캐나다달러)

구분	의회예산처 (A) (2018.10.)	의회예산처 (B) (2019.2.)	증감 (B-A)	캐나다 재무부 (2018.11.)
총수입	325.3	327.9	2.6	328.9
총지출	344.7	343.9	-0.8	344.1
프로그램 지출	321.0	320.1	-1.0	320.2
공공채무 비용	23.7	23.8	0.2	23.8
재정수지	-19.4	-16.0	3.4	-18.1

출처: 캐나다 의회예산처, Economic and Fiscal Monitor February 2019, Table 2-1.

호주

[예산·결산 등]

■ 호주 재무부, 추가 예산 발표(2019. 2. 14.)[48]

※ 정부는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의회에 추가 예산(additional estimates)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출예산법안은 의회 승인을 거쳐 세출예산법* (3)과 (4)로 확정됨[49]

* 호주의 세출예산법은 정부의 통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세출을 편성한 세출예산법(1)과 통상적인 업무 이 외의 세출을 편성한 세출예산법(2)로 나뉘며, 이에 대응하여 추가 예산법안도 각각 (3)과 (4)로 나뉨

● 정부는 세출예산법안(3)에서 총 25억 4,176만호주달러, 세출예산법안(4)에서 총 7억 5,289만호주달러 증액을 요청

- 재무 포트폴리오[50]의 경우 포트폴리오 개요, 책임, 성과[51]가 2018-2019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에서 크게 변경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법안(3)에서 1억 1,984만호주달러, 세출예산법안(4)에서 737만호주달러를 증액
  - 재무부는 기존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에서 부처 전략 방향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으며 2,606만호주달러를 증액
  - 통계청 또한 기존 포트폴리오 예산보고서에서 부처 전략 방향이 크게 변경되지 않았으며 633만호주달러를 증액

<표 9> 호주 2018~2019 추가 예산

(단위: 천호주달러)

포트폴리오	세출예산 법안(3)	증액	세출예산 법안(4)	증액
농림·수산	921,407	92,497	699,995	22,756
법무	1,216,925	73,547	5,938	4,549
커뮤니케이션·예술	2,408,736	30,349	5,105,444	6,200
국방	33,727,136	268,533	3,184,629	310,562
교육·훈련	2,274,824	35,585	72,878	691
환경·에너지	1,429,514	45,063	223,085	0
재정	987,744	30,931	233,235	40,476
외교·통상	6,219,802	23,757	81,378	88,529

48) 호주 재무부, Portfolio Additional Estimates Statements 2018-19, 2019. 2. 14.
https://treasury.gov.au/publication/p2019-359570
호주 의회, Appropriation Bill(No.3) 2018-2019, 2019. 2. 14.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Id=r6273
호주 의회, Appropriation Bill(No.4) 2018-2019, 2019. 2. 14.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Id=r6274

4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호주의 재정제도』, 2012.

50) 호주는 유관 부처 및 기관을 하나의 포트폴리오로 묶고 포트폴리오별로 예산을 배정. 재무 포트폴리오의 경우 재무부, 통계청 등을 포괄하고 있음

51) 호주의 각 부처 및 기관은 그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인 성과(outcome)를 1개 이상 수립하고 있음. 2018-2019 예산 기준, 재무부는 1개, 재정부는 3개의 성과를 제시

<표 9> 계속

(단위: 천호주달러)

포트폴리오	세출예산 법안(3)	증액	세출예산 법안(4)	증액
보건	12,070,202	696,129	83,440	95,362
내무	6,050,181	646,378	198,154	28,726
산업·혁신·과학	2,273,124	11,104	59,491	4,500
인프라·지역개발·도시	2,132,903	101,345	2,520,469	96,843
일자리·중소기업	2,258,045	113,415	16,390	5,706
총리·내각	2,066,470	33,483	39,722	0
사회복지	14,538,841	219,794	140,744	40,625
재무	4,629,766	119,844	414,373	7,366
총계	95,205,620	2,541,754	13,079,365	752,891

출처: 호주 의회, Appropriation Bill(No.3) 2018-2019, Appropriations Summary table, 2019. 2. 14.; Appropriation Bill(No.4) 2018-2019, Appropriations Summary table, 2019. 2. 14.

[기타]

■ 호주중앙은행(RBA), 2019년 2월 경제전망 업데이트 발표(2019. 2. 7.)[52]

※ 호주중앙은행은 연 4회 "Statement on Monetary Policy"를 통해 국내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호주 경제성장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발표

● (경제) 호주의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은 2019년 3.0%, 2020년 2.75%로 전망되어 지난 11월 전망(각각 3.25%, 3.0%)보다 하향 조정됨

- 금융보험업 등 서비스 지출 감소에 따라 소비 전망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완화적 통화 정책과 노동 시장 개선이 가계 소득 및 소비 성장을 이끌 전망이나 최근 주택 시장 둔화*가 소비를 제약할 전망

* 주택 가격이 2017년 9월까지 5년간 50% 가까이 상승, 이후 약 8% 하락

• 채무가 많은 가구는 가계 부(wealth)의 변화에 민감한 경향이 있는데 가계가 채무 수준을 우려하여 채무를 조기 상환하면 소비 증가세가 약화될 수 있음

- 주거용 건설 투자가 전망기간 중 하락하는 반면 비주거용 건설 투자는 개선될 전망이며 기계, 장비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투자 역시 성장을 지원할 전망
- 9월 분기에 급격히 하락한 광업 투자는 저점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며 2019~2020년에 점차 회복될 전망
- 공공 수요도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국가장애보험제도(NDIS)의 시행으로 성장을 견인할 전망
- 수입은 공공 및 민간 투자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전망기간 동안 증가할 전망이며 수출은 농산물 수출 약세로 증가세가 소폭 하락

● (노동) 실업률은 노동시장 개선에 따라 2019년 후반 5.0%에서 2020년 후반 4.75%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전망

- 고용 증가율은 향후 6개월간 생산 가능 인구 증가율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경제성장률과 함께 하락할 전망

● (물가) 인플레이션(headline inflation)은 당초 전망보다 낮은 유가에 기인해 2019년 초반

52) 호주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February 2019, 2019. 2. 7. https://www.rba.gov.au/publications/smp/2019/feb

1.25%까지 하향 조정 및 하락 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근원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2019년 말 1.75%, 2020년 말 2.25%로 상승 전망

- 근원 인플레이션(trimmed mean inflation)은 2019년 말 2.0%, 2020년 말 2.25%로 상승

● (리스크) 대내외 리스크 모두 하방 리스크가 우세

- 미중 무역 긴장, 중국의 재균형 정책 불확실, 주요 선진국의 금융 긴축 등 지난 3개월 간 세계 경제전망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증가
- 대내 리스크는 소비 성장전망에 크게 의존적인데, 최근 주택 시장의 둔화로 인한 가계 순부 감소가 소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증가

<표 10> 경제성장률 및 인플레이션 전망

(단위: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18년 12월	'19년 6월	'19년 12월	'20년 6월	'20년 12월	'21년 6월
GDP 성장률	2.75	2.5	3.0	2.75	2.75	2.75
실업률[1)]	5.0	5.0	5.0	5.0	4.75	4.75
인플레이션	1.8	1.25	1.75	2.0	2.25	2.25
근원인플레이션	1.8	1.75	2.0	2.0	2.25	2.25

(단위: 연평균, %)

구분	'18년	'18~'19년	'19년	'19~'20년	'20년	'20~'21년
GDP 성장률	3.0	2.5	2.75	2.75	2.75	2.75

주: 1) 해당 분기 평균

출처: 호주중앙은행, Statement on Monetary Policy, February 2019, Table 5.1, 2019. 2.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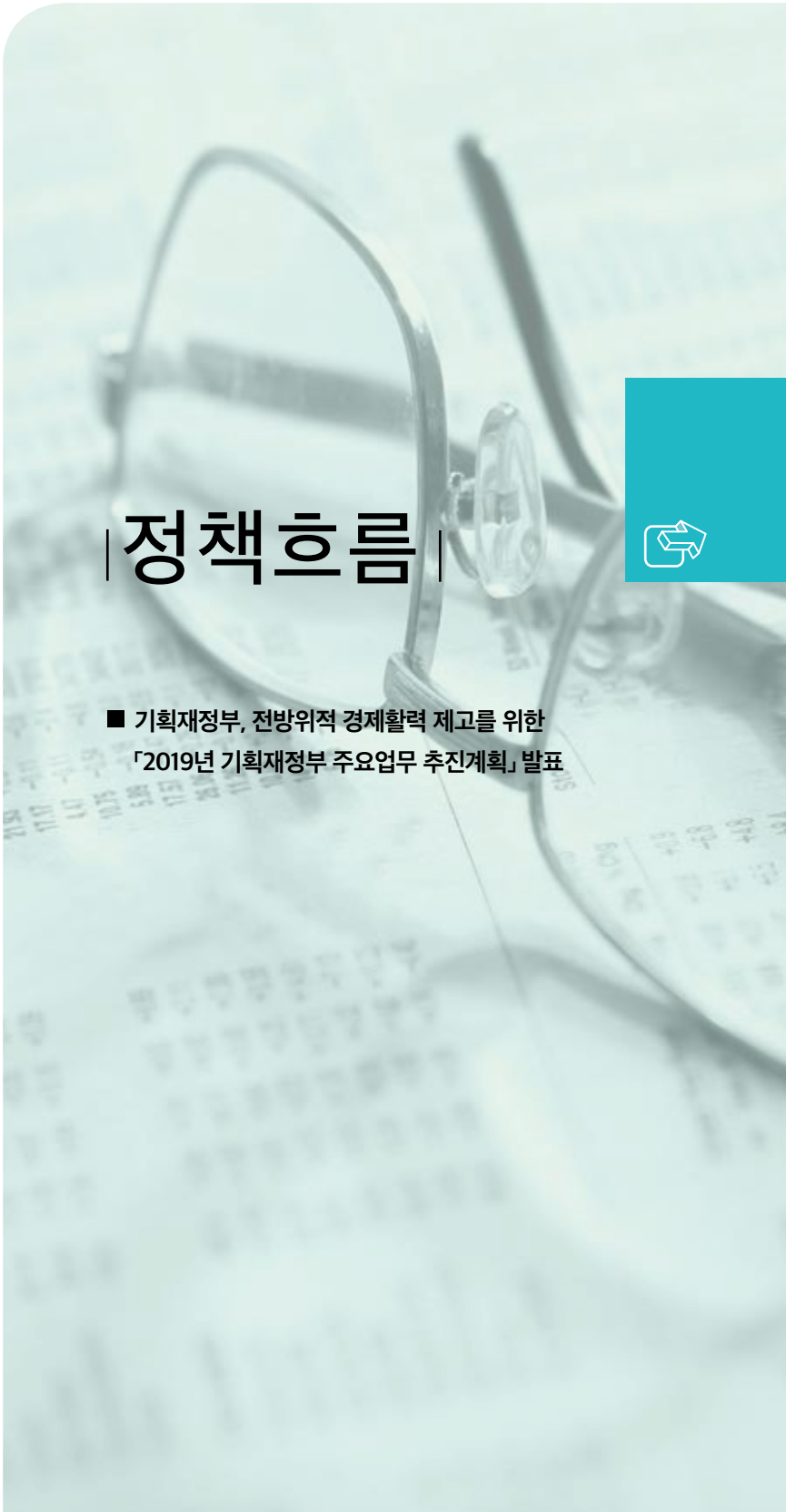

정책흐름

■ 기획재정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기획재정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 본 자료는 2019년 3월 6일 기획재정부 기획재정국 회계결산과에서 발표한
"기획재정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의 전문입니다. <편집자 주>

■ 기획재정부는 2019년 3월 6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음

- 이번 계획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핵심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 경제팀이 하나가 되어, 시장·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성과의 체감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의지도 표명하였음

2019년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Ⅰ 2018년 핵심 국정과제 추진성과와 평가

◇ 「사람중심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경제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으나,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은 지속 개선 필요

1 경제 운용의 새 판 짜기 : 「사람중심 경제」로의 전환 틀 마련

❶ (소득주도) 가계소득 기반 강화, 안전망 확충 등 → 삶의 질 개선

■ 취약계층 맞춤형 일자리 확대, 주거·의료 등 핵심 생계비 절감,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EITC·기초연금 확대 등

⇨ 상용직 일자리 증가(+34.5만명), 청년 고용률 상승('17 → '18, 42.1% → 42.7%), 가계소득 증가('18.4/4,+3.6%) 등 긍정적인 변화의 물꼬를 틈

❷ (혁신성장) 규제혁신, 창업·신산업 지원 등 → 성장잠재력 확충

■ 규제샌드박스 4법* 입법, 현장규제 개선(160여건), 창업·성장단계별 생태계 강화, 8대 핵심 선도사업 선정 및 집중 지원 등

* ① 정보통신융합법, ② 산업융합법, ③ 금융혁신특별법, ④ 규제자유특구법

⇨ 규제샌드박스 적용사례 창출*, 신설법인수(10.2만개) 사상 최대 달성, 스마트공장 확산(7,800여개) 등 혁신 경제로의 전환점 마련

*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17건('19.3.6. 기준)

❸ (공정경제) 엄정한 법집행과 자율개선 병행 →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하도급·대리점 등 분야별 甲乙 관계 제도 개선 및 감독 강화,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유도, 대·중소 상생협력 확산 등

⇨ 순환출자고리수 대폭 축소(93개 → 5개), 상생결제 규모 사상 최초 100조원 돌파(107.4조원) 등 시장경제의 공정성이 점차 가시화

※ 지금까지는 패러다임 전환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면 앞으로는 이를 토대로 사람중심 경제를 착근시켜 나가는 것이 큰 과제

■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하면서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에 정책역량 집중 필요

2 거시경제 안정과 대외적 신뢰 향상

❶ (거시경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 주요국 대비 높은 2.7% 성장 + 수출 사상 처음 6천억달러 상회 +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

* 민간소비(+2.8%)는 '11년 후 7년만 최대폭 증가, '05년 후 13년만 GDP 증가율 상회

❷ (대내리스크) 국민 삶과 직결된 주택시장·가계부채[1] 안정적 관리, 현안기업 구조조정을 3대 원칙[2]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

1) 주택가격 상승률(%): ('18.9)0.31 (11)0.13 (12)△0.01/가계부채 증가율(%): ('16)11.6 ('17)8.1 ('18)5.8

2)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이해관계자 고통 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

❸ (대외리스크) 국가신용등급(AA, S&P) 역대 최고, 국가부도 위험(CDS 프리미엄) 역대 최저(29bp), 외환보유액 사상 최대치(4,037억불)

※ 설비·건설투자 부진과 고용·분배 등 민생 어려움 지속 등은 각별히 관리·개선해 나가야 할 과제

3 국민에게 신뢰받는 재정·세제 운영 및 공공기관 혁신 추진

❶ (재정·세제 운영) 구조·경기적 대응 위한 적극적 재정기조 강화

* 총지출 증가율: ('17~'21년 계획) 5.8% → ('18~'22년 계획) 7.3%

■ 고소득층 과세 강화[1]와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확대[2] 등을 통해 과세 형평성 제고

1) 종부세 개편(세율 0.1~0.5%p↑ 등), 비과세된 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등

2) 근로장려금 확대(최대 지급액 인상: 85만~250만원 → 150만~300만원, 재산 요건 완화) 등

❷ (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자율경영시스템 마련, 평가 시스템 개선(평가단 다양화, 사회적 가치 반영 등)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선도

❸ (사회적경제 활성화) 판로·금융지원 확대, 법적 기반 마련 등 인프라 구축, 청년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체계적인 성장 지원

* 공공구매 활성화, 정책자금(200억원 → 450억원)·신용보증(66억원 → 1,100억원) 확대,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제정 추진, 청년인건비 지원 등

※ 사람중심 경제 착근을 위한 재정·세제의 지속적인 뒷받침과 공공기관 안전사고·채용비리 근절 등을 통한 조속한 신뢰 회복은 과제

Ⅱ 2019년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

1 2019년 경제상황

■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나, 확장적 재정 기조, 소비·투자 활성화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작년 수준의 성장세(2.6~2.7%) 전망

- 민간소비는 임금상승, 복지지출 확대, 생계비 경감 등으로 가계소득 여건이 개선되며 양호한 흐름 지속 전망
- 투자는 SOC 예산 확대, 투자 활성화 정책 등이 긍정적 요인이나, 반도체 경기 조정, 주택건설 투자 부진 등 어려움 지속 예상

* 세계 반도체시장 전망(WSTS,%): ('17)21.6 ('18)13.7 ('19)△3.0

-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미중 통상마찰 지속, 노딜(no deal) 브렉시트 가능성 등 불확실성 상존

* IMF '19년 성장 전망('18.10 → '19.1,%): (세계)3.7 → 3.5, (선진국)2.1 → 2.0, (신흥국)4.7 → 4.5

■ 고용·소득분배 여건의 어려움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나, 불확실성 지속

- 생산가능인구 감소, 자동화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심화되고 있으나, 경제활력 제고 노력,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이 일자리 수요 보완

* 일자리 예산('18 → '19년): 19.2조원 → 22.9조원<노인일자리 51만개 → 61만개>

- EITC·기초연금 등 복지 확충효과가 나타나며 소득분배 어려움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고령화 등 제약 요인 상존

* 기초연금 인상('19.4월~, 소득하위 20% 25만원 → 30만원), EITC 확대(1.3조원 → 4.9조원, 9·12월 지급)

■ 4차 산업혁명,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미래 도전요인도 본격화

-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등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 기술·인력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 4차 산업혁명 경쟁력 순위: (싱가포르)1위 (미국)3위 (독일)13위 (일본)15위 (한국)19위

- 고령화 진전, 생산가능인구 감소 전환 등으로 성장능력 저하 우려

* 생산가능인구 증감(만명): ('16)13.4 (17)2.1 ('18)△6.3 / 전망(만명): ('18)△4.6 ('19)△6.8

※ '18년 생산가능인구 감소(△6.3만명)는 장래인구추계상 전망(△4.6만명)을 상회

2 2019년 정책방향

◇ 금년 상반기 중 가시적 진전이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활력제고·혁신확산·민생개선」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 막혀 있던 기업투자 프로젝트의 조기 착공 지원(상반기 중 2건 3.9조원), 민투 대상사업 확대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6.4조원+α)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예비타당성 제도 개편방안 마련, 생활형 SOC 조기 추진 등을 통해 지역투자 활성화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규제혁신의 물꼬를 트고, 그간 지체되었던 산업·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확실한 성과 창출

- 규제샌드박스 사례 확산, 규제입증책임 전환 등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 주력산업·서비스업·신산업 등 전방위적 산업혁신대책 마련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한 패키지 지원(상반기 중 2~3곳 적용), 직무중심 임금체계로 전환 추진(공공기관 보수체계 우선 개편)

■ 가계소득 기반, 사회안전망 등 포용성을 지속 강화해 나가되,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되었던 일부 정책 보완

-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 및 서민·자영업자 소득기반 지속 확충,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
-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및 탄력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추진

■ 미래 도전 요인에 대비한 선제적 투자·준비 본격화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핵심 R&D 투자, 융복합 생태계 구축, 인력양성·고용변화 대응 등 집중 지원
-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실효성 있는 정책 중심 재구조화·강력 추진

Ⅲ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전력하겠습니다

①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지원 및 대형 민자사업 조기 추진

1. 개요

■ 투자부진 지속 상황에서 행정절차·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착공 지연 → 기업투자 프로젝트 및 민간투자 활성화

* 설비투자(전년 동기비, %): ('18.1/4)7.3 → (2/4)△3.0 → (3/4)△7.4 → (4/4)△2.7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투자애로 신속제거·이해관계 적극 조정을 통해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 착공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촉진

- 1·2단계로 8.3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프로젝트 조기착공 추진하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1/4분기 내 조성계획 확정 등 관련 절차 마무리
-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설치하여 3·4단계 신규 기업투자 프로젝트를 분기·반기별로 신속 발굴·추진

* 투자애로사항 ① 접수 → ② 부처·지자체 협의 → ③ 대안 마련 → ④ 문제해결까지 총괄·직접 관리

■ 민간투자 대상사업 확대 및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여 총 6.4조원 이상의 프로젝트를 조속 추진

- 모든 공공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열거방식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면 전환(3월 내 민투법 개정안 발의)
- 적격성조사를 통과한 대형 민자사업* 조기 추진(4월 중 공고) 및 민자사업 비용/편익 분석기관 다양화(4월 내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항만개발, 하수처리장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

② 공공투자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

1. 개요

■ 일자리창출 및 혁신성장 동력 확보 위해 정부출자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강화

* ’19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 당초 2.3만명 → 변경 2.5만명+α(소요 발생 시 추가 증원)
’19년 공공기관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18년 268억원 → ’19년 2,000억원

→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 조정 등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대응에 총력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SOC·에너지 분야 중심 주요 공공기관 ’19년 투자계획을 전년 실적 대비 9.5조원 늘어난 53조원 수준으로 확대

* ’18년 주요 공공기관 투자 예상실적 43.5조원 → ’19년 투자계획 53.0조원

- 신속한 출자 사전협의 및 예타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투자 집행을 지원

* 예타 정기 신청횟수 확대(연 2회 → 3회), 사업유형별 예타조사 원칙·방법 다양화 등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既개정(’18.12.27일 공운위) → ’19.1.1일부터 시행

■ 정부 출자기관의 ’19년 경제활력 제고 관련 투자과제 필요 재원을 고려하여 배당금 및 배당성향 조정

- 배당금 조정으로 유보된 재원(약 1.5조원 규모)을 ’19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
- 투자과제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차년도 배당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지속투자 확대를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

■ ’19년 상반기 경기·고용 하방 위험에 대응하여 역대 최고 수준 조기집행(상반기 61%) 실시

-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SOC·생활SOC사업*은 중점관리를 통해 조기성과 창출

* 일자리(65.0%, ’18년 대비 1.5%p↑), SOC(59.8%, ’18년 대비 1.0%p↑), 생활SOC(65.0%)

③ 일자리 창출 지원 강화

1. 개요

■ 임시·일용직,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중심 고용부진으로 1분위 내 무직가구 비중 급증

* 무직가구(’17.4/4 → ’18.4/4, %): (전체)15.5 → 19.3 (1분위)43.6 → 55.7(+12.1%p)

→ 사회서비스 일자리 충원*, 상생형 지역일자리 확산 등을 본격 추진

* 사회서비스 일자리 충원계획: (’18)5.5만명, (’19)9.5만명, (’20~’22)19.2만명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일자리정책 5년 로드맵」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속 충원('19년 1단계 2.9만명, 2단계 6.6만명)

- (1단계) 보육·요양·보건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분야 신속 확충

  * (보육) 국공립 보육시설 충원, (보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요양) 전국 253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설치, (장애인) 장애인 활동·장애인가족 지원 확대 등

- (2단계) 안전·여가·생활편의 등 국민체감형 사회서비스 발굴·충원, 은퇴세대·경력단절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맞춤형일자리 신설

  * (안전) 응급의료인력, 아동안전지킴이, (여가) 장애인 체육지도자, (생활편의) 신중년 경력활용 등

■ 지역별 경제주체(노·사·민·지자체 등) 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

* 「지자체 신청 → 중앙정부 심사·선정」형태의 상향식 운영

- 상생협약 내용에 따라 적합한 지원책을 조합하여 패키지 지원

  * (기업)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 펀드지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법인세 감면 등

(근로자)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확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우대, 산단 기숙사·통근버스 지원,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맞춤형 교육 등

- 1/4분기 내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완료하고 지자체와 협업하여 상반기 내 2~3곳 발굴

1 산업혁신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겠습니다

①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핵심규제 혁파

1. 개요

■ 규제혁신의 성과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시스템을 적극 전환

→ ① 규제 샌드박스, ② 규제입증 책임전환 등 수요자 친화적 규제혁신 효과를 가시화하고 新시장 분야 핵심규제 개선의 돌파구를 마련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新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샌드박스* 적용사례를 금년 중 100건 이상 창출

*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법(1.17일 旣시행), 금융혁신특별법·지역특구법(4월)

- 규제개선 추진단, 옴부즈만 등에서 발굴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를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결하는 등 정부 주도의 발굴 강화
- 공식.비공식 장관급 협의체를 통해 부처 간 이견,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속도감이 나지 않는 과제를 적극 조율·해결

■ 국민이 규제 개선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닌 소관부처가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입증 책임전환' 확대·시행

- 기재부가 선제적으로 ① 국가계약·조달, ② 외환거래 분야 시범 추진 → 추진 결과(3월)를 토대

로 상반기중 全부처·분야로 확산 유도

■ 스마트 헬스케어, 산악관광 등 신산업분야 주요 핵심규제 개선

- (스마트 헬스케어) 만성질환자 비대면 모니터링 등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기준·사례 마련(3월), 현장애로 사례 유권해석 지속 추진
- (산악관광) 중첩된 산지규제 완화를 위해 민간 TF 논의를 거쳐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산림휴양관광특구 도입 등 추진

② 서비스산업·신산업의 혁신적 지원

1. 개요

■ 서비스업은 부가가치 창출력*이 낮은 상황에서 최근 취업자 증가세 둔화** → 서비스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 필요

*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 '16년): (韓) 59.1 ('18년), (美) 79.5, (日) 69.3, (獨) 68.9, (英) 79.2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전년비, 만명) : ('16) 29.9 ('17) 20.9 ('18) 5.1

■ 주력산업 분야에서 경쟁력 약화 및 후발국의 빠른 추격 → 신산업 창출 및 활성화를 통한 성장모멘텀 확보

* 한-중 기술격차(년, '14 → '16): (전체)1.4 → 1.0 (전자·ICT)1.8→1.5(기계·제조)1.7 → 1.3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광·보건·콘텐츠·물류 등 4대 유망서비스업 혁신방안 중점 추진(2/4분기)

- 업종별 민관합동 TF를 통해 규제혁신,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추진

① (관광) K-POP 활용, 지역관광 개발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4월)
② (보건) 미래의료기술 활성화 등을 위한 「바이오헬스 중장기 전략」 마련(4월)
③ (콘텐츠) 게임·영화 등 분야별 규제개선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6월)
④ (물류) 「스마트물류 혁신방안」 마련(3월) 및 물류전문기업 육성(6월)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입법 노력 등 병행(1/4분기)

■ 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에 대한 제도개선과 재정·세제 등 집중 지원 방안 마련('19. 上)

* 신산업 총괄 TF(1.31) 및 분야별 TF Kick-off 完 → TF를 중심으로 주요 대책 마련 중

① (스마트공장·산단) 산업단지 스마트화 전략 마련(4월),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방안 마련(6월)
② (미래차)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마련(3월), 전기(4.2만대)·수소차(4천대) 보급확대
③ (핀테크) 「낡은 금융규제 개선방안」 마련(3월), 샌드박스 시행 등 혁신금융서비스 창출(4월)
④ (바이오헬스)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 발표(4월)

③ 제조업 경쟁력 강화

1. 개요

■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중국 등 후발국 추격 심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연 등으로 주력산업 활력 저하

→ 제조업 중장기 산업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핵심 업종별 활력제고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

* 해외사례 : 中 「중국제조2025」, 日 「신산업구조비전」, 싱가포르 「산업변혁지도」 등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2030년까지의 주력산업 미래상을 전망하고 산업별 경쟁력 확보 전략 및 단계별 이행 로드맵 수립

• 산업별 메가트렌드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쟁우위 요인 진단 등을 통해 국내산업의 비전과 발전 전략 도출

■ 민관 합동 TF 운영*을 통해 4대 핵심 업종을 중심으로 단기애로를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순차 발표

* 참석기관 : 산업연구원, 기재부,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금융위 등

① (자동차) 「미래차 산업 육성전략」 마련(3월) 및 자동차부품산업 활력제고 지원
② (조선) 기발표된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보완(3월)하고, 친환경·스마트 미래선박 로드맵 마련(6월)
③ (디스플레이) Post-OLED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발전방안 마련(3월) 및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R&D 과제 기획·공고(6월)
④ (석유화학) 석유화학업계 투자애로 해소방안 마련(3월),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산단계획 수립(6월) 후 지정 추진

■ 중장기 경쟁력 확보와 함께 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활력제고대책 마련·추진

• 무역금융 확충 등 단기 수출활력 제고, 주력 수출품목 고도화 등 수출 품목·시장 다변화 및 업종별·기업별 맞춤형 지원 제공

3 민생을 개선하고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①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1. 개요

■ 대·중소기업간 전속거래구조 하에서 불공정거래로 중소기업 피해 지속
→ 상생협력 확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중소기업 성장 유도

■ 영세 자영업자의 과당경쟁 심화, 수수료·임차료 등 비용부담 증가
→ 단기적 경영난 해소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자립 기반 마련 지원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대·중소 간 상생협력 촉진 및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시범사업('19, 50개사) 및 법제화를 추진('19. 하, 상생법 개정)하고, 상생결제 지속 확산('18년 107조원 → '19년 120조원)
- 대기업이 중소기업 사내 근로복지기금 등에 출연할 경우 출연금 10% 세액공제 추가 등 세제지원 확대

  * (現) 법인세 손비인정, 투자상생협력세제상 소득공제 → (改) '현행' + 출연금 10% 세액공제

- 약정서 미발급 등 수·위탁거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 및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19. 상, 상생법 개정)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 카드수수료 인하* 및 제로페이 서비스(0%대 수수료) 본격 개시(2월)

  * 카드수수료(%): (연매출 5~10억원) 2.05 → 1.4 (10~30억원) 2.21 → 1.6

- 자영업 매출 증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18년 약 0.4조원 → '19년 2조원) 및 온누리상품권('18년 1.5조원 → '19년 2조원) 발행 확대
-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을 상향*(3월)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하반기)을 통해 골목상권 보호 강화

  * 환산보증금 상향(안): (서울) 6.1억원 → 9억원 (과밀억제권, 부산) 5억원 → 6.9억원

②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안전망 강화

1. 개요

■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및 일자리사업을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 저소득층·취약계층 대상별 맞춤형 지원대책 마련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확대와 근로유인 강화
- 기초생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30만원 조기 인상

  * 부양의무자에 소득하위 70% 노인 포함 시 생계급여 혜택 조기 확대('21년 → '19년)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확대(가구당 최대 85만~250만원 → 150만~300만원)

* (지급수준)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최대 8개월 → 9개월 ('19. 하)

■ 청년·노인·장애인·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단계적 해소

• (청년) 저소득층 취약계층 교육비 지원·장학사업·기회균형선발 비중을 확대하고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방안 마련('19. 상)

• (노인) 10만개 확대된 노인일자리(총 61만개)를 조기에 집행, 돌봄서비스 확대(28.1만명 → 34.3만명) 및 치매안심센터 본격 운영(256개)

• (장애인)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증장애인의 연금액을 인상(최대 25만원 → 30만원, '19.4월)하고, 발달장애인 신규 서비스* 제공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2,500명),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4천명)

• (여성)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강화(13만원 → 20만원), 아이돌봄서비스 대상 확대(중위소득 120% → 150%)·돌봄센터 확충(+850개소) 등 돌봄서비스 강화

※ '19~'23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예산 편성 시 포용국가 실현과제 구체화
① 고령·근로무능력자, 비수급빈곤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강화방안 마련
② 돌봄·안전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노인일자리 수요발굴 및 확대 지원
③ '20년 시행을 목표로 근로빈곤층·청년층 대상 실업부조 도입방안 설계

③ 사회적경제 활성화

1. 개요

■ 사회적경제는 질 좋은 일자리, 공동체 복원, 양극화 완화 등에 기여하면서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는 역할 수행

→ 금융, 판로 등 성장인프라 구축, 진출분야 확대, 청년역할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사회적경제 성장인프라 구축

• 사회적경제 통합 정책추진 기반 마련

* ① 사회적경제법, 사회적가치법, 사회적경제 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추진, ② 사회적경제 중장기 기본계획 마련, ③ 사회적경제 전체 포괄 통계 시범작성 등

• 사회적경제 금융 생태계 조성* 및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

* ① 신보 보증공급(5천억원, ~'22), 임팩트펀드 조성(5천억원, ~'22) 등 정책금융 확대
② 사회가치연대기금(3천억원 조성, ~'23)등 민간생태계 조성지원,
③ 사회가치 평가체계 구축 등
**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구축·운영 및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개최('18~)

■ 사회서비스, 주거 등 복지 사각지대에 사회적경제 역할 강화

• 돌봄, 급식, 교육 등 맞춤형 통합 사회서비스 모델* 발굴·지원

*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컨소시엄 구성('19. 7개소 시범사업 공모)

• 청년, 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안정, 주민참여형

커뮤니티 운영 등 사회주택 모델 개발 및 공급 활성화 지원(매년 2천호 공급, '19~'22)

■ 해결이 필요한 사회적 과제 발굴 등을 통한 청년의 참여 촉진

• 소셜벤처 활성화*, 지역중심 청년 고용창출 및 지역정착 지원**

* 소셜벤처 경연대회, 성장지원센터 운영('19. 4개 신설(총 10개)), 임팩트보증(5년간 5천억 규모)

** 지역기반 사회적경제기업 취업(2년간 인건비 연 2,400만원), 일경험 지원(1년간 인건비 연 2,250만원)

4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공혁신을 이루겠습니다

① 생활 SOC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1. 개요

■ ① 삶의 질 향상, ② 지역균형 발전, ③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의 효과 창출을 위해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

→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

* 3대 분야: 여가·건강활동 지원, 지역활력 제고, 생활안전·환경의 질 제고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지역주민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 SOC 사업(192개, 국비 8.6조원) 신속 추진

• '19년 1/4분기 3.0조원(35%), 상반기 5.7조원(65%) 신속 집행 추진

• 생활 SOC의 사업 범위·규모 등 향후 투자계획을 담은 「생활 SOC 3개년('20~'22년) 계획」 마련(4월)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 면제사업 등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무리(상반기)

*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KDI, KISTEP)

• 철도, 도로사업은 '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립 등에 바로 착수하고, R&D, 공항 건설 등은 '20년 예산 반영 후 추진

*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165억원),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40억원)

• 상반기 중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종합발전 방안」을 마련해 시행

* 주요 검토방향: 지역균형발전 평가 강화, 일자리·환경·안전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 반영, 예타 수행기관 다원화 및 조사기간 단축 등

② 재정분권 추진

1. 개요

■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강화와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지방재정 확충 및 중앙기능의 단계적 지방이양 추진(「재정분권 추진방안」, '18.10.30.)

• (1단계, '19~'20) 지방소비세를 단계적 인상('18년 11% → '19년 4%p↑, '20년 6%p↑)하고 지역밀착형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20년 3.5조원 내외)

* 소방직 국가직화 지원을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담배개소세의 20% → 45%)

• (2단계 '21~'22) 추가 기능조정과 연계하여 국세-지방세 구조를 개선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등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 '22년까지 국세·지방세 비율('16년 76:24)을 70:30으로 개선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 및 타 회계·기금의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밀착형 기능을 발굴·이양 추진

- 관계부처 합동 「국가기능 지방이양 추진방안」마련(3월)
- '19~'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년 예산편성 지침 반영(4월)

■ 기능이양 추진과 연계하여 지방재정 추가 확충

- 지방소비세 6%p 추가 인상(15% → 21%)을 위한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하반기)

■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

-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및 추진일정 수립(3월)
- 관계부처 합동 「2단계 재정분권 추진방안」 마련(하반기)

③ 재정·공공기관 혁신

1. 개요

■ 국유지의 적극적인 활용 등 재정혁신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지원

-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693만m2) 선정 및 '18년 국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유휴 행정재산(10.5만 필지) 확인
- 재정지출 전반에 대한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추진하여 예산 분야별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 마련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합리적 보수체계 마련 등 관리체계 개편 추진

→ 재정역할 강화·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뒷받침

2. 세부내용 및 이행계획

■ 국유재산의 활용강화(토지개발 등)와 재정여력의 선제적 확보

- 국유재산 토지개발 선도사업지 11곳의 사업계획(지자체·관계부처 협의) 및 유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활용계획을 연내 수립
- 전략적 지출검토(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년 예산안 반영 추진

* 절감 및 재투자 방향, 재정제도 개편 방안, 기대효과 등 포함

■ 안전관리 강화 및 직무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등 공공기관 혁신 추진

-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마련 및 경영평가를 안전 중심으로 개편**

* 기관 내 안전 전담 조직 설치 의무화, 공공기관 안전 관리 공시 강화 등
** 중대재해+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장은 공운위를 거쳐 해임 건의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한 보수체계 개편 유형안*을 토대로, 기관 내 도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점진적 도입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개토론회, 전문가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보수체계 개편 유형(안) 발표('18.12월)

5 2기 경제팀이 하나되어, 조기에 성과를 내겠습니다 - '19년 경제정책방향 16대 과제성과 창출

■ 16대 중점과제별 책임 담당관을 지정, 추진상황 밀착 관리

❶ 과제별 주관부처에 책임 담당관 지정하여 주관부처가 오너십을 갖고 추진하고 관련 부처와 소통·협업 강화

❷ 주기적으로 경제활력 대책회의(장관급 회의), 정책점검회의(차관급 회의) 등을 통해 과제별 추진상황 집중 점검

■ 속도내서 성과내고 국민이 체감토록 정책역량 집중

❶ (Big Project) 상반기 내 기업투자 프로젝트 2건(3.9조원) 착공, 예비타당성 제도 발전방안 마련 및 민자투자사업 제도 개편 추진

❷ (Big Innovation) 주력 제조업·유망서비스업·신산업 등 4대 분야 12개 업종의 경쟁력 제고 또는 활성화 대책 마련

* 주력 제조업(디스플레이·자동차·석유화학·조선), 서비스업(관광·보건·콘텐츠·물류) 신산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바이오헬스, 핀테크)

→ 민관 합동TF 중심으로 2분기까지 순차적으로 대책 마련·시행

❸ (Big Deal)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상반기 내 2~3곳 발굴, 非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❹ (Big Trust)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 등은 조속한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사전준비 철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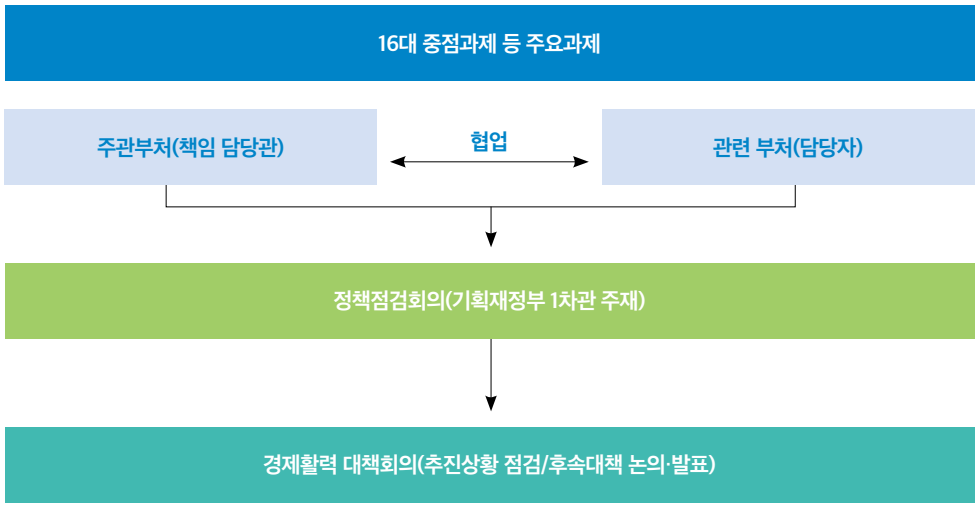

Ⅱ 2019년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

◆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 성장은 작년 수준 유지, 고용은 작년보다 개선

		'18		'19
① (성장·물가) '18년과 유사	성장률(%)	2.7		2.6~2.7
	소비자물가(%)	1.5		1.6
② (고용·분배) 금년보다 개선	취업자수(만명)	10	▶	15
	고용률(15~64세)	66.6		66.8
③ (경상수지) 흑자지속	경상수지(억불)	764		640
	수출증가율(%)	5.4		3.1

◆ 활력제고·혁신확산·민생개선 등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

❶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 창출

	'18		'19
민자사업 대상 확대	열거주의 (53개시설)	▶	포괄주의 (모든 공공시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사업 검토	▶	예타면제 등을 통해 신속 투자
재정조기집행 (집행목표)	상반기 58%	▶	상반기 61%

❷ 핵심규제 혁파, 신산업 육성

	'18		'19
규제입증 책임전환	민간인 입증	▶	공무원 입증
규제 샌드박스 대표사례 확산	샌드박스 4法 입법	▶	100건↑ 대표사례 창출
4대 신산업 지원(재정투자)	1.5조원	▶	2.6조원

❸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

	'18		'19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0.4조원	▶	2조원
EITC 확대	• 166만가구 연1회 지급	▶	• 334만가구 연2회 지급
기초연금 인상	• 월25만원		• 월30만원
사회적경제 활성화(신보보증)	400억원	▶	1,000억원

❹ 재정·공공기관 혁신

	'18		'19
공공기관 안전관리 강화 (경영평가 배점강화)	배점1~2	▶	배점2~6
재정분권 (지방소비세)	11%	▶	15% (+약 3.3조원)
국유재산 활용	건축개발	▶	건축 + 토지개발

재정포럼

2019년 3월호 통권 제273호

■ **발 행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발 행 인/**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 **편집위원장/** 김현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편 집 위 원 /** 김학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허경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편집 · 제작/** 최병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책임전문원)
김서영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전문원)

■ **월간 재정포럼**
2019년 3월 15일 발행 / 제23권 제3호(통권 제273호)
1996년 5월 31일 등록 / **등록번호** 세종라00007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34 **E-mail**: pub@kipf.re.kr
Homepage: http://www.kipf.re.kr

■ **값 3,000원**
- 월간『재정포럼』에 실린 기사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 월간『재정포럼』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 **편집디자인**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 **인쇄** 세일포커스(주) **TEL:** 02-2275-6894

『재정포럼』 정기구독 신청 안내

■ **정기구독회원이 되시면**
원하시는 곳에서 매달 책을 받아보시게 되며, 도중에 책값이 오르더라도 별도 부담이 없습니다.
우송료는 본원이 부담하며 1년 구독 시 두 달치의 책값이 절약됩니다.

■ **정기구독 신청방법**
정기구독 신청은 우편·전화·FAX·E-mail을 이용하여 받아보실 분의 주소·이름·전화번호 및 구독기간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 **TEL:** (044)-414-2134
- **FAX:** (044)-414-2509
- **E-mail:** pub@kipf.re.kr
- **주소:** (우)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지식정보팀

■ **정기구독료**
1년간 정기구독료는 30,000원입니다.
2~3년간 장기구독도 가능합니다.

■ **구독료 납부방법**
온라인 입금: 하나은행 세종아름지점
- **계좌번호:** 541-910013-01104
- **예금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아름다운 선율도 아래층 이웃에게는 때론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층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생각을 가지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과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kobaco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찾기'가 아니라 '읽기'입니다.

인터넷 지식인에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쉽게 얻은 정답은 진짜 나의 지식으로 오래 남기 어렵습니다. 내가 지식인이 되는 방법, 인터넷 검색(searching)이 아닌 독서(reading)입니다.

kobaco
공익광고협의회

• 2019년 3월 15일 발행 • 제273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세종라00007 • 발행처/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전화(044)414-2134 • 월간 • ISSN 1226-2269 3